

朴泳孝와 그의 上疏 研究序說

田 鳳 德*

- I. 朴泳孝의 略歷과 爲人
- II. 朴泳孝 上疏文의 種類
- III. 朴泳孝 上疏의 名稱

- IV. 朴泳孝 上疏에 대한 研究
- V. 青木氏の 研究에 대한 所感
- VI. 上疏文의 校勘과 懸吐 및 註釋

I. 朴泳孝의 略歷과 爲人

1. 出生과 錦陵尉

朴泳孝(1861~1939)는 哲宗 12年 辛酉 6月 12日 水原에서 潘南朴進士 元陽의 第3子로 태어났다. 兒名은 無量 字는 子純 號는 春舉 뒤에는 玄玄居士라고 稱하였다. 母는 全州李氏이며 朴泳敎는 그의 伯兄이고 朴泳好는 그의 仲兄이다.

壬申年(1872年) 4月 12歲 때에 水原留守 申章史 錫禧의 薦擧와 일가인 右議政 朴濂齋 珪壽의 推挽으로⁽¹⁾ 哲宗의 無男獨女 외딸 當 15歲의 永惠翁主와 嘉禮를 올리게 되어 駙馬가 되었고 錦陵尉 正一品 上輔國崇祿大夫의 榮爵을 拜受하였으며,⁽²⁾ 父 元陽은 貧寒淸高한 시골 兩班으로 一躍 資憲大夫 工曹判書에 除受되고 入京하여 雲泥洞의 賜邸로 移居하게 되어⁽³⁾ 서울 兩班社會에 비로소 데뷔한 것이다.

그러나 永惠翁主는 嘉禮의 交拜를 마치고 舅家로 들어와서 舅姑에게 八拜之禮를 畢하고 于歸 하기가 무섭게 몇달이 못되어 同年 7月 初3日 不歸의 客이 되었다.⁽⁴⁾ 駙馬制度의 舊慣에 의하여 再婚이 不許되는 故로 乙亥年(1875年)에 哲宗의 金妃가 尙宮 順吉堂을 賜送한 바 있으나 順吉堂은 奸惡妖邪한 性品으로 因하여 逐出당하였고 朴泳孝는 父親의 命令으로 庚辰年(1880年)에 針

*韓國法史學會長(法博), 韓國法制史

(1) 朴泳孝傳(『文學思想』1974年 11月號)

(2) 朴泳孝履歷書 開國 481年條, 朴泳孝履歷書는 日本宮內廳에 保管되어 있는 것인 바 青木功一氏의 好意로 그 계목스를 얻어 引用한 것임.

(3) 朴泳孝傳(前揭同)

(4) 前揭同

房內人 范氏를 小室로 드러 얹힌 것이라고 한다. 朴泳孝는 駙馬였던 관계로 喪配한 후에는 제대로 結婚生活의 團樂한 맛을 모르고 不遇하게 一生을 지낸 것이 事實이다.

1870年 丙子修好條規의 締結로 開國을 斷行하고 朝鮮王朝가 國際社會에 처음으로 登場할 무렵에 朴泳孝는 齋洞 朴獻齋의 사랑에 伯兄 泳教를 따라 出入하면서 金玉均 洪英植 徐光範 등과 사귀게 되었고 獻齋가 燕京을 往來할 때 譯官으로 隨行한 吳慶錫도 알게 되었으며 北京으로 부터 寄來한 「海國圖志」 「瀛環志略」 등 淸나라의 開化書籍을 둘러보면서 開化思想을 품게 되었다. 吳慶錫을 通하여 漢醫 劉大致 僧侶 李東仁과도 親分을 맺게 되면서 이들 開化思想을 품은 젊은 이들은 隱然中에 서로 意氣가 投合하여 自生的으로 開化黨을 形成하기에 이른 것이다.

朴泳孝는 1878年(戊寅)에 五衛都總府都總管에 任命되었고 翌己卯에는 惠民署提調, 庚辰에는 義禁府 判義禁에 任命된 바 있다.⁽⁵⁾

2. 壬午軍亂과 日本에 使行

1882年(壬午) 여름에 壬午軍亂이 勃發하여 日本公使館이 燒却 당하는 事態가 발생했다. 마침내 淸國의 李鴻章은 大院君의 策動으로 보고 大院君을 淸國의 保定府에 拉致하여 監禁하였다. 壬午軍亂의 收拾으로 濟物浦條約이 締結됨과 同時에 朴泳孝는 22歲의 青年으로 特命全權大臣 兼修信使에 拔擢되었으며 徐光範은 從事官에 任命되고 同志 金玉均도 顧問格으로 隨行하게 되었다. 朴泳孝 一行은 日本漁船 明治丸으로 渡航중에 그 船上에서 英國領事 W. G. Aston 船長 James와 같이 熟議 끝에 太極八卦圖를 參酌하여 八卦는 複雜하므로 乾坤坎離四卦圖案의 旗章을 만들어 國旗로 삼기로 決定하고 同年 9月 下旬에 日本 神戶港에 到着하여 西村屋에 旅裝을 풀고 屋上에 太極旗를 처음으로 揭揚하였다. 이 旗가 今日의 韓國國旗이다.⁽⁶⁾

朴泳孝의 修信使 使行에 관하여 朝鮮近代史(1837年 서울刊)의 著者 菊池謙讓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當時 朴泳孝는 哲宗의 女婿로서 錦陵尉의 榮爵을 받고 있었고 그의 근엄한 性格에 보태기를 文章의 才華로 하여 이미 顯要之間에 이름이 높았으며 王世子에 버금가는 最高의 地位에 있었다. 年齡 겨우 二十有二 일찌기 世界의 新思潮에 관심을 가지고 國際의 自主獨立과 文明開化를 憧憬하고 日本의 形像을 보고 크게 본받고 싶은 意思를 품고 있어 實사 渡日의 命이 없을지라도 물래 出國하여서라도 開明의 事物을 見學코저 東지와 相約하고 日本視察을 계획하고 있던 차에 使行의 大命을 접하고 즉시 一行은 出發하였다. 修信使의 隨員으로는 金玉均 洪英植 徐光範 徐載弼 閔泳翊 등 貴公子가 一團이 되어 東渡한 것이다. 金玉均을 最年長者로 모두 二十歲前後의 貴公子였으며 俞吉潁 尹致昊는 이미 日本에 있어 日本語를 解

(5) 朴泳孝履歷書 開國 487, 488, 489年各條

(6) 使和記略(國史編纂委員會 1958年) p. 197, 199 以下

하고 百般의 視察을 도운 것이다.⁽⁷⁾

修信使 一行은 日本朝野로부터 푸짐한 歡待를 받고 兵事 工場 財務 興産等の 開化狀을 視察하고 進歩發展에 驚歎한 것이 事實이다.

朴泳孝는 淸國의 몇 十分之一도 안되는 조그만 섬나라 日本이 淸國보다 百年도 뒤늦게 開國하고서도 短時日內에 西歐式 政治의 改革을 斷行하고 놀라운 發展相을 보이고 있는 日本의 文明에 傾斜한 것이 事實이며 한편으로 淸國을 볼 때 舊態依然하게 宗主國을 자랑하고 內政干涉을 일삼고 袁世凱의 行悖와 서울에 駐屯하고 或은 장사하러 와 있는 淸國軍民의 無知莫知한 傲慢을 憎惡하고 있던 그가 使行을 契機로 淸國보다도 日本에 親近感을 갖게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朴泳孝는 使任中에 동지 金玉均 徐光範등과 熟議한 끝에 日本에 留學生을 派遣하여 新學問을 修學케 하여 새 人材를 養成할 것과 祖國의 近代의 改革을 위한 借款交渉도 벌이기도 하고 또 日本의 文明開化를 위하여 싸우는 在野指導者 福澤諭吉의 도움을 얻어 新聞發刊을 計劃하고 福澤門下의 牛場卓藏 高橋正信 井上角五郎 등 7名의 技術者를 傭聘할 것을 契約하고 同年 11月末에 朴泳孝는 新任公使 竹添進一郎과 同道 歸國한 것이다.⁽⁸⁾

3. 漢城判尹에서 廣州留守로

同年 12月 下旬에 朴泳孝는 守舊事大派의 策動으로 大臣職에서는 除外되었으나 漢城判尹에 任命되었다. 牛場等 新聞發刊을 위한 日人技術者들도 새해 1월에 들어서자 모두 到着하여⁽⁹⁾ 新聞創刊 準備에 着手하였으며 朴泳孝는 새로운 見聞에 의하여 漢城府에 治道 警巡 博文(新聞)의 3局을 新設하고, 道路의 擴張과 整備 色衣裝勵等 눈에 보이는 몇 가지 改革을 試圖하다가 閔台鎭 金炳始등 守舊事大派의 反對와 謀略에 達着 곧 新設 3局의 事務는 停廢되고⁽¹⁰⁾ 同年 3월에 金玉均과 同時發令으로 金玉均은 東南諸島開拓使 兼捕鯨使에, 朴泳孝는 廣州留守 兼守禦使로 左遷 되었으며⁽¹¹⁾ 朴泳孝는 守禦營에 鍊兵隊를 新設하고 日本式訓練을 始作하다가 同年 12월에 다시 守舊派의 謀略으로 留守職마저 辭任하였으며 朴泳孝가 計劃한 新聞「漢城旬報」第一號는 同年 10月 1日 創刊되었다.⁽¹²⁾

4. 甲申政變과 第1次 亡命

閑職으로 물러난 朴泳孝는 甲申 二月에 一時 美公使와 同道 美國遊覽을 계획하였으나 日本外

(7) 菊池謙著「近代朝鮮史」上(1937年刊) p. 628

(8) 日省錄 高宗壬午 11月 28日條 同 12月 1日 2日條, 承政院日記 光緒 8年 11月 24日條 同 12月 1日 2日條

(9) 石川幹明「福澤諭吉傳」第3卷(1932年刊) p. 293 以下

(10) 朴泳孝履歷書 開國 491年條

(11) 日省錄 高宗 20年 3月 17日條

(12) 日省錄 高宗 20年 2月 5日, 漢城旬報 第1號, 福澤諭吉傳 第3卷 p. 297 以下

務卿井上馨의 反對로 挫折되었으며⁽¹³⁾ 朴泳孝는 金玉均등 同志와 같이 密會를 거듭하면서 尋常의 方法으로는 도저히 政權을 잡을 수 없다고 判斷하고 閔氏戚屬의 事大派의 打倒를 決心하고 井上角五郎 島村代理公使등을 통하여 日本政府의 協力을 交渉하고 同意를 얻게 되자 甲申年 12月 4日 郵政局創設祝賀宴에 乘하여 所謂 甲申政變을 일으켰으나 日帝의 非協力으로 3日만에 失敗하고 朴泳孝는 金玉均 徐光範 徐載弼等과 같이 日本으로 亡命하게 되었으며 朴泳孝는 兩徐와 같이 美國桑港까지 直行하였으나 朴泳孝와 徐光範은 곧 日本으로 돌아왔다.

朴泳孝는 日本名을 山崎永春이라고 부르고 僑胞留學生을 위하여 親隣義塾을 經營하면서 消日하고 있었다.⁽¹⁴⁾ 朴泳孝는 뒤에(韓日合併後) 自作의 甲申政變을 다음과 같이 回顧하고 있다.

日本은 朝鮮에 있어서의 淸國의 勢力을 驅逐하고자 하였으나 좀처럼 그 機會가 오지 아니하여 遺憾으로 생각하고 있던中 1884년에 마침 淸國이 安南問題로 佛國과 武力交戰을 벌이고 있었으므로 이 機會에 日本은 朝鮮에서 事變을 일으켜서 淸國의 勢力을 驅逐하고자하는 野心을 갖고 있었다. 事實을 따지고 보면 우리들(開化黨)은 淸日角逐의 싸움에 희생을 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勿論 우리들도 本來부터 守舊黨을 驅逐하고 開化黨으로 政府를 組織할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으므로 守舊黨에 대하여 淸國의 援助가 있는 以上 우리들이 日本의 支援 없이 어떻게 舉事할 수 있겠는가. 우리들과 竹添公使間의 默契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우리들은 舉事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이 舉事하고 나니 竹添公使는 約束을 卑怯하게 뒤엎고 우리들을 死地에 몰아 넣고 逃亡친 것이다. 이는 勿論 竹添公使의 個人的인 消極性에도 失敗의 原因이 있겠지만 日本政府가 優案不斷하여 大決心을 하지 못한 것이다. 其證據로는 政變翌日에 仁川領事가 竹添公使에게 本國政府의 무엇인가 訓令을 傳達한 것으로 보아 推測이 간다.⁽¹⁵⁾ 當時 漢城에는 淸國兵丁이 四百밖에 없었다. 閔氏事大派의 左右營(舊式)을 합하여 쓸만한 兵力은 一千名에도 못미치고 約五六百程度였다. 그러나 우리 開化黨에 屬하는 新式訓練隊는 約 千名 가량 있었으며 日本兵 二百名을 합치면 넉넉히 淸國兵과 守舊派의 兵力을 打倒할 수 있다는 勝算이 서고 있었으므로 舉事한 것인데 竹添가 逃亡하고 보니 우리들도 따라서 逃亡까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며 特히 동지 洪英植을 무참하게 죽인 것은 원통하기 짝이 없고 舍兄 泳孝도 같이 殺傷당한 것이다.

당시를 回顧하면 참으로 感慨無量하다. 甲申政變의 舉事는 淸黨인 事大黨을 없애는데 目的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實은 高宗을 廢하고 皇太子를 擁立하여 一大改革을 단행할 決心이 있었으며 高宗은 잠시 日本 長崎에 遷居토록 할 계획이었다.⁽¹⁶⁾

(13) 朴泳孝履歷書 開國 496年條(但 496年은 493年(1884年)甲申으로 訂正되어야 함)

(14) 前掲「福澤諭吉傳」p. 345, 381

(15) 甲申年 11月 28日에 吉田外務大輔가 竹添公使에게 竹添公使가 提示한 甲乙兩案中 甲案(開化黨을 煽動하여 朝鮮 內亂을 일으켜 淸國과 開戰까지 내다본 政策)을 不可하다 한 訓令(日韓外交資料集成 3. p. 3 以下)이 傳達된

(16) 釋尾東邦「朝鮮併合史」(1926年刊) p. 85 以上

위의 朴泳孝의 回顧에 따르면 (1) 政變에 앞서 開化黨은 彼我의 軍事力을 충분히 측정하고 勝算을 確信하였고, (2) 政變은 高宗의 廢位까지를 目的으로 하였고, (3) 日帝 公使館의 軍事支援을 事前에 確약받고 舉事하였던 것이며 失敗의 原因은 全然히 日帝의 背信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日帝의 行跡을 보면, 말은 바른대로, 그뒤에도 恒常 強國에는 아침을 일삼고 弱國에는 배신과 侵略으로 實利를 추구하는 것이 一貫된 國策이다.

朴泳孝는 甲申政變을 回顧하면서 同志의 人物評을 하고 있는 바, 朴泳孝의 人物됨도 測量할 수 있는 資料가 됨으로 실어보면 다음과 같다.

高宗은 特히 洪英植을 寵愛하고 있었으며 人品이 溫和하고 人格者로서 同志中에서 年長者였으므로 자연 尊敬을 받고 있었다. 淸兵에 쫓겨 우리들이 逃亡할 때 洪英植을 데리고 같이 가고자하였으나 그는 念慮말라고 하며 高宗을 扈從하겠다고 나섰다가 淸兵에게 慘變을 당한 것이다. 洪으로부터는 平素 高宗의 信任을 믿었고 高宗을 버리고 참아 逃亡할 수가 없었고 高宗의 身上의 萬一을 念慮한 나머지 扈從한 것이었다. 그의 人物의 篤實이 더욱 가슴 아프게 한다.

金玉均은 血氣가 旺盛하고 膽力도 있었다. 우리들 同志中에서는 가장 뛰어난 人物이었지만 조금 性質이 急하고 成功을 서두르고 輕舉妄動하는 편이었으나 그런 사람을 두고 革命의 人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今까지 生存하고 있었더라면 韓國을 위하여 相當한 貢獻을 할 일꾼이었다고 생각할 때 가슴이 답답해진다.⁽¹⁷⁾

5. 戊子上疏와 辛卯上書

朴泳孝는 日本에 亡命中 開國 497年(1888年) 戊子 正月 23일에 高宗 앞으로 一萬三千餘字의 長文의 上疏文을 作成하고 있다. 同戊子上疏가 高宗에게까지 上呈되었는지의 與否는 分明치 아니하나 그 內容은 近代의 政治·法律·經濟의 改革思想으로 가득차 있다. 解放과 同時에 同上疏가 日本의 外交文書 刊行으로 世上에 알려지자 內外學者의 關心을 끌고 研究檢討되고 있으며 本論稿 역시 同上疏의 思想的 研究에 窮極의 目的을 두고 있다. 朴泳孝는 또 1891年 辛卯 2月 19일에 大院君 앞으로 다음과 같은 親筆書翰을 上書하고 있다.⁽¹⁸⁾

年前上書이오나 未承下復하와 伏帳無比로소이다 今有不得已之事하야 冒悚荐陳하오니 伏望閣下周察猛省이니이다 夫政府之職者는 內治人民平安하며 外交列國親和하며 防禦敵國無隙也요 生之脫國爾來七載에 維不能詳悉情勢이오나 然이나 時聞音信하고 誠不禁歎息憂懼者는 何리오 百姓은 思反而不能安之하고 列國은 請交而不能親之하고 敵人은 覬覦而不能無隙하고 法紀는 解弛而上下無

(17) 釋尾 前掲 p. 87 以下

(18) 藤村德一 「居留民之書翰」(1927年刊) p. 1 以下

恥하야 惟賄賂是貪而以爲長久之計이오니 嗚呼라 將何以保存宗社乎잇가 昔豐臣秀吉之入寇也에 鉅無武滿이나 尙有忠良之相과 智勇之將하고 大隣之助하며 且人心不離하고 儲蓄不乏而猶僅免於覆亡이어늘 如或於今日에 又有此警하야 校計索情하면 比昔如何리오 王上不及宣祖하고 將相不如柳成龍李舜臣申砬等일뿐더러 人心已離하고 儲蓄已乏하며 大隣之交도 亦有不同이면 則將何所恃而泰然無憂乎리오 夫盜賊之發이 必乘夜深人靜者는 便其所無備也니이다 故로 咎不在賊而在於我오 敵人之寇도 亦然이오니 古聖은 云하되 慢藏誨盜와 亂軍引勝이라함을 卽此之謂이니이다 閣下王室之親하시고 而朝野依望其職分이시오니 不可坐而待亡이오 伏望閣下는 惟宗社是念하시고 淸心從善하옵소서 靈已受人으로 奮發興復之計이면 庶可以匡保危殆矣니이다 夫難合者는 人心也오 一朝離散이면 不可以復集이오니 請컨대 早爲之謀하시고 無致悔焉하소서 餘는 在別片하오니 伏冀下鑑此 하나이다 上 石坡大人閣下

辛卯二月十九日

侍生 朴泳孝再拜

孝忠經千六百部送呈分下諸在朝者伏望而耳

【別 單】

近者日本政府와 及民間에 有甲乙二派하며 甲은 欲助朝鮮之獨立으로 以保東洋之大勢하고 乙은 欲侵朝鮮與淸으로 開戰而已이오니 頗有力하며 方爲計策하야 業已送聞하고 又勸生等爲嚮導요 生이 雖不得志於本朝라도 豈可導外人하야 蹂躪鄉國乎哉리오 是以로 不得已外應其請하며 以索其情耳로소이다 夫彼等之謀는 雖未知其必然之라도 防禦之道則不可疎忽也니이다 如或一朝淸日構事於國境이면 魯亦不坐視라하며 且國人은 以其讖諛로 諄諄諱諱不畏吾令하고 反畏敵國하고 盜賊蠢行으로 良民이 不能安하리이다 若內外俱發하면 勢不可遏이오 愚以爲備此之道로는 有三策이오니 謹陳其事하되 如左로소이다

閣下體聖人無固無我之道로 招集閔氏及卿幸有權勢者하야 示之以閣下決不參與行政하시고 不報復舊怨之意하야 而諭之以臣子之大義와 國家大勢하고 宗社安而可享福祿衣食하며 而不顧王室은 非義也니 國家危則身家亦危하며 參與國之官職하야 而不理政務이면 不知大勢也니이다 而使之協和하고 推良實忠純者爲相하고 使斟酌損益하며 平明刑賞하며 舉智信仁勇者爲將使하야 使防禦內外之奸하고 薦廉潔公平者爲方伯守令하야 使安撫百姓하야 而嚴禁賄賂賣官이 一也오

閣下率忠志之士數百하야 攘除政府之姦凶으로 一新廢政이 二也오

閣下來臨日本하야 商議于淸日政府而妥辨이 三也니이다 (筆者懸吐)

위 書翰은 그 作成年의 干支에 따라 「辛卯上書」라고 略稱하기로 한다. 附記에 의하면 辛卯上書와 같이 「孝忠經」의 冊子 1,600部도 同送 上呈하고 있다.

辛卯上書는 時局을 壬辰亂때와 比較하면서 人材의 登庸과 內政改革의 必要性和 列國과의 和

親政策을 呼訴하였고, 同別單은 日本의 積極消極의 甲乙兩派의 存在를 紹介하고 乙派인 積極派가 優勢하여 淸日開戰의 可能性이 높고 이에따라 日帝에 의한 朝鮮侵略의 危險性이 있음을 強調하고 時局打開의 緊急要件으로 「安撫百姓」「攘除姦凶」「訪日商議」의 三條를 提示하고 있다 「訪日商議」를 除外하던 辛卯上書의 趣旨는 大略 前示「戊子上疏」를 要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訪日商議」는 國家實力者의 頂上會談으로 難局을 打開하고 平和를 誘導하고자 하는 現代의 外交方式을 提唱한 것으로 淸日戰爭의 豫言과 아울러 오늘날에도 通用할 수 있는 朴泳孝의 先知的 識見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뒤에 나오는 1894年(開國 503年) 甲午 仁川서의 「甲午上言」의 筆致도 「戊子上疏」의 上言部分과 一致함을 볼 때 우리는 「戊子上疏」「辛卯上書」「甲午上言」等이 모두 一脈相通하고 있으며 三書가 모두 朴泳孝 自身の 親稿繕寫의 文書임이 分明하다고 단정하는 바이다.

6. 李逸植事件

1892年 壬辰 5월에 李逸植(日本名 和田常一) 權東壽(日本名 中野耕心) 權在壽(日本名 中野貞志)의 3名이 金玉均과 朴泳孝를 暗殺할 目的으로 日本에 入國하고 目的達成을 爲하여 金玉均과 朴泳孝에 接近을 企圖하고 있었다.⁽¹⁹⁾ 朴泳孝는 당시 京都 相國寺塔頭 玆雲庵에 假寓를 정하고 있으면서 閑居의 餘暇를 이용하여 1893年 癸己 9月 東京市 麴町區 一番丁에 僑胞學生들을 위하여 「親隣義塾」을 經營하고 있었다.

甲午年에 들어서서 李逸植은 洪鍾宇를 暗殺者로 包攝하여 金玉均과 같이 甲午 3月 25日 上海로 떠나 보낸 뒤에 直接 朴泳孝를 「親隣義塾」으로 찾아 갔다. 李逸植이 이미 情報員으로 親隣義塾에 入塾시켰던 金泰元의 漏說로 朴泳孝의 幕下인 李圭完 鄭蘭教 등이 暗殺計劃을 미리 알아 채고 있던 차이므로 同 3月 28日에 「親隣義塾」을 찾아온 李逸植을 李圭完과 鄭蘭教가 結縛하고 監禁한 것이다. 李逸植의 暗殺에 加勢하기 위하여 뒤따라 「親隣義塾」을 찾아오게 되어 있던 權東壽와 權在壽는 겁에 질려 拳銃과 刀劔을 所持한채 朝鮮公使館에 出頭하여 代理公使 俞笑煥에게 保護를 要請하게 되어 事件이 日警에 移牒되었다. 同 3月 29日 日警은 「親隣義塾」을 臨檢하여 李逸植의 監禁을 풀어주고 李逸植 朴泳孝 李圭完 鄭蘭教등을 檢事局에 送致하였다. 檢事局에 의하여 모두 起訴되었으나 李逸植과 朴泳孝는 無罪 李圭完 鄭蘭教는 禁錮 1月 10日로 事件이 落着되었다.⁽²⁰⁾

7. 再登場과 第2次 亡命

1894年(高宗31年)甲午에 淸日戰爭의 開始와 더불어 日帝의 強制에 의한 日帝式 內政改革이 始

(19) 李逸植外數名被告事件豫審決定書(伊藤博文「朝鮮交涉資料」中卷 p. 285 以下, 田保橋源「近代日鮮關係の研究」下(1940年刊) p. 191 以下, 朴泳孝履歷書 506年條(但 506年은 503年의 誤)

(20) 田保橋 前掲, p. 198

作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朴泳孝는 日帝의 助力으로 十年間의 亡命生活을 清算하고 同年 7월에 故國에 돌아와 仁川租界에서 王室과 秘密裏에 交渉 끝에 上言文을 同 8月 1日 義禁司를 通하여 高宗에게 奉呈하였다. 同「甲午上言」은 다음과 같다.⁽²¹⁾

原情死罪臣朴泳孝의 爲冤迫情由事段은 臣矣身이 以世祿之裔로 臣至臣矣身父子兄弟하야 特被 寵遇하고 並叩榮祿하야 臣矣身父子는 感激殊私不知攸報요 臣矣身父元陽은 常戒臣矣身兄弟曰 爲國圖報엔 不危避難이라하시니 臣矣身年幼識淺하야 雖聞其言이나 而不解其意하고 徒以仰答 聖恩之萬一로 爲心하고 而不能辨事理之順逆하야 乃至甲申之多에 伏見時事日艱하고 國事漸危 하야 不勝憂憤之心으로 欲行矯揉之道였으나 丹忠未效하고 惡名遽加하야 上貽君父之憂하고 下延 家門之禍하고 父母兄弟死亡하야 殆盡이로소이다 一身이 飄零遁逃異域하야 以臣矣身之負犯으로 不容一刻延存於覆載之間하야 而臣矣身一生矢心蒼天可質하야 若不一番暴白自經溝瀆이면 則黥 昧惡名千秋難洗요 是以로 含垢忍耻하고 流離鎖尾하야 殆近一紀之久矣니이다 竊伏聞하되 近者에 聖朝治化更新하고 蕩滌瑕穢라하니 臣矣身은 不勝歡忭矣니이다 繼以感泣歸死故國하며 庶在今日仍 伏念이오 臣矣身此行은 願再瞻天顏하야 畢訴區區之衷이 一也오 得見父母兄弟之骸骨하야 而歛葬 之가 二也오 此願獲遂면 雖退死溝壑이라도 亦無所恨이로소이다 臣矣身은 已獲罪於君上하고 貽禍 於父母하야 眞天地間一窮人耳니이다 僑寄日本十有一年에 寢不能安食不能甘하고 不蓄妻孥之私 하고 不參音樂之娛하고 蚤夜憂惶惟望은 聖上之見諒이오 今者에 來伏城外하야 已經多日이나 而九 重深遠하야 才誠莫達이오 謹泥首俯伏하며 待命于江陰하며 乞天地父母俯鑑臣矣身危苦之衷하고 曲察臣矣身之斷斷無他하야 令攸司議其逋慢違命之罪하야 斧鉞湯鑊이라도 安所甘心이오며 惶隕罔 措不知所達이로소이다(筆者懸吐)

朴泳孝의 위와 같은 哀切한 謝罪上言은 嘉納되어 高宗은 同 8月 初 4日字로

向日朴泳孝之事는 論其形跡則孰不曰可誅이오마는 察其心曲則實有可原이로다 今見原情하니 十 年漂泊之餘에 猶不忘戀國之心이니 罪名特爲交周하야 以示朝家寬大之意니라⁽²²⁾(筆者懸吐)

고 하여 그의 反逆의 罪名은 特赦交周된 것이다. 朴泳孝는 同年 12月 第2次 金弘集內閣에 井上 公使의 推挽으로 內務大臣에 任命되었고 같은 開化派의 徐光範도 特赦되어 法務大臣에 任命되 어 中立的인 親日內閣이 構成된 것이다. 俗稱 金弘集과 朴泳孝의 聯立內閣이라고 稱하였다.

朴泳孝는 「戊子上疏」에서 밝힌 國政改革의 靑寫眞을 가지고 登場한 것이다. 高宗은 1895年 乙

(21) 高宗實錄 卷32—32面 菊池謙讓「近代朝鮮史」下, p. 332

(22) 前掲書 卷32—34面 菊池 前掲 p. 333

未 1月 7日 明治維新을 모델로 親히 王妃 王世子 大院君 宗親 및 百官을 引率하고 宗廟에 自主獨立의 警告文을 奉告하고 「洪範」 14條와 「維新論音」을 宣布하였다. ⁽²³⁾

井上公使는 內政改革의 推進을 口實로 侵略의 方便으로 顧問政治를 서둘고 內閣과 各部에 日本人 顧問을 다음과 같이 配置하였다. ⁽²⁴⁾

內閣顧問	石塚英藏	(日本, 法制局參事官)
宮內府顧問	岡本柳之助	(公使館要員)
內部顧問	齊藤修一郎	(日本農務省次官)
法部顧問	星 亨	(前衆議院 議長, 英國 Barister)
軍部顧問	橫瀬幸彦	(公使館附武官)
警務顧問	武久克彦	(日本警視廳警視)

實質적으로 朴泳孝를 主軸으로 하는 政治的 改革이 이루어질듯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朴泳孝가 自主獨立을 口實로 日本勢力을 排斥하고 井上公使도 眼中에 없다는 風聞이 나돌고 한편으로는 守舊大派가 閔妃와 朴泳孝의 密着을 시기하고 離間에 腐心하며 守舊派의 再執權을 劃策하고 있는 中에 朴泳孝는 宮闕에 雜流輩의 出入을 禁止하고 宮中紀綱의 肅正을 斷行하기 위하여 新式 訓練兵으로 王宮을 守衛하고자 衛兵交替를 6月 23日의 御前會議에 提案하였다. 訓練兵交替는 既히 高宗의 內諾을 받은 것임에 不拘하고 高宗은 衛兵交替를 갑자기 反對하여 朴泳孝는 窮地에 몰려 責任지고 不得已 辭表를 奉呈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때마침 守舊派의 洪在信가 日人 壯士 佐佐木(無賴漢)와의 筆談中에 「朴泳孝近日將廢妃云云」의 書札을 얻어 가지고 衛兵交替提議는 閔妃廢位陰謀라고 掠造하여 沈相薰을 通하여 上奏한 까닭에 ⁽²⁵⁾ 衛兵交替를 反對한 것이며 洪在信의 謀略으로 因하여 同 7月 6日 夜半 閣議에서 逮捕令이 내려졌다. 朴泳孝는 危機一髮 杉村代理公使의 周旋으로 7月 7日 새벽 艱辛히 서울을 빠져나와 逮捕令에 쫓기면서 幕下の 申應熙 李圭完 禹範善等 一行 20名과 같이 다시 日本으로 第2次 亡命의 길을 떠난 것이다. ⁽²⁶⁾

當時 朴泳孝가 閔妃에 아첨하고 日本勢力을 배척하고 있었다는 日人間의 所聞에 관하여 法部 顧問으로 朝鮮의 裁判制度改革에 앞장서고 있던 星亨顧問은 다음과 같이 井上公使에게

閣下는 朴泳孝가 王妃의 自家藥籠中에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그것은 王妃가 朴泳孝의 藥籠中에 들어가는 前兆입니다. 朴泳孝는 朝鮮唯一의 政治家입니다. 그의 重厚한 點으로 보

(23) 朴泳孝上疏의 二日興法紀安民圖中에 「伏願聖明率百官 祭于宗廟 以及皇天后土誓約五事云云」이 있다. 洪範十四條와 維新論音의 宣布는 朴泳孝의 政治作用에 基한것이라고도 解釋할 수 있을 것이다.

(24) 京城府史 第1卷 p. 607

(25) 德永勳美 「韓國總覽」(1907年刊) p. 154 以下

(26) 德永勳美 前掲 p. 155, 菊池謙讓 「朝鮮近代史」下 p. 383. 以下, 朴泳孝履歷書 開國 507年(503年의 誤)條에는 日本을 通하여 美京(Washington, D.C.)까지 亡命하였다가 다시 日本으로 돌아온 것으로 되어 있다.

아 朝鮮外交의 第一人者입니다.⁽²⁷⁾

라고 辯護하고 朴泳孝는 當時 韓國第一의 무게 있는 政治家라고 評하고 있다. 東京의 政界有力者인 佐佐代議士와 柴代議士가 井上公使와 朴泳孝間의 不和를 듣고 來韓한에 대하여 星亨顧問은 그들에게 井上公使와 朴內部大臣間의 軋轢에 관한 質問에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朴泳孝와 閔妃間의 妥協에 대하여 朴泳孝가 日本의 恩惠를 잊고 改革을 反對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것은 皮相의 見解이다. 改革이 잘 進陟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朴泳孝의 罪가 아니다. 그 罪는 井上公使에게 있다. 井上公使의 消極政策으로 顧問들間의 意見이 서로 背馳하고 衝突하기 때문이다.⁽²⁸⁾

朴泳孝의 意見은 文物典章의 改革을 日本을 모델로 하고 日本人 顧問의 意見에 따르고져 하나 官吏의 進退와 같은 細事に 이르기까지 一一히 井上公使가 干涉함을 反對하고 있을 따름이었다.⁽²⁹⁾

朴泳孝의 反對로 日本借款 500萬圓이 不成立되었다고 하나 借款條件에 있어서 (1) 三年後부터 返濟할 것 (2) 日本紙幣를 通用시킬 것 (3) 朝鮮은 紙幣를 發行치 않을 것 (4) 三道租稅와 海關稅를 抵當으로 할 것 等の 苛酷한 要求條件을 朴泳孝는 反對한 것이다. 獨立主權國家에 대한 이러한 苛酷한 要求는 日本의 輿論도 아닐 것이다.⁽³⁰⁾

居留地 日本人의 反對運動이 일어난 것은 日本側의 改革要求에 대하여 朴泳孝가 談判의 窓口가 되어 혼자서 責任진 것같이 보인 때문이며 그 理由인즉 朝鮮政府에서 朴泳孝는 日本人과 交際도 있고 日本事情을 잘 알고 있는 故로 難局難談은 全部 朴으로하여금 應接케 하고 또 朴으로 하여금 拒絕케 한데 있다.⁽³¹⁾

近來 日本人이 京城內의 市街地를 買入하는 것이 流行인에 朴泳孝는 이와 같이 京城內의 土地가 外國人의 所有가 될때 後日에 困難한 問題가 생길 것을 念慮하고 外國人과의 土地 賣買를 禁止한다는 訓令을 내렸다. 朴泳孝는 말하기를 日本이 上下一致하여 外國人의 土地 所有權을 許可하지 말라고 要求하면서 日本人 自己들의 土地所有만은 認定하라고 強要하는 것은 理致에 맞지 않는 無理한 말이므로 應할 수 없다는 것이다.⁽³²⁾

(27) 青柳綱太郎「朝鮮史話と史蹟」(1926年刊) p. 789

(28) 青柳 前掲 p. 793

(29) 青柳 前掲 p. 794

(30) 青柳 前掲 p. 799

(31), (32), (33) 青柳 前掲 p. 801 以下

日本人은 王室所有의 土地를 借用하고 農事試驗場이라고 主張하고 或은 開拓開墾이라고 稱하고 政府의 同意를 要求하므로 朝鮮政府에서 閣議에 附한 結果 朴泳孝는 이를 反對하였다. 方今改革이 進行中에 있는 때 어떤 土地가 王室所有인지 아닌지 不明分한 此際에 土地를 日本人에게 마구 貸付하면 將來 여러가지 混亂이 빚어질 것이므로 改革의 基本原則이 設定되기 前에는 그러한 日本人의 要求에 應할 수 없다는 것이다.⁽³³⁾

朴泳孝가 日本人의 面會를 拒絶하였다고 하나 朴泳孝가 多忙한 것도 事實이고 그가 元來 健康이 나쁜 탓으로 交際가 서투른데도 原因이 있다.

日本에 있을 때도 보아도 朴泳孝는 金玉均과는 달리 寺刹에 들어가 있거나 或은 親舊집에 묵고 있을 때도 혼자서 正坐하고 易書나 읽으면서 自樂하는 것이 趣味였다. 自己가 먼저 交際를 積極的으로 求하는 性質이 아니다. 入閣한 뒤에 面識이 있는 日本人의 請託이 많이 왔으나 그는 情實을 싫어하기 때문에 모두 冷情하게 拒絶한 것이 事實이다.⁽³⁴⁾

法部顧問 星亨은 日本 最初の 英國 Barrister 답게 比較的 公平하게 朴泳孝의 人物評을 하고 있다. 星顧問의 評으로 미루어 볼때 朴泳孝는 感情의인 사람이 아니고 冷情한 理性的인 사람이며 漢學이 豊富하여 어려운 易學에까지 조예가 깊었던 것을 알 수 있고 朴泳孝는 自我가 強하고 自主獨立의 主權意識을 堅持한 新時代의 非凡한 政治家로서의 素質과 識見을 가지고 있었다고 解釋되는 것이다. 그의 政治的 識見이나 力量은 어쩔수없이 그는 또 다시 종전 나쁘진 日本에 亡命하게 되었다. 朴泳孝는 이번의 第二次 亡命을 回顧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甲申政變의 反逆罪人으로 高宗과 閔妃의 信任을 힘써 얻어야할 立場에 있었으므로 때로는 日本人側에 비위에 맞지 않는 態度를 取하게 된 것이 事實이오나 남의 心情을 理解하지 못하고 日本에 대한 背恩者로 取扱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金弘集을 排斥하였다고 하나 金弘集은 保守的인 人物로 改革에 消極的이었으므로 意思가 相衡하여 合致가 되지 못하였을 뿐이다. 當時에 自己가 高宗과 閔妃의 廢立을 企圖한 것은 事實이며 甲申政變 때와 같은 一貫된 나의 생각이다. 高宗과 閔妃가 政權을 잡아가지고는 開化黨에 의한 政治改革이 不可能하기 때문이며 日本이 開化黨을 眞心으로 後援하였드라면 閔妃事件도 일어나지 않고 改革도 잘되었을 것이다.⁽³⁵⁾

朴泳孝는 一旦 決心하면 變更하지 아니하는 自我가 強한 固執쟁이었으며 初志一貫이 그의 政治家로서의 信念이오 또 特色이었다고 할 수 있다.

(34) 青柳 前掲 p.803

(35) 釋尾 前掲 p.116

1900年(光武4年) 庚子 7월에 朴泳孝는 日本亡命中 神戸에 李承麟 李祖鉉 金彰漢 李謙濟等을 招致하고 亡命中인 同志를 糾合하여 故國에 돌아가 政府를 顛覆하기로 謀議하고 舉事에 必要한 資金調達을 韓圭高와 尹錫準에게 付托할 目的으로 極秘裏에 同年 11월에 李承麟과 李祖鉉을 故國에 密派한 일이 있다. 그들은 「願送貳萬圓」의 朴泳孝의 密書를 携帶하고 歸國하여 韓圭高等에게 傳達한 所謂 庚子年舉事事件이 摘發되어 朴泳孝는 缺席裁判으로 「絞」에 金彰漢 李謙濟 尹錫準은 缺席裁判으로 「笞一百」과 「終身流刑」 李承麟 李祖鉉은 裁判에 의하여 「笞一百」 「終身流刑」에 處하고 韓圭高는 辦金을 推絶한 관계로 無罪放免되었다.⁽³⁶⁾ 當時의 法部大臣은 獨眼策士인 金永準臨時署理였다.

1904年(光武8年) 甲辰 2月에는 露日戰爭이 勃發하였으며 日帝의 武力的 強要로 韓日議定書가 調印됨으로서 韓國은 日帝의 保護國으로 轉落하였다. 翌 1905年(光武9年) 乙巳 11月에는 위 韓日議定書에 의거하여 保護政治의 實踐을 위한 乙巳保護條約이 銃칼의 威脅下에 強制調印된 後에 豫定코—스데로 日帝는 統監府를 翌年 2月 1日을 期하여 首都 서울에 設置하였다. 朴泳孝가 前示 戊子年正月의 上疏에서 豫言한지 8年만에 亡國의 길을 祖國은 다름박질하고 있었던 것이다.

8. 歸國과 併合

1907年(光武11年) 丁未 6月 初旬에 朴泳孝는 非公式으로 歸國하여 釜山에 滯留하고 있다가 6月 7日에 秘密裏에 上京하여 宮內部顧問 加藤增雄와 接觸하여 6月 13日에 特赦詔勅을 拜受하고 翌日 下午 7時에 入待하였으며 在京 各團體의 歡迎을 받고, 同月 30日에는 狀洞 農商所에서 「朴泳孝歸國歡迎會」까지 開催하였다.⁽³⁷⁾ 드디어 同年 7月 18日 朴泳孝는 宮內部大臣에 任命되었다.⁽³⁸⁾ 마침 高宗皇帝는 海牙密使事件의 트집으로 伊藤博文에 의하여 引責을 強要당하여 不得已 王位를 皇太子에게 代理케 하는 詔勅을 頒布하고 代理式典까지 舉行한 바 있는데,⁽³⁹⁾ 日帝는 代理가 아니니 讓位라고 解釋하고 明治天皇이 재빨리 韓國皇太子에게 皇帝即位의 祝賀電文을 보내온 것이 불씨가 되어 日本側 解釋에 同調하는 李完用內閣과 皇帝代理就任式으로 解釋하는 高宗皇帝側과 이에 同調하는 宮內部大臣朴泳孝便과 衝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李完用內閣은 讓位式을 既定事實化하고 7月 21日 讓位의 反對派인 朴泳孝 李道宰 南廷哲等을 新皇帝의 勅許를 얻어 警務顧問部에 拘引하고 이에 同調한 武官 李熙宰 魚潭 李甲等도 囚禁하였다.⁽⁴⁰⁾ 뒤에 證據不充分으로 모두 無罪赦免되었으나 朴泳孝만은 保安法違反으로 濟州島安置二年의 流刑을 當하였다. 流配生活 一年만에 赦免되었으나⁽⁴¹⁾ 上京이 禁止되어 朴泳孝는 馬山에 蟄居하고 있으면서

(36) 釋尾 前掲 p.213

(37) 大韓每日新報 光武 11年 6月 8日, 同 6月 14日, 同 6月 21日, 同 6月 25日

(38) 大韓每日申報 光武 11年 7月 18日 號外 및 同 19日 本紙

(39) 大韓每日申報 同年 7月 21日, 李瑄根 「韓國史」現代篇(1963年刊) p.954

(40) 大韓每日申報 閏年 7月 23日

(41) 朴泳孝履歷書 開國 516年條

韓日合併을 맞이한 것이다.

드디어 1910年(陰曆4年) 庚戌 8月 29日 韓日合併條約이締結되고 日帝는 所期의 目的대로 韓國을 併合하고 總督政治를 開始하였으며 併合에 따른 論功行賞으로 朴泳孝는 侯爵의 爵位를 받았고 1911年 새로 日帝로부터 爵位를 받은者들로 組織된 朝鮮貴族會會長 1918年 朝鮮銀行理事 1921年 中樞院顧問 1926年 中樞院副議長 1932年 日本貴族院議員에 各任命되었으며 1939年 9月 21日 侯爵 中樞院副議長職에 있으면서 作故하였다. 享年 79才였다.

II. 朴泳孝 上疏文의 種類

1. 日本外交文書本

甲申政變에 失敗하고 日本으로 亡命한 朴泳孝는 前示와 같이 開國 497年(1888年, 高宗 25年) 戊子 正月 13日에 上疏文을 作成하고 있다. 이 戊子上疏文은 日本 國際聯合協會編纂「日本外交文書」第21卷(明治 21年 1月—明治 21年 12月間) (1949年, 東京刊)에 編綴(292—311葉)되어 있는 것인 바 「朝鮮國內政=關スル 朴泳孝建白書」(朝鮮關係雜件 No. 106)의 標題와 「朴泳孝建白書」의 略題가 붙어 있으며 아래와 같이 編綴된 經緯를 附記하고 있다.

此書의 原本은 林外務次官이 明治 27年 7月 中旬 某氏로부터 備覽한 것을 後日의 參考로 하고져 本省에 寫本을 保存하라는 川崎記錄課長代理의 命에 依하여 當部에서 謄寫한 것이다.
(翻譯)

明治 27年 7月 20日

記錄課機密部

某氏는 青木功一氏에 의하면 福澤論吉일 것이며 當時의 林外務次官은 福澤의 次男 捨次郎의 丈人 林董을 指稱한 것이다.⁽⁴²⁾

우리나라式으로는 福澤와 林次官은 「사돈」 사이다. 朴泳孝 上疏는 原本外에 副本도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되며 그 副本의 하나가 福澤의 手中에도 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福澤의 副本이 林次官의 손을 통하여 記錄課에서 謄寫한 것이 明治 27年(1894年) 7月 20日 임을 볼때 原本이 作成된 1888年과 사이에 6年の 歲月이 흐르고 있다.

日本은 1894年 甲午 6月에 混成旅團을 強制로 仁川港에 上陸시키고 7월부터 朝鮮의 內政改革을 淸國과 相議없이 單獨으로 推進키로 決定하고 있다. 當時의 外務次官이 林董이었음으로 朝鮮內政改革의 方向을 設定하기 위하여 사돈인 福澤의 諮問을 받고 朴泳孝의 戊子正月의 上疏文을 借覽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推測된다. 朴泳孝의 內政改革의 青寫眞이라고 할 수 있는 戊子上疏

(42) 青木功一 「朴泳孝の民本主義・新民論・民族革命論」(一) (『朝鮮學報』 80輯 1976年, p.130)

文이 祖國의 自主의 開化에 援用되지 못하고 아이로니컬하게도 日帝의 侵略政策에 利用된 것이다. 朴泳孝의 上疏는 위와같이 林次官의 德澤에 日本外交書中の 하나로 保存된 것이며 그러므로 이를 朴泳孝의 上疏文의 「外交文書本」이라고 特稱하고자 하는 바이다.

2. 岡本稿本——丁仲煥本

釜山 東亞大學의 丁仲煥教授는 1965年 亞細亞學報 第1輯에 「朴泳孝上疏文」의 論題下에 朴泳孝의 1888年의 「戊子上疏」의 全文을 掲載하고 있다. 丁教授는 本上疏의 原本이 東亞大學 圖書館所藏인 筆寫本이었다고 하며 標題에 「交詢社岡本氏稿本」이라고 記入되어 있었으며 「岡本」는 「岡本柳之助」일 것이라고 推測하고 있다. 前示 (1)을 「外交文書本」이라고 稱한다면 東亞大學所藏本은 그 標記에 따라 「岡本稿本」이라고 稱할 수 있을 것이다.

日帝는 甲午更張을 本格的으로 促進하기 위하여 駐韓公使를 井上馨(前內相)로 更迭하였고 井上公使는 甲午 11월에 就任할 때에 顧問政治를 徹기로 作定하고 內閣과 各部에 顧問을 配置하였으며 井上가 宮內部顧問으로 代려온 사람이 바로 福澤諭吉이 組織한 交詢社會員인 岡本柳之助였다. 井上和 福澤은 親密한 사이였으므로 福澤의 推薦으로 岡本柳之助가 起用되었다고 보아도 過히 拂리지 않을 것이다. 朴泳孝의 「戊子上疏」의 「外交文書本」이 福澤手中의 上疏副本에서 나온 것과 같이 岡本도 福澤의 勸告에 따라 朴泳孝上疏의 福澤本을 빌려보고 그가 筆寫하였으므로 上疏文表紙에 將來의 參考로 그 出處를 「交詢社岡本氏稿本」이라고 記入해 두었다고 解釋된다. 다시 말하면 岡本가 自己의 筆寫本을 가지고 渡韓하였던 것이 어떤 經路를 밟아서였는지는 모르되 釜山 東亞大學의 所藏本으로 歸屬된 것이라고 推測된다.

筆者가 年前에 釜山水產大學의 金玉根博士에 부탁하여 「岡本稿本」의 계속스를 얻어 보고자 하였으나 金博士의 書信에 의하면 東亞大學圖書館에는 이미 「岡本稿本」이 所在하지 아니하며 丁教授에 問議하였으나 亦是 그 行方을 모른다고 하셨다는 것이므로 本稿에서는 「岡本稿本」을 對照할 수가 없고 丁教授가 亞細亞學報에 紹介한 朴泳孝上疏文을 「丁本」이라고 略稱하고 對照하기로 한다.

3. 新東亞附錄本

「新東亞」誌 1966年 1月號 附錄 「近代韓國名論說集」 속에 「開化에 대한 上疏」라는 題目下에 朴泳孝의 上疏文의 全文이 掲載되고 있다. 原文의 典據 經위에 대한 說明은 없으나 文章의 誤謬의 性質로 볼때 「丁本」 또는 그 原本인 「岡本稿本」인 듯 하다. 本稿에서는 「東亞本」이라고 略稱하고 對照하고자 한다.

4. 姜在彥本

姜在彥氏는 「朝鮮近代史研究」(1970年 東京刊)의 著書의 史料篇中에 朴泳孝의 「戊子上疏」全文

을 「國政改革에 關한 建白書」의 이름으로 掲載하고 있다. 末尾의 註記로 「外交文書本」의 轉載임을 밝히고 誤字를 補正하였다고 附言하고 있다. 本稿에서는 「姜本」이라고 略稱하고 對照하고자 한다.

5. 韓國史資料選集本

歷史學會에서 編纂한 「韓國史資料選集」(最近世篇)(1975年 1月刊)에 朴泳孝의 戊子上疏가 「內政改革에 대한 建白書」의 이름으로 全文이 掲載되고 있다. 「外交文書本」의 轉載라고 附記하고 있으나 誤字가 위의 各本中에서 가장 많은 것이 缺點이다. 本稿에서는 「韓國史資料選集本」을 「史料本」이라고 略稱하고 對照하고자 한다.

III. 朴泳孝 上疏의 名稱

1. 朴泳孝의 戊子上疏에 대하여, (1) 「外交文書本」은 「朝鮮國內政改革에 關한 建白書」 또는 「朴泳孝建白書」라고 하였고, (2) 丁仲煥教授는 「朴泳孝上疏文」, (3) 新東亞附錄은 「開化에 대한 上疏」, (4) 姜在彥氏는 「國政改革에 關한 建白書」 또는 「朴泳孝建白書」, (5) 青木功一氏는 「朴泳孝上疏」(朝鮮學報 52輯, 1969年) 뒤에는 「與國上疏」(同上 80輯, 1976年), (6) 韓國史資料選集에서는 「內政改革에 關한 建白書」라고 각각 呼稱하고 있다.

2. 朴泳孝上疏의 名稱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建白書系와 上疏系로 区別되는 바 建白書는 「外交文書本」의 標題에서 나온 名稱이다. 明治維新當時 日本에서는 天皇이나 政府에 대한 國政에 관한 建議書를 「建白書」라고 부르기로 統一한에 기한 日本式의 新式名稱이다. 「上疏」는 朝鮮王朝에서 慣用되어온 用語이며 君主에게 文書로 兩班官人들이 意見을 올리는 것을 말하는 制度上的 名稱이다.

그러나 朴泳孝 自身은 그의 上疏를 序頭에서 「謹四拜上言于……大君主陛下」라고 하여 「上言」이라고 表現하고 있다. 「上言」도 「上疏」와 같은 말로도 使用되는 경우가 있지만, 旋閭 贈職 復爵 山訟 雪冤等事에 관하여 君主에게 事情을 呼訴하는 法制上的 用語이다. 특히 刑事事件에 있어서 억울한 事情(原情)을 君主에 呼訴하는 「上訴」의 뜻이 담긴 法律用語이기도 하다. 經國大典의 刑典 訴冤條를 보면 「鼓(申聞鼓)在義禁府當直廳하여 凡上言은 當直員이 考司憲府退狀하여 受啓라」고 하여 擊鼓上言의 例를 規定하고 있으며 秋官志나 儒脣必知의 「上言規式」을 보면 「上言」은 上言人의 居所와 姓名을 밝히고 「右謹啓臣矣段臣矣身云云」으로 始作하여 特蒙君恩을 感謝하고 冤抑의 事情과 所願을 陳述하고 「某年某月某日」로 끝맺게 되어 있다.

朴泳孝의 「戊子上疏」를 볼 때 「臣矣段臣矣身」의 用語는 비록 쓰지 아니하고 있으나 前文에서 居所와 姓名을 밝히고 特被寵遇를 感謝하고 甲申政變의 舉事의 輕率을 謝過하고 再瞻聖顏하고

而陳微衷과 得見父母兄弟骸骨하여 歛葬할 機會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訴冤하고 있는 點은 形式은 여하튼 實質의 으로 「上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上言」部分의 前提에 이어 「敢陳愚衷八條」하고 「方今之急務」를 書表하고 있는 點은 時務에 關한 上疏에 該當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戊子上疏는 訴冤에 關한 「上言」部分과 時務에 對한 「上疏」部分의 두 가지 目的에서 作成된 複合文書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前節에서 露出된 바와 같이 朴泳孝는 1894年 甲午 10年만에 還國하고 「甲午上言」을 提出하고 있는 바 「臣矣身朴泳孝爲冤迫情由事段」하고 「臣矣身父子兄弟特被寵遇」를 「臣矣身父子感激殊私」하며 「再瞻天顏」하야 「畢訴區區之衷」하고 「得見父母兄弟之骸骨」이오면 「雖退死溝壑」이라도 「亦無所恨」이라고 「上言規式」에 依거하여 哀切하게 原情하고 있다. 筆致가 戊子上疏文의 上言部分과 너무도 恰似한 點이 많은 것을 볼때 戊子上疏가 親作의 文書임을 더욱 確信케 하여주는 것이다. 다만 戊子上疏는 「上言」部分보다도 「上疏」部分에 더 重點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음으로 朴泳孝의 上言에 對하여 「上疏」라는 呼稱은 理由가 있다고 할 수 있고 보다 適合한 名稱이라고 생각한다.

3. 青木功一氏는 朴泳孝의 上疏文에 對하여 上疏內容으로 보아 「興復上疏」라고 부를 것을 提案하고 있다. 「興復上疏」의 名稱에 關하여서는 다음 節에서 論評하기로 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上疏의 個性을 意味하는 名稱을 上疏作成年代의 干文을 붙여서 特定하는 것을 慣例로 하고 있으므로 朴泳孝의 戊子年 正月의 本上疏를 「戊子上疏」 또는 「戊子八條上疏」라고 부르는 것이 自然的이긴 하지만 都是 朴泳孝의 上疏로 알려져 있는 것이 本上疏 뿐이므로 朴泳孝의 上疏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本上疏文을 意味하는 것이므로 特히 干支를 붙일 必要도 없다고 생각하며 「朴泳孝上疏」 또는 「朴泳孝上疏文」으로도 足할 것이다.

IV. 朴泳孝 上疏에 對한 研究

1. 丁仲煥

朴泳孝의 戊子上疏에 對하여서는 韓國近代史를 研究하는 學者 特히 日本에 있는 學者들에 의하여 꾸준히 研究가 繼續되고 있다. 韓國內의 學者로서는 丁仲煥教授가 朴泳孝의 戊子上疏를 「岡本稿本」에 依거하여 이를 亞細亞學報 第1輯(1965.12)에 全文을 掲載하고 內政改革의 內容에 關하여 上疏前文을 要約하고 上疏本文 各條의 要旨를 原文에 基하여 條陳하고 있는 바 單純 簡略한 紹介에 不過하지만 朴泳孝의 思想을 多少나마 紹介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丁仲煥氏의 紹介로 因하여 1965年 우리 學界에 朴泳孝의 戊子上疏의 存在가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처럼 先鞭을 取한 研究가 나왔으나 國內學界에서는 그뒤 아무 反應

이 없었고 오직 新東亞附錄과 韓國史資料選集 V(最近世篇)에 戊子上疏의 全文이 紹介되고 있을 뿐이다. 韓國內의 近代史專攻의 學者는 朴泳孝上疏에 대하여 아직 아무도 關心을 表明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게 寂寥의 感を 禁할 수가 없다.

2. 姜在彥

韓國近代史研究에 많은 業績을 쌓고 있는 日本의 姜在彥氏는 「朝鮮近代史研究」(1970年 東京刊) 第2章 「開化思想・開化派・甲申政變」에서 朴泳孝의 戊子上疏를 朴泳孝의 建白書의 이름으로 紹介하고 있다. 姜在彥氏는 上疏를 貫通하고 있는 思想은 「近代的 政治改革과 産業 및 國防의 建設에 의한 內修에 의하여 列強의 侵略을 防止할 것 그러기 위해서 最大의 障害는 封建의 兩班階級이므로 이를 芟除할 것이라는 反侵略 反封建의 부르조아 民主主義思想」⁽⁴³⁾이라고 前提하고 上疏本文의 8個條를 要約한 뒤에 朴泳孝가 建白書로 上疏한 動機는 甲申政變에 失敗한 후에 開化派를 「以逆名處罪」한데 대하여 抗議하고 政變은 「篡逆亂國之意」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忠君愛國之心」에 의한 所以임을 說明하고 그 正當性을 主張하고자한 點에 있다고 結論짓고 있다.⁽⁴⁴⁾ 姜氏는 다시 「近代朝鮮における自由民權思想の形成」(「思想」570號, 1970年 12月)의 論稿 第2節 「朴泳孝建白書と自由民權思想」(이 論稿는 同氏의 「近代朝鮮の變革思想」(1973年 6月 東京刊)에 收錄됨)에서는 朴泳孝의 戊子上疏을 自由民權思想에 焦點을 맞추고 研究하고 있으며 甲申政變을 開化派가 일으킨 動機에 대하여

開化派와 守舊派의 對立은 從來와 같은 「無大關於國體」의 封建的 朋黨싸움과는 다른 것이며 바로 獨立=開化나(就新自立) 守護=事大나(守舊依賴)의 「有大關於國體」의 近代的 意味에 있어서의 政黨의 對立을 意味하며 國王이 이와 같은 政黨活動을 保障하지 못하면 「招禍之道에 通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當時의 國勢로서는 時間을 두고 改良할 形便이 못되고 急進의 인 改革이 要求되고 있었다. 그런故로 守舊派의 有力者을 處斷하는 非常手段을 取한 것이다. 이와같이 甲申政變은 近代朝鮮에 있어서의 부르조아 革命運動의 最初의 大烽火였다.⁽⁴⁵⁾

고 解釋하고, 「方今急務八條」는 甲申政變의 試練을 經한 開化派의 國政全般에 亙한 具體的 plan의 準備가 되고 있음을 立證하는 것이라고 前提하고 各條의 內容을 다시 要約한 後에 同建白書는

君主專制權을 制限하고 人民의 自由와 權利를 伸長하는 것이 民國興亡에 관한 重大事이다.

(43) 姜在彥 「朝鮮近代史研究」 p.103

(44) 同前掲 p.110

(45) 同上 「近代朝鮮の變革思想」 p.119 以下

民國興亡에 관한 動因은 民主主義를 制度的으로 確立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建白書는 開化思想을 具現한 것이며 그 根底에는 朝鮮實學의 北學思想이 있고 傳統儒敎의 敎理가운데서 諸外國에 있어서의 부루조아變革思想과 經驗을 受容하기 위한 合理性을 求하고자 하는 基本態勢로 一貫되고 있어」 「결국 朴泳孝의 思想體系에서의 「西法」「西器」는 儒敎本來의 「格物窮理·修身治國之學」을 發展시키고 그것을 近代의 歷史的 要求에 適應하기 위한 素材로 把握하고도 있다.⁽⁴⁶⁾

고 說明하고 있다. 結局 姜氏는 朴泳孝上疏의 開化思想의 性質을 「그 根底에는 朝鮮實學의 北學思想이 있고 傳統儒敎의 敎理속에서 諸外國에 있어서의 부루조아의 變革思想과 經驗을 受容하기 위한 合理性을 求하고자 하는 基本態勢로 一貫하고 있다」 따라서 「福澤諭吉의 開化思想과는 思考의 패턴—이 異質的이다」⁽⁴⁷⁾라고 보고 있다. 果然 朴泳孝의 上疏思想이 實學思想의 同質的 發展에 不過하고 겨우 淸國의 變法改革을 希求하고 있었던 말일까.

朴泳孝를 包含한 開化黨의 開化思想은 西歐化思想이나 傳統的 儒學思想이나 儒敎主義實學思想과는 次元을 달리하는 近代思想이며 福澤諭吉의 文明開化思想과 패턴—을 같이하고 萬民平等의 基本原理下에 國民에게 自由와 權利를 賦與하고 日本의 明治維新을 모델로 富國強兵의 近代國家의 建設을 構想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儒敎主義를 否定하고 傳統思想을 破碎하고 西歐化政策을 全面的으로 며고자한 것이다.

3. 金榮作

朴泳孝의 戊子上疏에 대하여 外交文書本의 名稱대로 「朝鮮內政改革에 관한 建白書」라고 稱하고 「韓國ナショナリズム의 研究」(1975年) 第2章 第5節에서 朴泳孝의 上疏思想을 國家 民族의 自主·獨立의 民族主義觀點에서 研究하고 있다. 金榮作은 主로 上疏文의 第3條 第5條 第6條 第7條 및 第8條를 檢討하고 朴泳孝는 弱肉強食의 對外的 危機에 對處하여 國家獨立의 根幹을 「富國強兵」에 두고 自主獨立을 위하여 國民統合(National Integration)의 必要性을 認識하고 있었으며 國家의 富強을 위하여서는 君權의 縮少와 民權의 擴張이 必要하다고 보고 있다고指摘하고 있다. 그는 繼續하여 朴泳孝는

凡人進文明則 知服從於政府之義及不可服從之義 而亦知不可服從於他國之義……是故未開無識之民 蠢愚懶惰 故能忍壓制之暴政而安之 開明識理之民 英慧剛毅 故不服束縛之政而動之
(第6條)

라고 하여 國民을 未開識之民과 開明識理之民으로 區別하고 開明識理之民의 「文明政治」로 表現

(46) 同前掲 p.125

(47) 同前掲 p.126

되는 自由 平等 權利 義務의 一連의 近代思想을 내세우고 自然法的인 天賦人權論을 펴고 있으며 「廢班常中庶之等級」 「以非常之英斷禁公私奴婢」(第8條)라 하여 班常의 階級과 公私奴婢制度의 廢止를 包含한 封建身分制의 全面的 撤廢를 前提로 「國王의 萬機親裁」와 「任意壟斷」을 否定하는 立憲君主制의 새 體制를 構想하고 있다고 解釋하고, 朴泳孝의 建白書에 담겨 있는 開化思想은 民權思想이며 國權의 確保를 前提로한 나쇼날리즘(Nationalism)이라고 規定짓고 斥邪論으로 代表되는 儒敎的 도그마티즘을 傳統思想이라고 본다면 朴泳孝의 開化思想은 儒敎思想의 태두리를 벗어나고 있다는 意味에서 近代思想에 屬한다고 볼 수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4. 青木功一

日本の 新進學者인 青木功一氏는 旗田巍教授의 指導을 받으면서 朴泳孝의 戊子上疏를 近 10 年間に 걸쳐 研究를 繼續하고 이래와 같은 本格的인 研究業績을 公開한데 대하여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青木氏의 研究을 모두 合친다면 마치 日本 甲南大學의 伊藤正雄教授의 「福澤論吉の研究」(甲南大學紀要, 文學論 I, 1966年 8月)에 比할만한 業績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青木氏의 研究業績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1. 「朝鮮開化思想と福澤論吉の著作」(朝鮮學報 第52輯, 1969年 7月)

青木氏의 第1論文은 福澤論吉의 여러 著書中 「西洋事情」 「學問のすめ」(學問의 권장) 및 「文明論之概略」의 3著書에서 朴泳孝上疏와의 關聯部分을 細密히 索出하고 있다. 朴泳孝가 開化思想을 福澤으로부터 얼마나 受容하고 있는지 科學的 實證的으로 밝히기 위하여 努力한 것으로 이것만을 보아도 青木氏의 研究가 얼마나 眞摯한가 느낄 수 있다. 青木氏는 上疏思想의 殆半이 福澤의 3著書의 影響임을 밝히고 그러나 基本思想은 福澤이 儒敎思想을 全面的으로 否定하고 있는데 反하여 朴泳孝는 儒學思想의 擴大解釋으로 西洋의 近代思想을 把握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 特徵이라고 主張하고⁽⁴⁸⁾(이點은 青木氏는 第2論文에서 修正함) 이點으로 미루어 보아 朴泳孝의 上疏思想은 清末의 變法開化論에 속하며 朝鮮의 變法論은 清國의 變法論보다 20年이나 앞서고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2. 「朴泳孝의 民本主義・新民論・民族革命論」(1)(前篇)(朝鮮學報 80輯 1976年 7月) 「同上」(2)(後篇)(朝鮮學報 82輯 1977年 1月)

青木氏의 위 第2論文의 前篇은 朴泳孝의 上疏文을 分析하고 儒學經典 그 中에서 特別 孟子 大學 書經 中庸 論語等과 孫吳의 兵書等을 引用한 것과 또는 이들 經書와의 關聯部分을 索出한 뒤에 上疏의 全文의 構造와 內容을 概觀하고 朴泳孝의 上疏要旨는 經書와 西政에 基礎를 둔 變法論・新民論・民族革命論의 思想으로 「先王의 法을 範型으로하는 君主의 道義의 心情에 基하여 保民과 新民을 目標로 政治를 行하고 이에 의하여 上下一心 富強을 取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48) 青木功一 「朝鮮開化思想と 福澤論吉の著作」의 「要梗」 및 p.88 以下

있다고 주장하고⁽⁴⁹⁾ 青木氏が 第1論文에서 「朴泳孝가 儒敎를 基礎로하는 思想을 保持하고 福澤의 儒敎思想 否定論을 取하지 않고 있다는 點」에 관하여 一見그렇게도 보이나 實際로 朴泳孝는 「儒敎至上主義를 否定하고 있으며 古典에 原理를 求한 것은 說得 紛飾의 手段 및 그 自身の 新思想受容의 軌跡을 表示한 것」에 不過하다고 前說을 顛覆하고 있다.⁽⁵⁰⁾

結局 青木氏は 朴泳孝上疏의 全主張은 變法開化를 意味하는 「興復」의 一語에 集約되고 있어 朴泳孝上疏를 「興復上疏」로 부를 것을 提議하고⁽⁵¹⁾ 아울러 甲申政變에 參加한 開化黨을 「獨立派」 또는 「獨立黨」이라고 稱하여 왔으나 事大에 對한 獨立이 即「興復」이며 그들이 意圖한 變法論의 改革의 必須不可決의 前提였으므로 그들을 「興復派」라고 부르는 것이 보다 適合하다고 主張하고 있다.⁽⁵²⁾

第2論文의 後篇에서 青木氏は 上疏思想의 歷史의 由來로서 朝鮮王朝 開國 初期의 鄭道傳으로부터 始作하여 金宗直 李彥迪 趙光祖 李珥 以下 諸儒學者의 儒學思想과 柳馨遠 李瀼 洪大容 朴趾源 朴齊家로부터 丁若鏞 崔漢綺 郭基洛 池錫永등에 이르기까지 一連의 實學者群의 實學思想을 더듬고 金玉均 朴泳孝등의 開化思想은 北學派 朴趾源의 實學思想을 繼承한 朴珪壽 劉鴻基 吳慶錫등 洋務開化論에 啓發되고 敎育된 것이며 朴泳孝는 金玉均과 같이 日本을 使行訪問하고 明治維新의 文明開化 政治를 實見함과 同時에 福澤諭吉과의 交遊 및 「西洋事情」등 그의 三著作에 의한 影響을 받고 「清朝의 壓制를 排擊하고 獨立의 確保를 위하여 西洋近代 文明을 攝取할 것을 目標로 專制君主制를 變革하여 人民에게 自由를 주고 民生의 向上을 圖謀하고 新民의 敎育으로 近代의 國民意識을 形成 發展시키고 政治 法律의 改革과 軍備의 充實」을 期하고자 하는 變法 開化論으로 轉換하였고⁽⁵³⁾ 이들 開化派는 스스로 甲申政變으로 民族革命까지 企圖하였다가 失敗한 것이며 朴泳孝의 「興國上疏」는 甲申政變의 革命政治目的의 集大成이라고 主張하고 있다.⁽⁵⁴⁾

V. 青木氏の 研究에 대한 所感

1. 筆者는 青木氏의 위 두 論稿를 通讀하고 그가 近十年間이나 긴 歲月을 두고 朴泳孝의 「興復上疏」(戊子上疏)의 研究에 沒頭하고 上疏의 思想을 把握하기 위하여 福澤諭吉의 三著書와 儒學經典을 細密히 探查하고 그 出典을 낱낱히 索出하여 가면서 朴泳孝의 上疏思想을 밝히고자한 그의 實證의 科學的 研究姿勢에 깊이 贊意를 表하는 바이다.

朴泳孝의 上疏研究에는 그 누구의 論著보다도 青木論稿의 精讀으로 부터 始作되어야 할 것이

(49) 青木 前掲 80頁, p.124

(50) 同上 前掲 p.162

(51) 同上 前掲 p.147

(52) 同上 前掲 p.153

(53) 同上 前掲 82頁 p.208

(54) 同上 前掲 同

라고 믿어 마지 않는다.

2. 靑木氏は 朴泳孝思想의 研究方法에 있어 歷史的 由來를 重視하고 傳統의 李朝 儒學者들의 思想에서부터 近世實學者들의 一連의 實學思想에 이르기까지 調査檢討하고 明・淸의 儒學者의 日知錄 明夷待訪錄 등으로부터 19世紀 後半의 洋務論 變法論 革命論의 推移까지 살피고 朴泳孝의 上疏思想의 由來를 連結시키고 있는 바 姜在彥氏가 朴泳孝의 上疏思想은 「그 根底에 朝鮮實學의 北學思想이 있고 傳統儒敎의 敎理 속에서 諸外國에 있어서의 부르조아의 改革思想과 經驗을 受容하기 위한 合理性을 求하고자하는 基本姿勢로 一貫되고 있다」⁽⁵⁵⁾는 主張과 一脈相通하며 靑木氏は 좀더 擴大시키고 深化시키기 위한 努力을 傾注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생각을 그대로 밀고나가면 結局 「朝鮮의 開化思想은 福澤의 그것과는 思考의 패터—에 있어 異質의 이다」라는 結論에 到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나, 儒敎主義의 實學思想의 傳統主義 배두리 안에서 福澤諭吉을 통한 西歐近代思想을 受容한 것에 不過하므로 福澤의 脫亞의인 近代思想과는 次元을 달리한다는 姜在彥氏의 結論에 歸一될 것이다. 그렇다면 朴泳孝는 福澤諭吉과 같이 儒敎主義를 否定하고 있었다는 그의 訂正主張과 어떻게 符合시킬 것인지 걱정이 된다.

3. 한나라의 社會가 傳統의 前近代의 社會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內在的 發展을 이룩해서 自然的으로 連續的으로 近代社會에 移向한다는 學說이나 歷史觀이 없는 것은 아니다. 自生的으로 近代社會를 이룩한 西歐社會 特히 英美의 경우에는 適用될 수 있는 理論이다. 그러나 東洋社會에 있어서는 前近代와 近代間에는 엄청난 斷絶이 있었고 두 개의 社會는 質적으로 다르다. 바꾸어 말하면 次元을 달리하는 社會였다.

前近代社會는 儒敎나 佛敎에 의하여 Stereotypieren된 傳統主義社會였다. 特히 李朝社會는 朱子學에 의하여 固定化된 社會였으며 西學을 拒否하고 無條件 邪學으로 規定지은 閉鎖된 社會였으며 近代社會는 人間의 尊嚴을 基調로 一切의 政治的 價値의 根元을 個個의 人間에 두는 西歐의 特히 英美의 自由主義의 合理主義의 科學文明을 內容으로 하는 開放된 社會이다. 君主이건 英雄이건 地上的인 如何한 被造物도 神聖視될 수 없고 家父長的 카리스마의 權威에의 盲從이나 傳統主義에의 隸屬을 一切 拒否하는 휴머니즘의 社會이다.

朴泳孝의 上疏思想은 靑木氏가 뒤에 訂正한 바와 같이 論旨의 全 趣旨는 儒敎主義의 否定에 있다. 그가 經典에 原理를 求한 것같이 보이는 것은 儒敎思想으로 中毒된 既成世代를 「說得・紛飾의 手段」으로 援用하여 近代思想을 理解시키고자 한 것 뿐이다. 朴泳孝의 上疏思想은 福澤의 著書와 講說에 의하여 啓蒙된 思想 다시 말하면 儒敎主義의 否定위에 形成된 福澤諭吉의 文明開化思想과 同質의 思想이다. 靑木氏自身이 더듬한 바를 빌어 表現한다면 上疏思想은 「西洋近代文明을 攝取할 것을 目標로 福澤의 所論을 採用하고」 「專制君主制를 變革하여 人民에게 自由를 주고」 「近代的 國民意識을 形成・發展시키고 政治 法律의 改革과 軍備의 充實을 期하

(55) 姜在彥 前掲 p.125

여」⁽⁵⁶⁾ 人民이 「文明의 精神인 獨立의 氣風——報國心을 가지는 文明國」⁽⁵⁷⁾ 즉 西歐의 近代國民 國家 즉 「民國」을 建設코자한 思想이오 福澤諭吉의 文明開化思想——西歐化思想——脫亞思想 바로 그것이다. 朴泳孝는 上疏에서 「民國」이라는 말을 到處에서 使用하고 있다.

歷史를 回顧하면 마치 高句麗나 新羅가 傳統的 固有思想을 송두리째 버리고 唐文明化 一邊倒로 달리다 싶이한 그 方式으로 開化黨 그들은 傳統的 儒敎主義의 封建桎梏을 破碎하고 西歐文明을 導入하여 時代的 斷層의 絕壁을 넘고자 한 것이며 그들의 開化思想은 亡國을 눈앞에 보고 大院君에게 「訪日商議」(辛卯上書)의 元首外交를 建議할 程度로 近代의 彼岸에 건너선 先覺者였던 것이다.

4. 朴泳孝등 開化黨이 抱持한 開化思想은 「西洋事情」에서 紹介된 美國의 獨立宣言書에 表現된 天賦人權思想이 바탕이 되고 있다. 그들은 福澤으로부터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아니하였고 사람아래 사람을 만들지 아니하였다」는 口號를 수없이 듣고 全面的으로 西歐化 政策을 펴고 近代化에 매진하는 日本의 明治維新을 目睹하고 魅了된 것이다. 福澤諭吉이 日本社會의 先頭에 서서 西歐式 最初의 學校 慶應義塾을 세우고 新聞을 創刊하고 文明의 精神 즉 個人의 獨立精神을 強調하고 文明開化 殖產興業 富國強兵을 提唱하면서 一世를 啓導하는 그것을 그들은 본따 보고자 한 것이다. 福澤이 儒敎主義를 輕蔑한 것과 같이 그들 開化黨은 輕蔑하였고 福澤의 實學이 脫亞의 이었다면 金玉均 朴泳孝의 實學도 脫亞의 이오 西洋의 自然科學의 受容을 意味한 것이며 傳統的 儒敎主義의 此岸의 實學論은 眼中에도 없었던 것이다.

5. 甲申政變의 政令 14條나 青木氏의 말대로 그 集大成⁽⁵⁸⁾이라고 볼 수 있는 朴泳孝의 戊子上疏의 思想을 變法的으로 解釋하는 것은 本來 姜在彥의 主張인 바⁽⁵⁹⁾ 青木도 이를 踏襲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青木의 論稿에서는 變法的으로 解釋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시 擴大하여 清末의 開化思想이 夷務 洋夷 變法 革命의 時間的 段階過程을 차례로 밟고 成長한 것을 朝鮮王朝 開國後의 近代化 過程에 適用하여 北學論·洋務論·變法論·民族革命論의 段階를 時代的으로 設定하여 보고자 試圖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金玉均 朴泳孝등의 開化思想은 그러한 段階的過程을 밟은 바 없는 近代化思想이다. 洋務 變法 革命을 한때 묶은 渾然一體의 西歐의 近代化思想이다. 同時的 現象을 無理하게 段階的으로 쪼개고 나누고자한 까닭에 青木氏는 開化黨으로 甲申政變을 主謀한 劉大致를 朴珪壽와 吳慶錫과 한데 묶어 洋務論者에 넣고⁽⁶⁰⁾ 또는 朴泳孝의 上疏思想을 儒敎主義的 開化思想으로 把握하였다가 다시 儒敎主義否定的인 福澤諭吉의 西歐의 文明開化思想으로 訂正하고⁽⁶¹⁾ 朴泳孝 金

(56) 青木 前掲 82輯 p.208. 80輯 p.131, 135, 137

(57) 青木 前掲 80輯 p.135

(58) 青木 前掲 82輯 p.208

(59) 姜在彥 「近代朝鮮의 思想」(1971年刊) p.80

(60) 青木 前掲 82輯 p.195, 197

(61) 前註 48, 49 參照

玉均의 開化思想을 姜在彥氏와 같이 變法的 開化論으로 規定짓고 있으면서도 清末의 變法論과는 다른 것이라고⁽⁶²⁾하고 있다. 甚之於 青木氏는 福澤諭吉 朴泳孝 梁啓超를 變法論의 三兄弟라고 까지 보고 있으나⁽⁶³⁾ 福澤의 文明開化思想에 대하여 新民論 또는 變法論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색한 感이 있고 朴泳孝나 金玉均以下 開化黨은 淸國에 대한 憎惡心이 털끝까지 온 몸에 가득차 있었다. 어디까지나 淸國權力 乃至思想과는 對決하고자 하고 西歐의 文明開化思想을 福澤으로부터 배우고 研究한 사람들이다. 朴泳孝가 萬一 自己보다 時代的으로 10年 乃至 20年 뒤떨어진 唐有爲나 梁啓超式의 變法論者 또는 新民論者라고 比喻한 것을 안다면 冒瀆으로 느낄 것이다. 어디까지나 朴泳孝는 福澤을 通한 西歐式 開化思想家이며 그 以外의 것은 아니다. 더우기 金玉均 朴泳孝등 開化黨의 思想은 實學思想과는 次元을 달리하는 近代思想이다. 部分的으로 實學思想을 聯想시키는 主張이 보인다고 해서 傳統的 舊思想과 連結을 試圖하는 것은 時代錯誤이며 理論의 矛盾과 混亂에 빠지기 쉽다. 남은 形式이 오래 持續되면 自壞의으로 消滅하고 새 形式이 誕生하는 것이 文化發展의 原則이다. 朴泳孝 金玉均등이 希求하고 抱持한 開化思想은 傳統主義를 克服한 것이며 그것과는 次元을 달리하는 新思想이다.

6. 青木氏는 朴泳孝의 戊子年 正月의 上疏文을 研究한 끝에 그 名稱을 「興復上疏」라고 부를 것을 提議하고 있다. 「興復」의 用語를 朴泳孝는 戊子上疏에서 6個所 使用하고 있고 그 뒤에 大院君에게 보낸 「辛卯上書」에서도 또 한번 使用하고 있음으로 朴泳孝가 즐겨서 쓴 創作用語임에 틀림없다. 青木氏도 밝히고⁽⁶⁴⁾ 있는 바와 같이 「興復」은 復興이나 光復과 同一한 意味를 가지는 熟語이며 古代를 聖代로 規定짓고 無條件 追慕하는 「舊業의 恢復」을 意味한다. 青木氏는 「興復」을 宗屬關係廢棄의 意味뿐 아니라 그것을 不可缺의 前提로하는 變法的 改革을 意味한다고 解釋하고 있는 바 「興復」에 대한 現代의 理解를 試圖하여 본 것이라고 짐작된다. 朴泳孝가 즐겨 쓴 特殊用語를 捕捉하여 朴泳孝의 戊子上疏를 「興復上疏」라고 上疏의 個性을 特定하고자 한 것은 卓見이라고 할 수 있다. 筆者도 全幅의으로 贊同하는 바이다. 다만 앞서 指摘한 바와 같이 朴泳孝의 「興復」은 西歐의 政治의 近代化를 意味하는 것이다. 舊業을 恢復한다는 原意를 가진 「興復」의 用語를 使用한 것은 오로지 儒敎主義傳統에 中毒된 既成世代에게 政治의 近代化를 「說得 紛飾의 手段」으로하여 理解시키기 위한 表現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VI. 上疏文의 校勘과 懸吐 및 註釋

朴泳孝의 上疏는 1萬 3千 餘字의 長文이며 純漢文體이다. 上疏文體의 研究에는 讀解가 先行되어야 할 것인 바 各種 上疏文의 Text를 比較한 바 各々 誤字가 있고 文章이 難解하여 쉽게 理

(62) 青木 前掲 82輯 p.208

(63) 青木 前掲 82輯 p.209

(64) 青木 前掲 80輯 p.145

解가 가지 않는 部分이 많다. 外交文書本을 비롯하여 上疏文의 各本을 比較하여 校勘本을 만드는 同時에 適當히 句節로 分解하고 懸吐와 註釋을 붙여보았다. 讀解에 參考가 되면 多幸한 일이다. 底本으로 使用한 外交文書本은 西江大學의 李光麟教授의 協力으로 제목스를 求得하였고 懸吐와 註釋은 金鍾武博士님의 一覽을 얻어 有益한 助言을 받은 바 많다. 多少나마 懸吐와 註釋이 參考가 된다면 오로지 金博士님의 敎示의 德澤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朴泳孝의 上疏文

〔前 文〕

第 1 節

在留日本의 臣朴泳孝는 謹四拜하고 上言于統天隆運하시고 肇極敦倫하신 大君主 陛下라나이다 伏以臣家は 以世臣之裔로 至於臣代에 父子兄弟特被寵遇하고 是以로 臣父子는 常感激殊恩하야 不知所報이오며 臣父故判書 臣元陽도 常戒臣兄弟曰「許身事君엔 忠當盡命이요 爲國圖報엔 不避危難이라」하시니 臣以年少學淺으로 雖聞其言이나 而不解其意하고 徒以仰答聖恩之萬一로 爲心이오나 而不能辨事理之順逆하고 乃至甲申하야 擅行輕率*之舉러니 而運與心違하야 於公則敢致陛下震怒하야 而及於三國之紛亂하고 於私則空致臣之父母兄弟朋友之死戮하야 而事終無益於國이니 臣與無仁無義之徒로 相似矣나이다 豈敢不赴命伏罪리오마는 然이나 其由實因 忠君愛國之心이오 而不因於篡*逆亂國之意矣로소이다

* 史料本外各本率
作卒

* 外交文書本纂作
纂 丁本, 姜本同
* 丁本刑作判

近世文明之國은 裁刑*辨罪에 務斫其情原하며 而不以模糊則臣不當以逆名으로 處罪하시어 上以累聖世之德하고 下以汚臣之死리오 故로 臣敢違命脫國하야 逗遛殊域하야 以待聖朝之文明이 郁々日新하야 不以臣으로 爲逆臣之時而已오나 然이나 臣時思故國하야 更欲一歸者는 但願再瞻*聖顏하고 而陳臣愚微之衷이 一也오 得見 臣父母兄弟 骸骨하야 而歛葬之 二也니 臣亦人類라 豈無仁義忠孝之心이리오 哀哉라 蒼天이 不使臣으로 得伸微々之衷하고 空在外國하야 百憂衡胸하오니 臣思至此에 不覺歔涕零하나이다

* 姜本膽作膽 史
料本同

- 統天隆運 하늘을 支配하시고 大運을 타고 나신 임금님의 뜻. 君主의 尊稱.
- 肇極敦倫 帝業을 創建하시고 人倫을 敦篤히 하셨다는 뜻. 亦是 君主의 尊稱.
- 許身事君 몸을 바치고 임금님을 섬기는 것.
- 忠當盡命 忠誠함에는 身命을 다한다는 뜻.
- 擅行輕率之舉 甲申政變의 輕率을 指稱함.
- 篡逆亂國 王位를 篡奪하는 逆賊行爲로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

- 裁刑辨罪 務祈其情原 刑을 마르질 하고 罪를 가려내는 裁判에는 事件의 真相을 파헤쳐내야 한다는 것. 즉 文明國에서의 證據에 의한 裁判을 指稱한 것 [二曰 興法紀安民圖]의 第1條 註에서는 「裁刑判罪」라고 表現하고 있다.
- 逗遛殊域 異域(外國)에 가서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
- 郁郁日新 文物이 나날이 昌盛하고 開明하여 가는 것을 形容
- 蒼天 하늘이라는 뜻. 「蒼天 不使臣得伸微々衷」은 하늘이 臣으로 하여금 조그마한 억울한 心情이나마 풀어줄을 얻지 못한다는 뜻. 위의 경우의 하늘(蒼天)은 神으로서의 天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고 宇宙人生을 支配하는 永遠不變의 必然的인 理法을 意味한다.
- 百憂衡胸 온갖 근심이 가슴을 찌르는듯 하다는 것.
- 歔歔涕零 흐느끼며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形容.

第2節

* 丁本跋作跋

* 史料本派作波

然이나 臣이 戒心肢*足而待者는 惟聖朝之中興也니 臣聞하되 「陛下已派使駐日하시고 而又派*歐美之使하시며 己行任所라」하시니 是誠出於聖算而爲後之良策으로 臣竊喜之니이다. 又聞하되 「大東朝陛下가 寶齡望九하시고 中宮陛下도 患候復常하시며 慶賀相疊」이시니 臣雖在外이나 不勝欣忭하야 西向祝之요 而臣所大望於此後者는 一國之慶이 因此慶始하야 慶而又慶하고 乃至無窮無盡之慶이니이다. 臣所謂一國之慶者는 何也요 國治而富強하고 民信而安樂하고 教化時新하고 上下無塞하야 人々이 各得其所하고 一載二載로 與天地同休면 則是始於寶齡長久之慶也요 國衰而弱이면 振之而興之하고 民疲而困이면 保之而健之하야 紀綱更張하고 公私無犯하야 人々이 各安其分하고 日新又新하야 與日月并明이면 則此始於患候復常之慶也요 臣愚謂하되 此는 誠易々요 實非難事니 諺에 云하되 「世無不亡之國이요 而長病은 難治라」하나 然이나 臣은 竊以爲不然이요 政有道而法不弛면 則永代不亡하고 病診其實症하야 而服其藥이면 則無難治이니이다 然이나 若反於是면 必與諺合이니 此는 天地自然不易之理也니이다. 至於本朝興亡盛衰엔 亦在治與不治이니 況今當萬國之注意於本朝之時하야 何可不一日講此道乎哉아 以陛下之聖明으로 豈無諒燭于此리오

- 戒心肢足 마음을 가다듬고 발꿈치를 들고 바라보는 것.
- 中興 衰頹한 나라나 집안이 盛運을 맞이하여 일어나는 것.
- 大東朝陛下 垂簾聽政하시는 皇太后 趙大妃 즉, 神貞王后를 가리킴.
- 中宮陛下 皇后周禮「今稱王后爲中宮矣」閔王妃를 가리킴.
- 欣忭 기뻐하는 것.
- 天地自然不易之理 天道 또는 天命이라는 뜻. 儒敎文化는 人間의 範型(model)을 自然의 一部로 생각하고 自然 속에서 찾고자 하였다. 萬物의 存在와 人間의 存

在도 天地自然을 基體로 存在하고 人間의 行動規範인 人倫의 原理도 天道의 絶對的 必然의 理法에 의하여 支配되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時代의 變遷과 社會의 要求에 基하여 改革할 때에 改革하지 못하면 古諺과 같이 亡國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며 그것이 또한 天理요 天命이라는 主張이다.

第3節

* 史料本降作隆

* 外交文書本吁作
吁 丁本吁作肝

* 各本因作固然文
法上訂因爲因

然이나 臣은 敢請略言之하노니 本朝는 自龍興以至於今하 殆五百年이로되 而自中葉之前으로 國勢不振하야 東敗於日하고 而北降*於清하고 荐經兵革而漸來衰弱하야 及於近世에 乃至極度하니 凡物이 動極而靜하고 靜極而動은 亦天地之至理也요 豈有極而不變者乎이릿가 嗚呼라 陛下承嗣此衰微之後와 危亂之際하사 宵旰*憂慮하시고 欲圖興復이시나 而事姑不成하시어 民國益困者는 輔相非其人而不知治理之要하고 但顧身家門族之富貴하야 而不顧宗社黎民之安危하고 陵民膏血하고 盜竊國財하야 以爲私하고 屏斥忠良하고 妄殺無辜하야 以爲快하고 賄賂公行하고 而官位公賣하야 上下貪財而公私并廢하니 能陵民血하야 竊國財者는 官至太守하고 能斥忠良하야 殺無辜者는 位進宰相이로되 而百姓은 轉乎丘壑하며 散離四方하야 父母兄弟妻子를 不得相見하고 或饑死하며 或凍死하며 或冤恨而志死하며 或無醫藥而病死하며 或無罪而受刑戮하며 或因*飢寒으로 爲盜而被殺하니 此는 所謂「爲阱於國中」也라 事實眞如此이니 臣豈敢誣奏리오

○ 龍 興 龍이 구름을 타고 昇天하는 것. 王業이 일어났다는 뜻. 李成桂의 開國을 意味함.

○ 東敗於日 東方으로 日本에 敗하였다는 것. 壬辰倭亂의 뜻.

○ 北降於清 北方으로 清國에 敗하였다는 것. 丙子胡亂의 뜻.

○ 荐經兵革 자주 兵亂을 겪었다는 것.

○ 凡物動極而靜 靜極而動 亦天地之至理也 豈有極而不度者乎 青木氏は 出典으로 易經·繫辭의 「易窮則變 變則通 通則久」를 들고 있다. (朝鮮學報, 80, 1906, p. 91) 易原理를 援用한 말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좀더 正確하게 直接的인 出典을 찾아 본다면 周濂溪의 「太極圖說」의 「無極而太極 太極動而生陽 動極而生陰 靜極而動 一動一靜 互爲其根 分陰分陽 兩儀立焉」에서 朴泳孝는 「動極而靜」「靜極而動」을引出하여 社會發展의 原理를 說明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경우에 動은 進步發展을 意味하고 靜은 停滯를 意味한다. 「天地之至理」는 前節의 註「天地自然不易之理」「蒼天」을 보라.

○ 宵旰憂慮 王이 밤낮으로 政事를 근심하시는 것. 百姓의 근심에는 宵旰의 말을 쓰지 않는 것이 慣例임.

○ 興 復 先王의 舊業을 일으키고 恢復한다는 뜻. 復興 光復과 같은 意味다. 朴泳孝는 自己가 構想하고 있는 近代의 政治의 改革의 意味를 儒敎主義에 基한 舊世代를 理解시키기 위하여 尙古의인 興復이라는 用語를 使用한 것이다. 朴泳孝는 本上疏에서 「興復」의 用語를 六個所 使用하고 있다.

○ 爲阱於國中 國중에 사람잡는 함정을 만들어 놓는다는 뜻. 法網을 퍼놓고 無

후한 人民을 法網에 걸어 마구 잡아 處刑하는 것. 「孟子」의 梁惠王章下에서 나온 말이며 陷穽과 같은 나라 牢獄國家(Ergastulum)라는 뜻. 本上疏第6條에서 若政府只有罰人之政하고 而無教人之政이면 則此所謂「驅民入阱也」라고 한 것과 立論의 趣旨가 同一하다. 文明開化의 政治에 대한 未開無識之民의 壓制와 暴政 즉 酷刑苛政을 說明한 것이다.

第4節

然이나 陛下는 不黜其奸相貪吏하고 而圖國之興復하시니 雖盡陛下之聖慮이시라도 事終無成이시며 而反必有禍니이다. 臣案聖經古史에 云하되 「庖有肥肉하며 既有肥馬요 民有飢色하며 野有餓殍」은 孟子之所訓也요 「作宰治民而田野荒蕪하고 人民減少而行賂求譽」는 齊王之所怒也요 「強大之國이 隣於左右前後에 而相無道하고 將無能하고 法令不行하고 賞罰不明하고 兵衆不一하며 士卒不練하고 民不與上同意하야 而不可與之死하고 不可與之生하며 不畏吾令하고 反畏隣國」은 孫吳之所憂也요 凡制國治軍之道는 時異事同하고 古今無殊어늘 陛下何不鑑於此하고 而乃安然深御於九重之中하시어 日與左右로 優遊하시고 獨自爲樂하시어 而不察閭巷人民之艱難乎잇가 臣은 竊爲陛下憂之 하나이다. 凡爲民之父母에 而不顧衆之辛苦하시면 其衆將何向而訴之乎이릿가 必將反其所不親하고 而向其所親은 何也리요 姜太公所謂 「邦國은 非帝王之邦國이요 乃人民之邦國이며 而帝王은 治邦國之職也」이니이다. 故로 同邦國之利者는 得邦國하고 擅邦國之利者는 失邦國이로소이다

- 奸相貪吏 奸惡한 大臣과 貪慾한 官吏.
- 庖有肥肉既有肥馬 王의 府庫간에 살진 고기가 가득하고 王의 馬廄間에는 살진 말이 있다는 뜻. 國王이 百姓의 困窮은 아랑곳 없이 華麗하게 好衣 好食하고 遊樂放蕩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로 「孟子」梁惠王에서 取한 것.
- 民有飢色 野有餓殍 此率獸而食人 百姓은 굶주린 빛이 있고 들에는 굶어 죽은 屍體가 호트러져 있으니 이는 百姓을 苛斂誅求하여 굶주리게 하여 죽이고 집승의 밥이되게 한 것이라는 뜻.
- 作宰治民而田野荒蕪 人民減少而行賂求譽 郡縣에 守令을 두고 百姓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田野를 荒蕪하게 만들고 賂物을 받치고 名譽만 얻고자 하는 것. 즉 牧民行政에 힘쓰지 아니하고 虛名만 찾는 不德守令을 말함.
- 相無道 將無能 大臣이 無道하고 將帥가 無能하다는 뜻.
- 必將反其所不親 而向其所親 반드시 將來에 그 親하게 對하거지 아니한 彼에 대하여서는 離反하고 그 親하게 對하거는 彼로 民心이 向할 것이라는 뜻.
- 邦國非帝王之邦國 乃人民之邦國 帝王을 받들고 있을지라도 國家의 本質은 人民의 國家임을 說得하기 위하여 姜太公의 말을 引用함. 朴泳孝의 天賦人權思想을 바탕으로 하는 「民國」思想의 提示로 解釋됨. 그는 上疏에서 「民國」의 用語를 到處에서 쓰고 君主國思想을 否定하고 있음.

第 5 節

凡事有趣的故로 行事之時에는 先思其趣의 하고 而得其의 則吉하고 失其의 則凶이니 夫政府之趣의 者何也오 保民護國이 是耳니이다. 是以로 成湯討桀에 而夏民喜悅하고 周武伐紂에 而殷人不非하니 湯武得之々故는 愛民也요 桀紂失之々故는 虐民也니 孟子에 云하되 「今王이 鼓樂於此시어든 百姓이 聞王鐘鼓之聲과 管籥之音하고 舉疾首蹙頰而相告曰 吾王之好鼓樂이여 夫何使我로 至於此極也요」하니 此는 無他라 不與民同樂也니이다. 今王이 鼓樂於此시어든 百姓이 聞王의 鐘鼓之聲과 管籥之音하고 舉欣欣然有色而相告曰 「吾王이 庶幾無疾病與아 何以能鼓樂也요」하니 此는 無他라 與民同樂也니이다. 凡帝王이 無道失位면 雖欲求爲庶民이라도 而不得이오 諸侯*가 有道御民이면 雖地方百里라도 而王於天下이니 可不戒哉며 可不愼哉릿가 若陛下不與衆偕樂하시고 而獨專其樂이시면 下必有吮死母乳之孤子와 轉於丘壑之獨老이니 若使他大眼者로 觀之면 孰以一人之佚樂으로 謂全國安泰乎 이릿가 即有疾首蹙頰者가 接踵而起하야 必累聖明之朝也니이다

* 各本侯作候

- 趣 的 趣旨와 目的의 뜻.
- 成湯討桀而夏民喜悅 暴虐無道한 夏의 桀王을 殷의 湯王이 放伐하야 夏民이 기뻐한 것.
- 周武伐紂而殷人不非 暴虐無道한 殷의 紂王을 周武王이 討滅하야 殷人이 그르다고 하지 않고 周에 歸屬하였다는 것.
- 舉疾首蹙頰 모두 골치앓고 뺨등살을 찌푸리는 것. 미워하고 실어하는 모양의 表現.
- 雖欲求爲庶民而不得 帝王이 無道失位하면 庶民이 되기를 願하여도 될 수가 없다는 뜻.
- 雖地方百里而王於天下 四方이 百里 밖에 안되는 조그만 나라의 諸侯라도 有道하면 天下의 帝王이 될 수 있다는 뜻.
- 下必有吮死母乳之孤子 轉於丘壑之獨老 아래에 반드시 죽은 어미의 젖을 빠는 孤兒와 산골짜기를 덩굴고 있는 외로운 늙은이가 있다는 것.

第 6 節

古語에 云하되 「家不和則敗家하고 宗不和則覆宗하고 國不和則亡國이라」하고 書에 云하되 「民維邦本이니 本國邦寧이라」하였니이다. 故로 欲固本則和之요 欲和之則樂之요 欲樂之則安之요 欲安之則撫之요 欲撫之則同其甘苦니 同其甘苦者는 謂施仁義之政於民이며 而非謂帝王與百姓同事也니이다. 夫上下同甘苦而衆反을 臣은 未之聞也니이다. 昔에 趙之尹鐸이 守晉陽할새 三國之軍이 圍之灌之하야 城不浸者三板이요 甕中產蛙로되 而民無反意하니 此는 尹鐸이 得衆之故也라 故로 治國家者

는 必先敎百姓하야 而親萬民이니이다. 是以로 賢聖은 敎之以道하고 理之以義하며 勳之以禮하고 撫之以仁하니 此四德者는 修之則興하고 廢之則亡이니 以陛下之神聖으로 豈不察於此시리오라는 然이나 若知賢智而不進이시면 無仁也요 知奸惡而不黜이시면 無義也요 知當行而不行이시면 無果敢也시니 雖匹夫匹婦라도 無仁義之心과 果敢之氣면 則不能立於世어늘 況帝王乎이릿가. 諺에 云하되 「時者는 今時也니 今時外에 更無今時라」하니 若事當行而遲一日이면 則有一日之害오 速一日이면 則有一日之利니, 何可虛延時日하야 自拋我利而取害乎이릿가 此는 無智之甚也니이다

- 民維邦本 本固邦寧 人民은 나라의 根本이니 根本이 本固하여 나라가 平安하다는 「書傳」의 말. 百姓을 政治의 根本으로 생각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民本主義論이 典據로 삼는 有名한 말임.
- 同其甘苦者 謂施仁義之政於民 帝王이 百姓과 甘苦를 같이하는 것은 人民에게 仁義의 政을 베푸시는 것을 말한다는 뜻.
- 圉之灌之 城不浸者三板 兵卒이 둘러싸고 물을 부어 대니 城이 물에 잠기지 아니한 것이 세조각의 木板 정도라는 뜻.
- 知當行而不行 無果敢也 마땅히 行하여야 할 것을 알면서 行하지 아니하는 것은 果敢하지 못하다는 것. 즉 勇氣가 없다는 뜻이다. 朴泳孝의 「當行」은 「當爲」(sollen)를 意味하는 것이다. 그는 「進賢知 黜奸惡」의 國政刷新을 君主의 道德의 命令으로 본 것이다. 「du kanst denn du sollst」의 決斷을 뜻하는 말이다(kant).
- 今時外更無今時 時間은 永遠이 흐르는 것. 즉 經過를 內容으로 하고 있다. 今時는 行爲를 選擇하고 決定할 수 있는 時點을 意味한다. 意志의 自由를 實現할 수 있는 時間은 今時뿐이다. 朴泳孝는 意志의 自律性과 今時의 重要性을 強調하고 國政改革의 決行을 促求한 것이다. 그의 哲學的 思索의 깊이가 짐작이 간다.

第7節

且鄰有一國하야 以同類之人으로 同沾雨露之澤하고 被日月之光이오 而比我邦하야 壤地無甚大小之別하고 物產도 亦無豐少之異언마는 而只行事는 有別하야 彼己就開明之道하야 修文藝하고 治武備하야 幾與富強之國으로 同馳어늘 而我向在蒙昧之中하야 如痴如愚하고 如醉如狂하야 不辨世界之事하고 而自取侮辱於天下하니 此는 無恥之甚也로소이다. 臣이 雖不學無識하고 昧於世事이오나 然이나 恥之憂之者는 以天下之人으로 目我朝鮮爲癡愚醉狂之國也니 苟有心者면 孰不恥이리오 然이나 人本癡愚하야 不能見己之顏하고 而能見人之顏하며 不能知己之音하고 而能知人之音하며 不能辨己之非하고 而能辨人之非이니이다. 故로 雖異形恠像이나 而不知己之醜하고 雖違道爲惡이나 而不知己之暴하고 癡然樂生而不知恥하니 此는 自欺於己也로소이다. 人이 向我而諫過責非하면 則怒而不悅하고 諂諛褒揚하면 則笑而喜之하야 愚然恃己而自爲雄하니 此는 自欺於己하야 而欺於人也요 人不知己면 則自欺於己하니 如何得非欺於人乎이릿가 故로 人能反鑑於己하야 忖度是非善惡하야 而

* 外交文書本諂作
諂 東亞本同

* 丁本治作知 東
亞本史料本姜本
同

知己之長短이런 則不欺於己니 豈欺於人哉리오 曾子曰「日三省吾身이라」하고 孟子曰「愛人不親이어든 反其仁하고 治人不治*어든 反其智하고 禮人不答이어든 反其敬하며 行有不得者이어든 皆反求諸己라」하니이다

- 我尙在蒙昧之中 我國은 아직 無知蒙昧한 野蠻國의 狀態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
- 如痴如愚 如醉如狂 國家를 사람에 比하고 못나고 어리석고 취하고 미친사람 같다고 우리나라를「癡愚醉狂의 나라」라고 形容한 것이다. 隣國日本은「開明富強의 나라」라고 보고 比較하고 있다.
- 自欺於己 自己가 스스로 自己에 속는다는 것. 自己 自身을 알라는 趣旨이다.
- 諫過責非則 怒而不悅 諂諛褒揚 則笑而喜之 自己의 허물을 諫하고 非行을 責望하면 怒하고 不快하게 생각하고 아첨하며 치켜 올려주면 웃으며 기뻐하는 것.
- 愚然恃己而自爲雄 어리석게 自己만 믿고 스스로 驕만해지는 것.
- 愛人不親反其仁 사람을 仁愛하나 그 사람이 따르지 아니하면 自己의 仁愛의 不足을 느끼고 反省하고 自責하라는 뜻.
- 行有不得者 皆反求諸己 自己行爲에 있어 바람던 것을 얻지 못하면 그사람을 責하기에 앞서 自己自身을 反省하고 그 原因을 생각하여 보라는 뜻.

第8節

伏乞聖上은 日三省聖躬하시고 行有所不得者이어든 皆反求諸聖心하사 而自知其是非然後에 親賢遠奸하시며 以安民國하고 亟圖興復하사 以光四海하소서 夫任賢才而治國은 比如白晝行大道요 任奸愚而爲政은 比如黑夜行山谷이시니 險易之別은 不待智者而知之也니이다. 臣은 敢陳愚衷八條하야 列於左하고 自謂方今之急務也 하나이다. 諺에云하되「事當行不行이런 反必有殃이라」하고 又云「行非常之事然後有非常之功이라」하니 功者는 千辛萬苦하야 不憚勞而得者이니이다. 故로 人不辛苦則無功이니 伏願聖明은 不以此言으로 爲逆臣之言하시고 而采無疑하소서 臣은 臨書表에 心忙神迷하야 語多重疊하고 言或失敬하와 臣은 無任悚慄之至로소이다

開國 四百九十七年 正月 十三日

(註 明治 二十一年 二月 二十四日)

- 亟圖興復 急히 興復을 圖謀하는 것. 亟은 疾也 急也. 興復의 뜻은 第3節 參照
- 「事當行不行 反必有殃」 當然히 行하여야 할 일을 行하지 아니하면 災禍가 온다는 뜻
- 「行非常之事 然後有非常之功」 非常한 일을 한뒤 예비로서 非常한 功績이 나타난다.
- 心忙神迷 마음이 바쁘고 精神이 昏迷한다는 뜻.
- 無任悚慄之至 至極히 惶恐하고 두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尊敬의 뜻.

[一曰 宇內之形勢]

第1節

方今宇內萬國은 猶昔之戰國也라 一以兵勢로 爲雄하야 强者는 并其弱하고 大者는 吞其小하야 常講武備兼修文藝하고 相競相勳하야 無不爭先하며 各欲逞其志하야 以震威於天下요 乘他之罅隙而奪之니이다. 故로 波蘭과 土耳其는 本非微弱之國이나 然이나 皆因自國之困亂으로 或見裂하고 或見削하야 無復興復之日이요 雖有萬國公法과 均勢公義이나 然이나 國無自立自存之力이런 則必致削裂하고 不得維持하야 公法公義도 素不足以爲恃也니 以歐洲文明強大之國으로 亦見敗亡이어든 況亞洲未開弱小之邦乎아

- 强者并其弱 大者吞其小 強大國이 弱小國을 併呑하는 것.
- 乘他之罅隙而奪之 다른 나라와의 不和에 便乘하여 그 나라의 主權을 빼앗는 것.
- 萬國公法 國家間の 平和 維持를 위한 公法 즉 國際法에 대한 西洋法 受容의 初期名稱이다.
- 均勢公義 國家間の 主權의 平等을 彼此認定하고 認定 받을 수 있는 國際道義 또는 國際法上的 通義(權利)의 뜻.

第2節

大凡歐人은 口稱法義하되 心懷虎狼이라 故로 自三四百年之前으로 以至于今에 其所并吞者는 南北亞米利加洲也요 亞非利加洲也요 南洋群島也요 澳斯太利亞洲也요 漸及我亞洲之地하야 斯非利亞也요 土斯坦也요 印度也요 緬甸也요 淸之黑龍江省也요 香港也요 日本之樺太島也하야 已過亞洲之半이요 而以亞洲論之則 其所餘者는 不及其所失하야 以天下論之則所餘者는 不*過十分之一이나 而彼猶不鑒하고 尙耽々虛視하니 其志向이 果在何處乎리오 此는 亞洲東部興亡盛衰之秋요 而我同族奮起排難之時也니이다

* 各本不作十

- 口稱法義 心懷虎狼 말로는 法律과 道義를 主張하나 마음 속에는 弱小國을 併呑하려는 虎狼이 같은 弱肉強食의 帝國主義思想을 품고 있다는 것.
- 土斯坦 토루키스탄(Turkestan)國을 指稱 18世紀까지 中央亞細亞의 大國이었으나 露西亞에 併呑 되었음.
- 尙耽々虎視 其志向果在何處乎 歐洲의 帝國主義強大國이 虎狼이와 같은 눈초리로 계속 노려보고 있어 果然 그 侵略의 意圖가 어찌로 向하고 있는지요.

第3節

然이나 我亞洲之族요 懶惰無恥하고 苟々偷生하야 絕無果敢之氣하니 是는 臣所以 寒心歎息者也라 若魯欲東侵하야 鑿山開道하야 以及於東海之濱하야 察諸國之勢

* 丁本膝作朕姜本同

하야 見我無備하고 而先出於我之西北하야 略咸平兩道요 而據日本海黃海之水利하고 絕我三國之兩膝*하야 而擅亞洲之禍福이면 則我邦之事已去矣니이다. 雖有奮起排難之志라도 安不能如之何也니이다

- 我亞洲之族 懶惰無恥 苟々偷生 우리 亞細亞의 여러 民族은 모두가 게으르고 남의 나라의 壓制를 받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一時的인 安逸한 生活을 즐기고 있고 歐洲 強大國의 侵略에 對備할 생각이 없다는 것.
- 若魯欲東侵 鑿山開道 以及於東海之濱 萬一 露西亞帝國이 東方을 侵略하기 위하여 山을 뚫고 道路를 開設하야 우리 東方의 海邊으로 勢力을 펼치게 되면 이라는 뜻.

第 4 節

夫魯雖君主獨裁之邦이나 然이나 其政治法紀는 勝於我邦이라 故로 我人民이 一安其便이면 更不樂我朝之興復也요 印度는 雖亞洲中盛大之邦이나 亦因其內亂無備하야 爲英所領하고 其人民이 樂承英政府之命하야 不欲自立政府者는 無他요 英之法律寬而政治正하야 人々各安其生이라 故로 恐離英政하야 而再陷苛政也로소이다

- 政治法紀 政治와 法律의 뜻. 法紀는 法律과 紀綱을 意味하지만 여기서는 法律의 同意語라고 解釋한다. 朴泳孝는 本上疏의 第2條題目으로 「興法紀」의 用語를 쓰고 있는바 法律을 세운다는 뜻이다. 同條에서 法律者는 「勸正理 禁邪惡」이라고 하여 道德的 意義를 重視하고 있다. 法律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德治主義를 主張하는 頑固派에 說明하기 爲하야 法紀라는 말을 有別하게 使用한 것으로 推測된다.
- 我人民一安其便 更不樂我朝之興復也 우리 人民이 一旦 魯國의 政治를 경험하면 우리나라의 興復政治라도 歡迎하지 않을 것임니다의 뜻.
- 英之法律寬而政治正 英國의 法律은 寬大하고 政治는 바르다는 뜻. 法律이 寬大하다는 뜻은 政治의 壓制와 法律의 殘酷에 대한 말이며 人權을 尊重하고 있다는 뜻이다. 政治가 바르다는 것은 大臣이 國會에 대하여 責任지는 君權有限의 君民共治 政治를 指摘한 것으로 推測된다. 따라서 殖民政治를 하여도 人民에게 寬大하게 民心을 收攬하는 올바른 政治를 하므로 印度의 人民이 「樂承英政府之命」한다는 것이다. 福澤諭吉의 西洋事情外編卷之一 「人民の各國に分かることを論ず」에 依據하여 쓰고 있다. (青木, 「朝鮮の開化思想と福澤諭吉の著作」 朝鮮學報 52輯 p.50)

第 5 節

* 丁本蔡作聚

臣按亞洲컨대 天下靈氣所藪*之處也라 故로 儒佛耶蘇及回々教之祖 皆出於此土하야 古昔盛時에 非不文明이었던 然이나 至于近代하야 却讓歐洲者何也요 蓋諸邦之政府는 視民如奴隸하야 不導之以仁義禮智와 教之以文學才藝라 故로 人民은 蠢愚無恥하야 雖見領於他라도 而不知爲恥하고 禍亂將至라도 而不能覺하니 此는 政府之過也요 非人民之過也니이다. 中庸에 云하되 「凡事豫則立하고 不豫則廢하나니 言前定則不貽*하고 事前定則不困하고 行前定則不疚하고 道前定則不窮*이라」하니 爲亞洲諸政府謀者는 豈可苟安消日哉리오

* 史料本貽作始東亞本同

* 各本窮作究依中庸訂正

- 視民如奴隸 亞細亞各國政府는 酷刑과 苛政으로 壓制하여 百姓 보기를 奴隸와 같이 보고 있다는 뜻.
- 蠢愚無恥 雖見領於他而不知爲恥 東洋各國의 人民은 壓制로 因하여 버려지 같고 어리석어 부끄러움을 모르고 他國에 의하여 自己 나라가 占領 當하여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뜻.
- 凡事豫則立 不豫則廢 무릇 일은 미리 豫備하면 根本이서고 豫備하지 아니하면 무너지나. 즉 어떠한 일이든지 事前에 잘 計劃이 서 있으면 쉬울게 目的을 達成할 수 있고 事前에 準備가 없으면 失敗한다는 趣旨이다.

〔二日 興法紀安民國〕

第1節

法律者는 人民處身結交之規矩로서 而勸正理하며 禁邪惡이오 故로 其行之也엔 無偏無黨하고 只辨是非曲直之理하야 而治之하니 有罪則雖貴라도 必罰하고 雖愛라도 必刑하고 無罪則雖賤이라도, 不可抑하고 雖憎이라도 不可迫이니라 云小兒하고 云大人하고 云貧賤하고 云富貴이나 其身命은 一也니 雖一貧兒之敝衣라도 以法護之면 則與帝王之領也와 同矣니이다

- 法律者 人民處身結交之規矩 而勸正理 禁邪惡 處身은 行動舉止의 뜻. 結交는 交際 즉 社會生活의 뜻. 法律은 人間의 社會生活에 있어서의 規範이며 社會의 正理(正義)를 勸獎하고 邪惡을 禁止하는데 目的이 있다고 說明하고 있다. 福澤諭吉前掲 二編卷之一「備考」「人間の通義」에 依한 定義이다.
- 其身命一也 身命은 本來 身體와 生命의 뜻이나 여기서는 財産을 包含한 뜻으로 使用하고 있다. 一也는 同一, 同等, 平等의 뜻이다. 價値의 同一을 意味한다. 福澤諭吉 前掲 外論卷之一「人生の通義及び其職分」에 依據하고 있다.

第2節

蓋法律之本旨는 不欲必行其政也니 大學에 云하며 「子曰聽訟이 吾猶人也나 必使無訟乎언저라하니 無情者不得盡其辭는 大畏民志니 此謂知本이니라」하니 則定規例하야 以制人之心하고 而導之於道理하야 化民成俗하야 而使無犯罪也요 是以로 雖立法行罰이라도 然이나 必以仁義信爲*本이라 故로 酷刑而傷仁하고 勒罰而敗義하고 擅法而失信하야 乃致人民之心을 軟而弱하고 頑而暴하야 疑而擾亂은 蠻邦未開之政也이며 行刑以仁하고 行罰以義하고 行法以信하야 乃致人民之心으로 豪以健하고 和而平하고 信而安穩은 文國開明之政也니이다 故로 撫人以仁하고 治人以義하고 安人以信하야 明此三道而無失이면 則恩威并行하고 而法不弛하야 治隆於上하고 而俗美於下矣시리이다

- 不欲必行其政也 朴泳孝는 法律의 本旨는 반드시 其政을 行하고 治하는 것은 아니더라고 說明하고 그 뒤에 「聽訟이 猶人인을 無訟한단 같으랴」의 孔子의 말을 引用한 것으로 볼때 道之以政을 否定하고 法律의 本旨는 道之以德이라는 趣旨이다

* 史料本爲作然

政은 正也로 다스린다는 뜻. 法으로 다스린다고 할 때 團束한다. 또는 處罰한다는 意味로도 使用된다. 따라서 本文의 意味는 法律은 處罰만을 爲主로하는 것이 아니라는 趣旨이다. 政治와 法律로 善導하는 것보다는 道德으로 紀綱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 無情者不得盡其辭 大畏民志 此謂知本 無情者는 眞心이 없는 者 즉 誠實하지 못한 者가(마음대로 거짓말을 할수 없도록) 裁判官이 聰明하면 거짓말을 다하지 못할 것이고 訟事도 없어질 것이며 君主의 德이 밝아지고 百姓이 畏服하게 될 것이다. 이로서 訴訟은 末端이요 明德은 根本임을 아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 雖立法行罰 然必以仁義信爲本 故酷刑而傷仁 勸罰而敗義 擅法而失信 비록 法律을 制定하여 刑罰을 行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仁義와 信으로써 根本을 삼어야 한다. 그리고로 酷刑을 加하여 仁을 傷하고 無辜한 者를 억지로 處罰하여 義를 傷하고 法律을 유린하여 信을 喪失하여 人民을 壓制하는 것은 野蠻國의 未開한 政治라는 것이다. 朴泳孝는 前條에서 英國의 法律의 寬大 政治의 公正과 印度在來의 虐政을 對置하고 있는바 本條에서는 立法行罰의 仁義信과 酷刑擅法을 對置시키고 前者를 文國開明之政 後者를 蠻邦 未開之政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第3節

陛下 己下責己之喻於民者數이시나 而終不踐聖喻요 故로 百姓益疑而法紀益弛니이다. 今陛下 雖百下聖喻시라도 百姓은 不信而相語曰「君王이 又欲欺我也」라하니 夫如此면 令必不行하고 而亂起於不虞리이다. 伏願聖明은 率*百官하시고 祭于宗廟하시고 以及皇天后土하시어 誓約五事曰「朕이 今敬承天命하야 誓約此五事하고 而臨我赤子하야 保我邦國이라. 如有違此大義者면 則欲危我赤子요 亂我邦國也니 朕必不恕하고 視同盜賊하려니 凡我臣民은 謹承此命하라 一曰作善者와 有才德者는 雖賤*이라도 賞之陟之하고 二曰 作惡者와 無才能者는 雖貴라도 罰之黜之하고 三曰省刑罰하고 薄稅歛하야 使民免於艱苦하고 四曰勸農桑하고 興工商하야 使民免於飢寒하고 五曰 修文德하고 治武備하야 使民安而國泰라」하시고 立誓之後엔 必先立信於宮中하사 以及於朝廷하시고 立信於國中하사 以及於天下하시면 則邦內는 必無犯法之人하고 天下도 亦無背約之國하야 萬事隨聖意而亨通하시리이다. 凡治國立法之要는 以信爲重이라 故로 信者는 治天下至寶也니이다. 臣이 聞하되 「法貴順俗而治之」라하니 則率由舊章而漸就良道하고 不*可猝變하야 而惹起擾亂이나 然이나 若有大益民國而大勝舊法者면 則雖有騷擾紛紜之議라도 果決斷行하시고 而後無變이면 可漸達善美之域*이니이다

* 外交文書本率
作卒

* 史料本賤作賤

* 史料本不作下

* 史料本城作城

- 己下責己之喻於民者數 而終不踐聖喻 이미 聖上이 몸소 自責하는 聖諭를 百姓에게 내린지가 여러번이시나 마침내 聖諭는 實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 聖諭를 上下가 實踐遵守하지 아니하고 있음으로 百姓의 信을 잃고 있다고 할수 있다. 諭는 告也 曉也, 「聖諭」王의 訓示, 訓諭
- 吾王又欲欺我也 聖諭가 내릴때마다 百姓은 吾王이 또 우리 百姓들을 속이고 있고나 한다는 뜻.
- 誓約五事 다섯가지의 改革事項을 宗廟와 皇天后土에 祭祀하면서 誓約하고 國

民에게 宣布하시라는 것이다. 百姓을 속이는 것 같은 聖諭를 頻繁히 내리는 것보다는 聖上自身이 實踐할 覺悟를 가지고 天地神明에 誓約하고 宣布하되 그대로 實踐하시라는 趣旨라고 생각된다. 日本의 明治維新의 五箇條誓文이 想起되며 甲午更張에 있어 洪範十四條가 宣布된바 當時의 內部大臣이 朴泳孝였다. 朴泳孝의 宿願을 實踐한 것같은 느낌이다.

- 法貴順俗而治之 法은 風俗과 習慣에 따라 다스리는 것을 貴重하게 여긴다는 뜻 古風舊例을 尊重하는 것.
- 率由舊章 [詩傳] 大雅, 假樂 先王의 舊法에 따른다는 뜻.
- 然若有大益民國而大勝舊法者 則有廢擾紛紜之義 果決斷行 그러나 萬若에 民國에 크게 利益이 되고 舊法보다 크게 훌륭한 新法이 있으면 시끄럽고 어지럽히는 큰 反對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採用하여 改革을 果敢히 斷行하라는 趣旨. 이 경우에는 多少의 反對나 騷亂이 있을지라도 固陋한 傳統的 政治制度인 舊法을 西洋의 文明開化의 政治制度인 新法으로 果敢히 革新을 斷行하여야 한다는 意味가 內涵되어 있다.

第4節

1. 凡處訟과 及大小輕重之罪는 只任判官裁之하고 而不可以主權擅裁事오 (註)凡 人性은 因喜怒哀樂恐懼憂慮로 而失其常이라 故로 裁判判罪는 不可不任他人處斷也 오.
2. 廢酷刑하고 以保生命事오 (註)法酷故로 失國之主權於外國니이다
3. 廢孥戮之典하고 只治原犯하야 而不可及父母兄弟妻子之事오
4. 考*問罪人하되 不可濫刑하야 誣服其罪事오 (註)雖有捧遲晚하야 自服其罪之法이나 然이나 多因酷刑으로 誣服也라
5. 凡大小輕重之罪는 必히 彰明罪證而自服然後에 可以繫獄處刑事니 野鄙不聞之國은 人民이 繫獄被刑이라도 而不解自己之罪者多也니이다.
6. 廢如捕廳之隱匿刑*殺事오 雖被刑殺者之父母兄弟妻子라도 而不知其獄被殺이던 豈非無法殘忍政哉아
7. 聽訟斷獄은 不可秘之오 而許衆庶하야 入場傍聽이던 則判官이 欲用酷容私者라도 自減事오
8. 定懲役之法하고 設懲役之場하야 而非最重大之罪면 不可殺之오 并使之懲役事니이다.
9. 廢捕盜廳하고 而於巡廳에 增削其規例하고 置警巡之士二萬이던 則姑足以導民心하고 察民情하고 制強暴하야 救寢急事오
10. 嚴禁宰相士大夫로 以及庶民하 各於私家用刑하고 而雖係自己之子弟奴婢라도 必仰公裁事오
11. 嚴*禁宰相士大夫之行強暴於下類事오
12. 令人民貸償賣買*와 凡諸款約證文에 務爲照詳하고 兼捺印하야 以便後訟하고

* 東亞本考作梟史料本姜本同丁本作考(梟)

* 史料本刑作利

* 外交文書本外各本 11. 嚴禁以下 15字缺

* 丁本缺買

而文證模糊者不可聽訟事호

13. 定貴賤人民之墓地于各處하고 而禁埋于他하야 以除山訟之煩하고 又使後日之續務事호

- 1. 只任判官裁之 而不可以主權擅裁事 裁判은 오직 裁判官에게만 맡기고 君主가 權力을 行便하여 任意대로 裁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 여기의 主權은 王의 權力의 뜻.
- 2. 法 酷 酷刑의 또다른 表現이며 法令苛刻(第3條) 苛政(前文, 第8條)과 同意이며 法寬, 仁政의 反對되는 無法殘忍之政(6)의 原因이다. 따라서 法寬의 苛政은 外國의 侵略을 招來하고 主權을 빼앗기기 쉽다는 것이다.
- 3. 卒戮之典 犯人の 妻子까지 戮辱하는 刑罰 書傳, 商書 湯誓의 말. 典은 成文化된 法律, 法典 傳統的 兩班社會에서 罪人의 妻子뿐 아니라 父母妻子兄弟의 老幼를 莫論하고 殺戮하거나 奴婢化 하였다.
- 4. 考問罪人 罪人을 잘 調查하는 것. 偵問 審理등의 뜻. 或者는 考問을 拷問의 誤植으로 보는 이도 있으나 文法上 拷問과 이에 계속되는 不可濫刑과는 連結이 되지 아니한다. 罪人을 자상하게 問招하되 濫刑 즉 拷問 하여서는 안된다고 解釋한다. [用例] 「枷鎖累月에 更無考問이오」(皇城新聞 光武 4年12月11日).
- 5. 彰明罪證然後 可以繫獄處刑事 文明開化國의 證據에 의한 裁判制度를 說明한 것이다. 前文에서 본 「近世文明之國 罪刑辨罪務研其情原」와 같은 趣旨이다. 野鄙不開之國(野蠻國)을 보면 人民을 마구 잡어 가두고 處刑하니 被刑者가 무슨 罪로 處刑되고 있는지 自己罪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朝鮮社會의 野蠻의 人權侵害의 現實을 文明國에 對置하고 批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6. 捕盜廳之隱匿刑殺 捕盜廳에서 人民을 마구 잡어 가두고 刑殺하되 一切 秘密에 부치고 있어 父母妻子兄弟가 刑殺된 事實을 모르고 있는 野蠻의 人權侵害現實의 改革을 促求하고 있다.
- 7. 聽訟斷獄不可秘之 「聽訟」(民事被判)「斷獄」(刑事被判)을 公開하라는 것. 公開裁判으로 人權이 保障될 수 있다고 主張하고 裁判制度의 近代化를 促求한 것이다.
- 8. 定監獄之法 監獄制度의 採擇을 主張한 것.
- 10. 嚴禁……私家用刑 宰相士丈夫는 兩班을 意味하며 庶人의 경우는 富有하여 多少의 權力을 行便하는 武斷鄉曲을 意味한다 兩班들과 權力層에 接線한 庶民들에 의한 私家用刑 즉 人民을 마구 自己 집에 가두고 私刑私載한 惡風을 嚴禁할 것을 主張한 것이다.
- 13. 定貴賤人民之墓地 貴賤에 따라 墓地를 定하고 山訟을 막으라는 것인바 兩班과 常奴를 「貴賤」이라고 區別한 것은 班常의 階級廢止主張에는 矛盾된다.

〔三曰 經濟以潤民國〕

第1節

國之財貨는 猶人之津液也니 人이 保養氣血하야 而流通無滯면 則健壯하고 國이 繁殖產物하야 而便利運輸면 則富潤이니이다 故로 欲繁殖產物하고 便利運輸면 則

* 丁本以便以下22字缺

節儉勤勞하고 而與農事工業漁獵牧畜等하야 以取山野河海之利하고 造金銀錢貨하야 以*便通用賣買하고 *設商社銀行하야 以便儲蓄貿易하고 修道路橋梁하야 以便行旅車馬하고 治河海川渠하야 以通舟楫槎筏이니 凡人之所重者는 以衣食住三事爲大하야 無不欲增財致富하고 給需用享歡樂이니 其法은 在於治家以質素儉約하야 治產物製物積物散物費物로 有節而運輸賣買之道便也니이다

- 本條는 大體로 福澤의 「西洋事情」外編에 依據하여 執筆하고 있는 듯하다.
- 人保養氣 血而流通無滯 則健壯 國繁殖產物 而便利運輸 則富潤 나라를 사람에 比喩하야 나라의 財貨(產物)는 사람의 血液과 같이 運輸交通이 圓滑해야 繁榮發展한다는 趣旨이다. 青木氏는 福澤의 「交通論」(交詢社雜誌 第28號)(福澤諭吉全集 第19卷)에서 取한 것으로 推定하고 있으나 반드시 그러하다고 볼 必要는 없다.
- 以衣食住三事爲大 無不欲增財致富給需用享歡樂 福澤의 「西洋事情」外論卷之三「經濟의 總論」에 依據한 論述이다. (青木 前掲 p. 52 參照)
- 產 物 自然生產物 天產物 products
- 製 物 人工生產物 工產品 manufactures
- 積 物 店舖에 쌓인 物品 商品 merchandise
- 費 物 消費物品 consumables

第2節

* 史料本雷作帝

夫賣買之道는 不雷*分布物品於海內하야 給世間之缺乏이오 均其有餘不足而以達人之便利오 且藉其物品하야 而助世之文明開化하고 博人之知識見聞하야 親人類之交際하야 而能保太平無事라 且人者는 不能獨處하고 必賴他而遂生者也라 故로 不得不群居往來하야 而相助以其長하니 是以로 或爲士하고 或爲農하고 或爲工하고 或爲商하고 奔走勤勞於往來相交之事는 是雖各爲自己而然이나 然이나 若不顧一人而不通有無은 則其一人이 必致困窘也니이다.

- 不雷 雷는 止也 그 뿐 아니라, 또는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의 뜻.
- 藉其物品 而助世之文明開化 博人之知識見聞 物品을 빌어서(通하서) 社會의 文明開化를 돕고 사람의 知識과 見聞을 넓히는 것이라는 뜻. 福澤의 「西洋事情」外編 卷之三「經濟의 總論」에서 取하고 있다. (青木, 前掲 p. 53)
- 人者不能獨處 必賴他而遂生者也 福澤의 前掲 卷之一「家族」에 依據하고 있다. (青木, 前掲)

第3節

故로 有無相通者는 是無異於欲給一人之衣食住하야 使幾千萬人員으로 布在於各處而力役也니 豈非至奇至妙之理哉있가 若反是而不務農事工業하고 不勵漁獵牧畜하야 而錢貨不可信하고 儲蓄不可得하고 河海道路를 不開其塞하고 舟楫車馬不得其便하고 而缺乏을 不能以給하고 有無를 不能以通하고 人民은 不能以親交하야

以致艱難辛苦면 是는 滅人弱國之道也니이다 故로 明此理者는 勉耕作하고 勤工業하고 勵牧畜하고 務漁獵하야 普通四海而無遊民이면 土地雖小라도 人民이 繁多하고 而命亦長壽니 此는 人民有識而百具殷富之所致로소이다 美英德等國이 皆然이오 暗此理者는 懶惰無作하야 不通鄰邦하고 而多遊民하야 土地雖廣이나 人民이 稀少하고 而命亦短夭하니 此는 人民無識而百具缺乏之所致로소이다 野蠻無來由等族이 皆然이오

- 有無相通者 是無異於欲給一人之衣食住 使幾千萬人員 布在於各處力役也 豈非至奇至妙之理哉 福澤의 前掲 卷之三「經濟의 總論」에 依據하고 있다. (青木, 前掲)
- 明此理者……此人民無識而百具缺乏之所致 福澤의 前掲 卷之一「世의 文明開化」에 依據하고 있다. (青木 前掲 p. 54)
- 野蠻無來由族 野蠻人으로 아무 由來가 없는 部族.

第 4 節

凡富貴利達에 有二道하니 一曰「勞自己之心力하야 而兼有益於他人이오」一曰「損害他人하야 而以潤自己라」是以로 文明之人은 各知是非하야 而無害人利己之事라 故로 皆得以算明私有之財貨* 而誇示之하야 便於營業이오 愚昧之人은 不知禮義兼恥하야 而縱天然之慾하야 行暴於他而利己之事라 故로 民不得以算明其私有之財貨而隱匿之하야 難於營業이오 孔子曰「邦有道에 貧且賤焉이 恥也며 邦無道에 富且貴焉이 恥也니라」하니 即此之謂也요 大學에 云하되「生財有大道하니 國無遊民則 生者衆矣하고 朝無幸位則食者寡矣하니 不奪農時則爲之疾矣하고 量入爲出則用之舒矣하야 而財恒足矣니라 仁者는 散財以得民하고 不仁者는 亡身以殖貨라」하고 又云「君子는 先慎乎德이니 有德이면 此有人이오 有人이면 此有土요 有土면 此有財요 有財면 此有用이니라 德者는 本也요 財者는 末也니 外本內末이면 爭民施奪이니라 是故로 財聚則民散하고 財散則民聚니라 是故로 言悖*而出者는 亦悖*而入하고 貨悖*而入者는 亦悖*而出이니라」하니 不可不愼요 而若不知此理而圖富면 則雖勞心焦思라도 反致究困耳니 蓋不治其本而治其末之故也로소이다

* 東亞本貨作寶
史料本同 丁本
同

* 各本悖作勃依大
學訂勃爲悖

- 凡富貴利達……而以潤自己 福澤의 前掲 卷之一「世人相勵み相競ふ事」에 依據하고 있다. (青木, 前掲)
- 皆得以算明私有財貨 모두가 計算을 明白히 밝히고 公開的으로 私有的 財貨를 얻는다. (財産을 모은다)는 뜻. 文明國에서는 私所有權이 保障되어 있는 事實을 指摘한 것이다.
- 民不得以算明其私有財貨 百姓이 公開的으로 그私有財産을 計算으로 밝히면서 獲得하지 못한다는 뜻. 富者가 富者인 척 못하고 財産을 때었기지 않도록 감추어 두어야 하는 壓制의 現實을 지적한 것임.

- 邦有道貧且賤焉恥也 나라에 治國平天下의 道義가 서 있는데 貧賤한것은 君子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뜻.
- 生財有大道 國無遊民則生者衆矣 朝無幸位則食者寡矣 不奪農時則爲之疾矣
量入爲出則用之舒矣 財物을 늘리는데는 큰 길이 있다. 나라에 일 앓하는 遊民이 없으면 財貨의 生産이 많고 朝廷에 德이 없이 자리만 메우고 있는 者가 없으면 無爲徒食하는 者가 적을 것이며 使役을 삼가고 農時를 때맞는 일이 없으면 農事가 빠르게 잘될 것이며 收入을 보고 이에 맞게 支出하던 經營이 넉넉할 것이라는 趣旨임. 大學의 生財有大道의 章을 變容하여 說明하고 있음.
- 君子先慎守德……貨悖而入者亦悖而出 大學 章句 傳十章에서의 引用 解釋을 省略함.

第5節

夫一人致富之本則節用勤勞요 一國致富之本則保民而不聚財也나 人無恒產而懶惰하고 不勞心力役하여 而以食人之勞役이면 此는 奪人之功也요 害及於一國而致貧窶*라 故로 勤勞懶惰二者는 不相容이 猶水火也나 政府는 收民之稅에 宜孜孜라야 以保民護國으로 爲本하야 而用之官祿治安軍務營繕衛生教育救窮等과 及褒賞有功이면 則可也리오마는 然이나 法令苛刻하야 而害民之通義하고 防禦失策하야 而致國之恥辱하고 與無義之軍하야 而窘迫百姓하고 忽囊疫之行하야 而傳染四方하고 無心教育하야 而人民固陋하고 不顯四窮하야 而轉乎丘壑하고 祿無庸之官하고 賞無功之人하야 與無益之土木하야 而費公財면 此는 盜民之財요 竭民之力이니 不可謂政府也이다

* 丁本究作窮

- 人無恒產而懶惰 不勞心力役而以食人之勞役 此奪人之功也 福澤의 前掲卷之一「人生の通義及び其職分」에 依據하고 있음 (青木, 前掲 p. 55)
- 不顯四窮而轉乎丘壑 鰥寡孤獨의 四窮者를 돌봐주지 아니하여 山골자기에 갈러떨러져 죽어가는 慘狀. 孟子의 「老弱轉乎溝壑」에 依據한 表現이다.
- 法令苛刻 法令이 무겁고 無慈悲하고 壓制의 道具가 되어 있다는 뜻. 法酷, 酷刑과 같은 뜻. 苛政의 原因을 指摘한 것.
- 害民之通義 通義는 福澤이 즐겨 쓴 用語로 孟子에서 나온 말이나 이를 right 즉 權利의 譯語로 轉用하고 있었다. (西洋事情二編卷之一「例言」參照) 「害民之通義」는 人民의 權利 特히 人權을 侵害하고 있다는 趣旨이며 法令苛刻의 結果이다.

第6節

夫人民이 出稅奉公之本志는 欲保身家之幸安也라 故로 爲政府者는 宜任賢良하야 而保民護國이니, 有識君子는 列於上大夫하고 無知小人은 列於下隸하야 祿俸을 稱其品職하야 而各安其分이면 則政可治요 而民賴而安이나 然이나 下隸厚俸而上大夫薄祿이면 則此는 大學의 所謂「其所厚者에 薄이오 而其所薄者에 厚也」라 下過而上不足하고 士窮而下驕면 恩威不行하고 難於行公하야 而上下相勝하야 貪暴

隨生이라 是以로 民失其本志면 反被其害而致艱難하야 於是乎禍亂이 忽起하야 殆至不可如何者往往然矣니 可不鑑乎잇가 且人之性情은 隨窮達而變者也니 窮則多思라 故로 致達하고 達則無思라 故로 致窮하나니 是故로 富貴而能思貧窮이면 則萬全而不殆也니이다 民國之富强은 人々之所大欲이로되 而或不克遂其願者는 在多思와 與無思也로소이다

○ 夫人民出稅奉公之本 欲保身家之幸安也 무릇 人民이 稅를 내고 奉公하는 本意는 自己 집안의 幸福과 安寧을 確保하고자 하는데 目的이있다는 뜻. 政府設立의 目的이 人民 各自의 幸福의 追求에 있다는 것으로 近代의 民主主義 思想을 表現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 其所厚者薄而其所薄者厚 出典 大學章句.

○ 人之性情 隨窮達而變者也 사람의 性質과 思考는 窮達(窮通, 막히고 열리는 것)에 따라서 變化發展한다는 뜻. 易經의 「窮則變 變則通」의 變通 思想을 援用한 主張이다.

* 外交文書本食作
貧東亞本史料同
各本實官以下作
註記(小字)

* 東亞本勅作勅史料
本同

* 史料本而如以下
位於富民이重複
되고있음.

* 外交文書本外各
本以魯帝以下作
註記

* 外交文書本外各
本官祿薄以下作
註記

* 丁本外各本食作
貧

* 外交文書本挿入
人字地於之間

* 外交文書本外各
本如一以下作
註記

* 外交文書本外各
本牛雖多以下作
註記

第7節

1. 止賣官鬻位之事하야 而治其本事오 賣*官則其官이 必貪*於百姓하야 以充其所出하고 賣位則其位必賤하야 而國無立功之人也라 且賣官賣位에 或有願買者나 然이나 大概勅*授官位於富民하야 而*如不承順이면 則囚於捕廳하고 而勅捧其價니 此與強奪民財同也니이다
2. 定君主之祿事오 以*魯帝無限之主權으로도 亦有定也오
3. 節浪費하고 汰庸官하야 而改定官祿하야 以稱其職事오 官*祿薄하야 而自救不贍이면 則必生貪*鄙之心이오
4. 詳籍戶口하야 以便量入爲出事오
5. 定戶之次第하야 而改定統家之法事오
6. 改量地租하야 而設地券事오
7. 定尺度量衡事오
8. 禁民之典鬻土地*於外人事오
9. 設法하야 禁遊民하되 而不可定其雇價事오 如*一定其雇價면 則勤惰無別하야 雖勤而無其報리니 故로 必與惰者로 同情也오
10. 薄稅斂하고 寬其法하야 而無偏頗事오
11. 勸農桑하야 而教民以作農之法과 用具之利事오
12. 令牧羊하야 以圖後日之衣服으로 而雇外人하야 使教牧羊之法事오
13. 務牧六畜事오 牛*雖多나 不畜이면 則必致缺乏之也니이다 馬小而不堪於用이면 則取西方之種하야 以繁殖可也오

14. 興工商^{하야} 而使學習其法術事^오
15. 盛興漁業^{하야} 以取無窮之利事^오
16. 盛興蠶業^{하야} 以濟民之危^{하고} 而兼致害品之一大種事^오
17. 置山林司^{하고} 修治山林川澤^{하야} 免於材木薪炭及魚鱉*之缺乏^과 又免沙汰山川而以害田畝*事^오
18. 使堤堰司^로 修築堤堰^{하야} 以免水害^{하고} 又儲水以免旱災事^오
19. 使漕川司^로 常治水利^{하야} 以免泛濫崩頽^{하야} 而使舟楫之通行事^오
20. 置治道司^{하야} 常修道路橋梁事^오
21. 許民以私錢^{으로} 疏水 修道 架橋^{하야} 而在該處^에 權收黃錢事^오
22. 開拓內地^와 及島嶼之荒蕪事^오
23. 大開金銀銅鐵^과 及石炭之鑛^{하고} 而雇外人董督事^오
24. 造金銀銅錢^{하야} 而救當五錢之弊事^{오*}
25. 禁銷鎔通用之錢事^오
26. 不可勒罷通用之錢^{하야} 而害民之私有事^오 此*雖古例이나 更不可行也^{니이다}.
27. 建銀行事^오
28. 制限利息之法事^오
29. 更設郵程局事^오
30. 使舟橋事^로 重興船政^{하고} 而置燈臺^와 浮標於海路事^오
31. 助民與商社^{하야} 而出商于外國各埠事^오
32. 助民設陸運商社^{하고} 或官設^{하야} 而以便陸地運輸^{하고} 且免於竊發之患事^오
33. 撤京城開市^{하야} 送出外國之人^{하고} 而使國民營其業*事^오
34. 夜設燈于道側^{하고} 以便行人^{하야} 而少竊發之患事^오
35. 弛巡邏之禁^{하야} 而許民夜市事^오
36. 不可官定通用錢相換之位值^와 及諸物品之價值事^오
37. 勿論何物^{하고} 不可許都賈*^로 獨沾其利^{하야} 以困民生事^오 *係始發之者則可以許矣^{니이다}
38. 弛紅蔘之禁^{하고} 使譯官^{으로} 設商會^{하야} 而以益其出品事^오
39. 會西北人^{으로} 取長白山之材木^{하고} 而代植稚木事^오
40. 雇清之緞 錦 磁 陶等^과 日本之漆繪 彫刻鋼鐵 花卉 庭園等教師^{하야} 以教人民事^오
41. 勸人民^{하야} 多設旅店^와 及衣食之廳事^오 文*明之邦은 此三事最盛^{니이다}
42. 公私逋償은 只使原犯償之^{하고} 而不可族徵洞徵^{하야} 以致一族一洞之貧困^이

* 東亞本纂作纂姜本史料本同

* 外交文書本畚作史烟, 東亞本同丁本同, 史料本同

* 外交文書本弊作幣

* 外交文書本外各本此雖以下作註記

* 丁本東亞本欠業

* 史料本賈作賈
* 外交文書本外各本係始設以下作註記

* 外交文書本外各本文明以作註記

* 外交文書本外各本若不然以下作註記

* 外交文書本起作赴史料本，東亞本同

* 外交文書外各本若不先以下作註記

나 雖係原犯之父母兄弟妻子라도 亦不可強使之報償事오 *若不然則惹起*悖類之愆하야 而又使子弟로 生不良不節之心也이니다, 故로 不可不廢此法也오

43. 定新舊物賣買之規則하야 以便賣買하야 而少竊發之患事오

44. 教民壯幼以納稅保國安民之義하야 使之心得然後에 徵稅於農商工하야 用於方今之急務事오 若*不先喻其利害而猝行其政이런 則大致騷擾하고 而怨上也오

○ 1. 賣官竊位 官職과 爵位를 賣買한다는 것 賣官賣職한 것을 사서가진 官職者는 本錢을 뽑기 위하여 人民을 苛歛誅求 한다는 것이다.

勸授官位於富民而如不承順則囚於捕廳而勒捧其價 돈냥이 있는 富民을 골라 強制로 官位를 投與하고 萬一 반어드리지 아니하면 捕廳에 囚禁하고 代價를 強取 한다는 것.

○ 2. 定君主之祿事 君主의 俸祿을 一定하다는 것 나라의 豫算과 王室의 豫算을 區分하는 主張이 숨어 있다. 立憲君主主義를 想定한 主張이다.

○ 3. 改定官祿以稱其職事 官吏에 대한 俸祿의 制度를 改編하고 官職에 알맞는 俸祿을 것을 主張한것.

自求不贍則必生貪鄙之心 넉넉히 俸祿을 支給하지 아니하면 貪鄙의 마음 이 생겨서 威信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

○ 6. 改量地租而設地券事 地租를 調査하여 다시 改定하고 外國의 地券制度를 導入하라는 것. 土地制에 있어 地券(title deed, 所有權證明書)을 發給하여 所有權制度를 確立하라는 것이다. 福澤諭吉의 西洋事情外編卷之三「私有の本を論ず」에서 取하고 있다.

○ 8. 禁民之典竊土地於外人事 百姓이 土地를 外國人에게 典當잡히거나 賣渡하는 것을 嚴禁하라는 것. 土地所有制度의 近代化를 成就하기 前에는 外國人의 土地取得을 禁止하라는 趣旨로 생각된다.

○ 9. 不可定其雇價 雇價는 賃金의 뜻. 勞役에 대한 賃金을 一定하지 말라는 것인바 福澤諭吉의 西洋事情 外編卷之二「政府의 職分」에서 取한 福澤의 主張이다. 福澤은「政府가 人民의 通義職分(權利義務)을 是非하고 그 私事に 干涉」하는 것을 反對하고 賃銀(雇價)을 一定하지 말라 한 것을 取한 것이다. 自由放任主義의 經濟體制下에서 成立되는 것임은 勿論이다. 敍吉濬도「政府의 職分」(西遊見聞, 第6編)에서 같은 主張을 하고 있다.

○ 23. 雇外人董督事 金銀銅鐵石炭의 各種鑛山을 開發하고 外國人으로 하여 監督시키라는 것(外國技術의 導入을 意味)

○ 33. 撤京城開市 送出外國人 京城을 開市하여 外國人들의 出入을 自由로히 하고 商業의 自由를 인정하고 있는바 그들의 商業駁術에 市民이 擲取當하고 있음으로 外國人의 營利事業을 禁止하라는 趣旨이다.

○ 35. 弛巡邏之禁而許民夜市事오 우리나라의 夜禁制度를 緩和하고 夜市의 開設을 許可하라는 것.

○ 37. 勿論何物 不可許都買 獨沾其利事 무슨 商品이든지 獨占賣買하고 營利를 取하는 것을 禁止하라는 趣旨임 다만「係始發之者」즉 처음 始作한 者는 此限에 不在하라는 것이다.

○ 42. 公私通債 只使原犯償之 而不可族徵洞徵 官物 官錢을 橫領 消費한 償

務나 其他私人的 債務이건 모두 오직 犯罪者個人만이 償還의 責任을 지고 償還 責任을 犯罪에 關係 없는 一族에게 지우는 族徵이나 一洞에게 지우고 徵收하는 洞徵은 不可하다는 個人責任의 原則을 宣明한 近代法原理이다.

- 44. 若不先喻其利害猝行其政 納稅의 利害 즉 納稅의 必要性和 重要性을 敎育啓蒙한 然後에 徵稅할 것이며 萬一 納稅의 啓蒙없이 新稅를 만들고 猝然히 施行 徵收하여서는 아니된다는 趣旨이다.

[四曰 養生以健殖人民]

第1節

養生者는 保養血液하야 流通無滯하야 而壯健身體也요 故로 處淨避汚하야 而節食運動은 即養生之本也니이다, 是以로 其大旨는 以衣食住三事로 爲要하니 故로 衣服은 適其寒暑하야 免於凍爛이요 飲食은 節其飢飽하야 免於枯脹이요 住居는 使其運動하야 免於閉塞이나 內或有疾病之發과 外或有染汚之侵이라도 即用醫藥而治之면 以致筋壯力健하고 心廣體胖하고 亨幸福하고 長生命하야 而人口繁殖이니 此는 文明國之人의 所以養生也니이다

- * 東亞本欠致岡本
本同
- * 外交文書本塞作
察
- * 丁本瘦作疲

衣服不適하야 而致凍爛하고 飲食不節하야 而致枯脹하고 住居不便하야 而致* 閉塞*하야 內數疾病하고 外被染汚하야도 而無醫藥之治면 以致筋微力弱하고 神迷體瘦*하고 多辛苦하고 短生命하야 而人口減少이니 此는 野蠻國之人의 所以傷生也니 其所以然者何也이릿가

一은 是不學無識이요 一은 是博學多識이니 不學無識이던 則無遠慮하야 任天然之性而行之하야 與孩兒無異하고 博學多識이던 則達事理라 故로 能究天地之奧意하야 而發明益民養生之道하야 以節天然之性而衛之니이다, 是以로 衣服은 貴淨潔하고 飲食은 貴淸美하고 居處는 貴高潤하고 夙興夜寢*하야 非時不食이니이다

- * 東亞本震作寐

○ 養生 오늘날의 保健衛生의 뜻.

○ 枯脹 枯腸과 同義. 배고파서 창자가 맞붙는 것을 形容한 것.

○ 心廣體胖 大學의 「富潤屋 德潤身 心廣體胖」에서 나온 말. 恒産이 있고 恒心이 있으면 마음이 廣大寬平하고 몸이 安泰淸舒하다는 뜻 朴泳孝는 文明과 野蠻을 對置하고 人間이 博學多識하고 明達事理하여 衣服 飲食 居處를 衛生的으로 하는 文明人의 生活을 大學의 用語를 빌어 身廣體胖이라고 形容한 것이다.

○ 長生命 而人口繁殖 此文明國之人 1以養生也 文明國과 野蠻國을 比較하면서 養生의 重要性을 說明한 部分은 福澤의 前掲 卷之一 「世の文明開化」에서 取한 듯한다.

○ 一是不學無識 一是博學多識 福澤의 前掲卷之三 「人民의 敎育」에 依據한 論述이다. (靑木, 前掲 p.57)

第2節

孔子는 「食饒而餒과 魚飯而肉敗를 不食하시며 色惡臭惡不食하시며 失飪不時不

* 論語惟作唯

食하시며 肉雖多나 不使勝食氣하시며 惟*酒無量하시되 不及亂이러시다」라 하시니 此는 聖賢이 所以節食養生之則也며 或謂하되 「人巧는 不如任天然之性而養之라」하니 雖沾汗貼垢之衣라도 足以禦寒이오 腐敗饅餠之食이라도 足以充腹이오 壅塞低窄之家라도 足以容膝이오 汚穢之蒸發도 不足以畏오 卑濕之氣臭도 不足以避오 或一日 飲食十度하고 或晝寢而夜不寢하고 或終歲不洗身體하고 或家有疫癘之病이라도 只任命于天而諱秘之하고 或罹疾病이던 專祈神佛하야 不用醫藥하며 間用俗藥하야 却致死傷*하며 或浸酒色하야 而不知返하서 或終日坐臥하야 而不爲動하고 或欲爲己之娛樂하고 使幼年子孫嫁娶하고 或養子孫以強暴로 而傷其身體筋骨하고 弱其性氣心力하야 或爲事業過度而不休하야 以損精神하고 致疾病의야 凡終其身에 不知其所止하야 以致夭札을 不自知하니 豈非愚昧之甚也의오 以鳥獸之不知로도 亦能知其所止而保養身體어늘 可以人而不如禽獸乎이릿가 日本은 自數十年前으로 廢酷刑하고 施衛生之法以來로 其人人之繁盛이 可謂隆盛也이니다

* 外交文書本傷作復

- 食饅而餽……不及亂 論語 鄉黨篇의 孔子의 말씀을 縮約하여 옮기고 있다.
- 人巧 不如任天然之性而養之 人工이 安만 精巧하셔도 天然의 本性에 따라 養生함만 같지 못하다는 뜻. 福澤의 前掲 卷之一 「世の文明開化」의 趣旨를 援用한 主張 같다. (青木, 前掲 p.58)
- 沾汗貼垢之衣 땀에 젖고 때묻은 옷 不潔한 衣服을 말함.
- 腐敗饅餠之食 썩고 變한 飮食 不潔한 害로운 飮食
- 壅塞低窄之家 숨이 막히는 듯한 비좁고 낮은 家屋
- 卑濕之氣臭 더럽고 濕한 空氣와 냄새나는 것.
- 疫癘之病 傳染 流行하는 惡疾의 病患
- 俗 藥 迷信에 基한 非科學的인 藥
- 不知返 고칠줄을 모른다는 뜻.
- 凡終其身不知所止 무릇 生涯를 마칠때까 멈출 줄 모르고 繼續한 다는 뜻.
- 夭 札 早死하는 것 天壽를 다하지 못하고 일찍 죽는것을 「夭」라고 하고 疾病으로 죽는 것을 「札」이라고 한다.
- 以鳥獸之不知 亦能知其所止而保養身體 「鳥獸의 不知로써」 아무것도 모르는 鳥獸라도 能히 멈출줄 알고 身體를 保養하고 있다는 뜻.

第3節

* 外交文書本聘作聘, 各本同

* 史料本他作也

1. 於惠民署에 聘*良醫하야 重興醫藥하야 而保民命事오
2. 於活人署에 改設疫癘病院하고 嚴其規則하야 使不傳染於他*하야 而謹慎救治其病人事오 (註) 惠活兩署는 救窮民治疾病之所也오 先聖朝에는 恤民之聖政이 어늘 而挽近衰廢하야 有明無實은 誠可惜也오

3. 設法하야 救窮困之鰥寡孤獨과 及身體不具之民事호
 4. 禁棄兒하야 而設法養育事호
 5. 禁男女飲毒害命과 及自傷等事호
 6. 禁婦女飲毒墮胎事호
 7. 禁食富貴하야 而除去子孫之腎囊事호
 8. 禁夫之行強暴於其妻事호
 9. 禁養子孫以強暴事호
 10. 禁幼年嫁娶하야 而依古俗定嫁娶之年限事호
 11. 嚴禁吸鴉片烟事호 (註)今雖非人々 皆吸이나 然이나 若不預禁이면 則必致蔓延하야 迷入之心神하고 傷人之身體하야 而荼毒生靈矣리니 可不懼哉아
 12. 喻人民하되 如有疫病이면 即可服藥하고 而不可用巫醫事호
 13. 普行種牛痘하야 以救人之夭死과 及牛痘事호 (註)臣於日本에 見其人民小壯者하야 顔有 痘痕者 甚稀어늘 此는 日本 自進文明之標也로소이다)
 14. 清潔宮闕寔掖하고 以及閭巷街道*川渠하야 而可定取除屎尿塵芥之規則이호
是는 非徒養生이라, 亦於農務大有益事호 (註)自宮殿寔掖으로 以閭巷街道川渠에 塵芥成丘凌하고 屎糞如塗金이어늘 此*는 外人之所大畏요 而誹笑者也이니다.
不啻所見이라 極其不美 하고 其蒸發之氣는 必釀成疫癘也호
 15. 禁造家屋于道路總內하야 而預定直道之線과 建屋之基하고 廣其道路에 有一定之幅하며 高其房室에 有一定之高면 以免後日之弊害하고 而減少焚燒과 壅塞汚陋之害事호 (註)古家之房屋 高濶하야 而天頂又有大方孔하야 而出惡臭炭氣어늘 而挽近엔 低窄房室하고 而又封天頂之方孔하니 此는 因於知識漸乏之故也호
 16. 置救火具於閭巷하야 以免焚燒事호
 17. 依古俗하야 植樹木於人家稠疊處와 及街道之側하고 以除污穢蒸發之氣하야 而清大空之養氣事호 (註)空氣는 爲用與水 同也호
 18. 利水道하고 分注于閭巷街道하야 以便人民之需用하고 而又便於救火事호 (註)夫水者는 世間不可無之 需用物이호 而清潤淨潔에 人이 用之하야 致健壯康旺 하고 且凡衣服 器具 家屋 街道는 非水면 不能以洗滌污穢也호 又閭巷貧民의 無行遠方以汲水之暇者와 或有不能出門之事者와 或旱而井渴之時면 則貴如金하야 不能洗滌污穢하고 大致困難이니 然則利水道者는 養生第一 急務也호 且水或有毒이니 勿論注水井水라도 皆可檢查其良否然後에 可使民服飲하야 以免疾病也호 黃海道民多盲者는 亦因水之有毒則不可不導清淡水하야 以救其害也니이다
 19. 喻人民設沐浴之所하야 時時洗滌身體하야 以免污穢疥疹事호
- 2. 改設疫癘病院 活人署에 傳染病의 病院을 改設하라는 것.

* 東亞本道作國丁
本同

* 東亞本此作比丁
本欠此

- 7. 除去子孫之腎囊事 富貴榮華를 貪내고 子孫의 腎囊을 除去하여 高子(宦官)를 만드는 것.
- 13. 普行種牛痘 牛痘를 人民에게 普遍化시키고 天然痘의 流行을 막을 것을 意味
- 14. 定取除尿塵芥之規則 糞尿와 쓰레기 치우고 清掃하는 規則을 制定하는 것. 宮庭從從에서부터 閭巷街道川渠에 쓰레기가 山을 이루고 糞尿가 地面을 黃金빛으로 덮고 있어 外國人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고 指摘하고 있다.
- 15. 禁造家屋于道路線內 而預定直道之線 建築之基 道路線을 明定하고 家屋이 道路線을 侵犯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인바 市街計劃을 내다본 都市의 近代化를 主張한 것이다.
- 16. 救火具 閭巷에 救火具를 設置하라는 것인바 現代消防制를 내다본 主張이다.
- 17. 植樹木於人家 稠疊處及街道之側 家屋이 稠密한 데에 樹木을 심어야 한다는 것이며 街路邊에도 樹木을 심어 街路를 장식된 道路를 만들 것을 主張한 것이다.
- 18. 利水道 水道施設을 主張한 것이다. 衛生과 물의 效用을 說明하고 있다.

[五曰 治武備保民護國]

第1節

武者는 猶人之氣力也나 人無氣力이면 不能以自立하며 亦不能以禦侮요 國無武備면 內不可以行政이요 外不可以交鄰이니이다, 人有氣力이나 而心不定則危하고 國有武備나 而兵不一則亂이라 故로 兵者는 貴一而不貴多니 欲一之면 則莫先敎之以仁義하야 使之知爲國自戰之旨也요 立軍法하고 愛將士하고 惠兵卒하고 賞有功하고 罰有罪하야 使人으로 懷報國盡忠之志하야 而臨戰不顧死면 兵分而散之라도 自盡一人之力이요 合而成隊면 爭先赴敵하야 用如手足이요 進退隨意니 此는 有制之兵이라 將雖無能이라도 尙可以戰守리이다 故로 兵之有制無制는 國之存亡之攸係也니이다

- 武者猶人之氣力也 武는 사람의 氣力이라고 精神面을 重視하고 있다. 「氣力」의 뜻은 自立 禦侮의 精神 即 獨立自尊의 精神을 意味하는 것으로 解釋된다. 福澤諭吉이 「獨立自尊」을 높이 唱道하였으므로 그 影響인 듯하다.
- 國有武備 而兵不一則亂 國家에 武備가 있다할지라도 兵의 精神이 統一되지 못하면 軍紀가 어지러워진다는 뜻.
- 使之知爲國自戰之旨也 立軍法 愛將士 惠兵卒 賞有功……進退隨意 福澤의 「西洋事情」 初編 卷之一, 兵制에서 取하고 있음. (青木, 前掲 p.61.)

* 外交文書本宜作
宣, 史料本變本
同

* 丁本外各本擴作
曠

第2節

是以로 制國治軍에는 宜*敎之以禮하고 勵之以義하야 使兵民有恥也니이다. 夫人有恥면 大足以戰이요 小足以守니 故로 民愛己而知恥하고 推而擴*之하야 以及於

愛國이면 則可以保身護國也오 若反是면 將相이 行暴於上하야 而不知安危하고 軍民이 思反於下하야 而不顧榮辱則反間이 可乘而來也라 雖有百萬之師라도 必倒戈而走하리니 何可足以恃也리오 故로 吳起는 對魏侯曰「在德이오 不在險이라」하니 起는 名將也라 豈不知制軍國之道哉리오

- 制國治軍……在小足以守 以下는 「吳子」上 圖國에서 取하고 있다.
- 民愛己而知耻 推而擴之 以及於愛國 百姓이 自己를 사랑할줄 알고 부끄러운것 즉 侮辱이 무엇인지 알고 獨立自尊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미루어 擴大하여 國家를 사랑하는데 미치는 것을 意味한다. 愛己를 愛國의 根本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음으로 個人主義가 基礎로 되어 있는 民主主義의 思想의 表現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朴泳孝는 「民國」이라는 用語를 處사에 쓰고 있다
- 反間可乘而來也 反對로 間諜이 틈을 타고 들어올 것이다 라는 뜻.
- 在德不在險 吳起가 魏의 武侯王에 對하여 한말로 勝敗의 原因은 德에 있고 地形의 險阻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出典 史記 列傳 第五 孫子 吳起)

第3節

夫帝王者는 一國之主也오 將者는 一軍之帥也니 主愚而驕하면 則亡國하고 帥愚而驕하면 則覆軍하니 覆軍之將은 不如無將이오 無將之軍은 不如無軍이니 是故로 將帥者는 不可不擇其人任之하야 以保一軍護一國也니이다. 臣聞하되 「陛下屬外國人하야 敎練兵卒하시고 而姑不敎將帥之材云이시라」하니 誠如此시면 無將之卒을 將用於何處乎이릿가 兵卒은 學而知之하고 將帥는 不學而無知면 則卒疑將而不信하리니 將任兵而不能制이면 此必敗之將이라 不如無將이니이다

軍에 有舊式新式前軍後軍左軍右軍之別하고 律列相殊하야 不相關涉하고 而動輒競爭하면 雖一國之軍이라도 而相視如敵하고 且恣暴於道路閭巷하야 而民視兵卒如仇讐면 則此는 無制之軍이라 不如無軍也니이다. 此兩者는 禍亂之階요 敗亡機니 不可不察也니이다

- 將者一軍之帥也 將은 一軍의 統帥者이다 라는 뜻. 그러므로 將을 將帥라고 하는 것임.
- 將任兵而不能制 將帥가 士兵의 任意에 맡기고 統制가 不可能 하다는 뜻. 軍紀가서 있지 아니한 것.
- 無制之軍 軍紀 가서 있지 아니한 軍隊
- 軍有舊式新式前軍後軍左軍右軍之別, 律列相殊 不相關涉 而動輒競爭 雖一國之軍 而相視如敵 軍에 舊式軍隊와 新式 軍隊가 있고 前軍과 後軍이 있고 左軍과 右軍 등 各種軍隊가 있으며 隊列의 規律이 서로 다르고 서로 호러져 相關이 없고 系統이 서 있지 아니하므로 一旦 움직이면 서로 경쟁하여 한나라의 軍隊이긴 하나 서로 보기를 敵과 같이 생각하여 軍隊로서의 組織과 統帥가 서지 못한 軍紀 紊亂한 軍隊라는 趣旨이다.

第 4 節

* 東亞本因作因丁
本, 史料本同

往昔三國之盛時에 以高句麗之偏少孤軍으로 破隋百萬之衆하고 而蓋蘇文도 亦二萬之兵으로 破唐數十萬之衆은 皆因*於心一之故也니이다 至高麗에 與契丹戰은 一勝一敗하야 終喪鴨綠江以西之地하고 而不克回復하고 且至本朝에는 見敗於壬辰하고 納降於丙子하야 而亦不能雪이오 壤地人物이 雖盛大於高句麗라도 而反不及者는 將相軍民이 皆忘其恥辱故也토소이다 是以로 臣愚는 謂하되 方今 急務는 莫先於教人民以國史로 使之知本國得勝之榮과 致敗之辱하야 而銘之肝肺면 則能辨其是非하야 而恥心乃復하야 以致剛勇하야 始與之同事也리이다

- 皆因於心一之故也 將帥와 兵卒이 上下一心으로 士氣가 衝天하여 잘싸웠기 때문이라는 뜻.
- 見敗於壬辰納降於丙子 前文에 나와 있는 「東敗於日 而北降於清」과 같은 뜻

第 5 節

昔西曆千二百年間에 魯因內亂으로 爲蒙古所領이려니 魯之諸王이 列於蒙之臣下하고 而蒙使來巡于魯하면 則魯王이 躬自迎之하야 親執馬轡而導之하고 以其廟社之重器로 盛麥而喂其馬하니 如此者凡二百五十年間이오 而至千四百六十年間에 魯亦乘蒙之內亂하야 逐蒙人而自立하고 乃致今日之強盛者는 總不外乎將相之有道無道와 軍民之同心不同心也니이다 且雖有賢相智將과 同心之軍이라도 而如無糧食器械車馬하고 道路遠隔하야 險隘不通이면 則亦不可以出軍禦敵也니이다 故로 治軍者는 莫不先算糧餉器械車馬이니 而修治道路橋梁과 同其廣福하야 以便運搬이런 如今日有變於南邊이라도 明日使北軍으로 救援하고 今日有變於北邊이라도 明日使南軍으로 救援하야 使便於鎮變禦侮也라 故로 兵者는 貴同一而神速과 且知恥也니이다

- 魯王躬自迎之 親執馬轡而導之 以其廟社之重器 盛麥而喂其馬 魯王이 몸 蒙古의 使臣을 迎接하고 親히 馬轡(말굽비)을 잡고 案內하며 祖宗을 모신 廟社의 所重한 祭器에 한참 자라고 있는 보리를 여물로 말에 먹였다는 것. 즉 臣下之福을 다하였던 것이다.
- 將相之有道無道 軍民之同心不同心 軍隊를 統率하는 將軍과 政治를 擔當하는 宰相이 有識 有德한가 아닌가 軍과 民이 同心一體가 잘되고 있는가 아닌가에 國家의 運命이 걸려 있다는 뜻. 朴泳孝가 생각하고 있는 「有道」는 知識과 仁義의 修德을 뜻하고 同心은 祖國의 歷史와 國際形勢를 깨닫고 名譽를 사랑하고 受侮와 恥辱을 싫어하는 精神의 統一을 意味하는 뜻이다.

第 6 節

1. 置兵學校하야 令宗親及四民之俊秀少壯者로 就校習將兵之道하고 或遣外國하야 使留學事오

2. 先算養兵經費하야 以通常歲入으로 區劃其用然後에 可以營始하야 以免臨時窘急擾亂事오
3. 全國之兵은 依舊例로 統屬于兵曹하고 使之號令諸將하야 而全一軍制事오
4. 改定軍中法律事오
5. 改定募兵之法과 及在役年限事오
6. 重興水軍事오 (註)我邦은 三面跨海하야 必不可無水軍也오 故로 統制使臣李舜臣은 水軍之名將也니 創造龜艦하야 其製甚奇하고 而用兵有法이나 然이나 終無講其法而益新之하고 修其艦而益精之하니이다. 故로 至今日하야는 其法과 其艦이 共無하니 惜哉아
7. 重修武庫하고 修繕武器事오 (註)三百七八十年前에 鑄砲匠李長孫이 創造炸烈砲하고 名之曰「震天雷」하니 此는 先於泰西云이오 我邦非無其人이나 然이나 不能舉用其人而褒彰之하야 修理其器而益精하니 故로 百事頽敗하야 不及前日하고 而至今日之極度也니이다
8. 養兵數萬이면 姑足以鎮邦內事오
9. 於威平兩道에 敎閱兵士하야 以備西北事오
10. 以特典顯恤로 自開國以來에 爲國戰亡將卒之後孫하고 且祭其靈魂하야 以獎勵將卒之氣事오

〔六曰 敎民才德文藝以治本〕

第1節

敎者는 猶磁石也니 人在大洋과 或沙漠之中엔 雖不能辨南北이라도 然이나 有磁石이면 則可以辨之하니 故로 磁石은 即通四方就文明之要具也라 人이 生而無知나 其所以知者는 敎也니 子生則父母先敎之而導之하야 開其知識하고 而次入學校하야 以成其學이니이다. 故로 設校之事는 天下之急務也오 要務也로소이다. 蓋人民이 幼不學이면 則長無識하고 無識하면 則相愛之情淺하고 而相信之義薄하야 輕舉妄動하야 不顧前後하야 遂觸罪科하야 害世之交際者多矣리이다. 受敎導而有知識者는 或犯罪蒙罰이라도 甘其罰之至當하야 服罪改過이나 然이나 無知識者는 不能辨是非曲直하야 而不服其罪과 改其過故로 不便處罪也니이다.

- 才德文藝 本條의 題目 말고 第7條에도 「文德才藝」의 用例가 있는바 文德은 人文社會科學의 뜻으로 才藝는 自然科學의 뜻으로 解釋된다.
- 學 校 近代의 敎育機關인 school의 뜻 school에 대한 譯語는 初期에는 「學堂」이였다. 學校는 日本의 譯語에 屬한다.
- 人生而無知……故不便處罪也 本節은 福澤諭吉의 「西洋事情」外編 卷之三

「人民の教育」에서 取하고 있다. (青木 前掲 p.63.)

- 然無知識者 不能辨是非曲直而不服其罪改其過 故不便處罪也 福澤의 說明을 보면 「然れども人の知識乏しく是非曲直の辨別なき者を罰するに至つては其の處置甚難し」(然이나 사람이 知識이 없어 是非曲直을 가리지 못하는 者를 處罰하는 것은 甚히 困難하다) 無識者는 어리석은 까닭에 옳고 그른 것을 모르고 處罰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故로 刑事政策上 取扱이 困難하다는 뜻이 「不便處罪」에 담겨 있다.

第 2 節

凡無知沒覺放蕩無賴之輩는 不辨是非曲直이요 不知從國法護身家保私有之理하야 而一朝亂起면 則乘其弊하야 而蜂起雲集하려 不畏法하고 不憚人하야 以爲慘酷凶暴之舉하고 無遠慮而逐日前之利慾하야 遂行不可名狀之惡行하야 而不知養生節飲食之法하고 不知交人處世之道하고 不知計活安身之方하야 而無奮發振興之意하야 安懶惰하고 甘貧窮하고 以亂世間之風俗하야 而共陷貧窶苦界이나 然이나 稍被教育知學識之責者는 爲養其學識하야 雖勞心力과 散財物이라도 而有勉勵之志하야 乃成其學業하고 而終立功於*世니 是以로 民雖納稅費金이나 而使政府教民者는 使人々으로 知分達理하야 不陷於*貧困하고 而無行頑暴之舉於世하야 以害人之通義而犯於罪惡也오 此는 所謂「禍防於未然」也니 與救貧於既貧之後와 制罪於己犯之後는 其利害善惡이 不啻霄壤也니이다

* 史料本於作料

* 史料本於作料

- 凡無知……不啻霄壤也 本節도 福澤의 前掲書에서 取하고 있다.
- 乘其弊而蜂起雲集 事件發生의 틈을 타고 사람이 벌떼같이 이러나고 구름같이 모여서 騷亂을 피우는 것.
- 不畏法 不憚人 法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忿慮할 줄도 모른다는 것. 放若無人의 태도에 대한 表現.
- 共陷貧窶苦界 貧窶는 가난하고 禮節 모르는 것. 苦界는 苦海와 同義 佛教用語 人生이 허덕이는 生死疾病飢餓의 苦惱에 쌓인 世界의 뜻. 無知莫知한 사람들이 다같이 가난과 無知와 生活苦 속에 허덕인다는 뜻 福澤의 用語를 그대로 援用하고 있다.
- 民雖納稅費金而使政府教民者 人民이 稅金을 納付하고 그 稅金을 消費하면서 政府로 하여금 人民을 教育하게 하는 것이라는 뜻. 稅金을 納付하는 人民이 主人이라는 民主思想의 片鱗이 잘 나타나 있다.
- 知分達理 分數를 알고 道理에 通한다는 뜻.
- 禍防於未然 災禍를 이러나기 前에 미리 막는 것이 教育의 目的이라는 趣旨의 뜻이다. 福澤의 主張 그대로이다.
- 不啻霄壤 하늘과 땅의 差異가 있을 뿐아니라는 뜻. 既貧 既犯한 것을 다스리기 위하여 쓰는 돈과 이것을 未然에 防止할수 있게 教育을 위하여 쓰는 돈과는 그 價値에 있어 霄壤의 差가 있을 뿐이 아니라는 趣旨이다.

第3節

若政府 只有罰人之政而無教人之政이면 則此는 所謂「驅民入阱也」나 夫刑罰은 苦人之心神身體者也나 然이나 猶行之者는 欲罰一懲萬하야 而保公義也나 況教育其人하야 而益其人之幸福하고 矯其人之不德하고 救其人之貧困하야 而遂致一國之繁榮者이니 豈可忽之乎아 故로 文明之邦은 雖繫獄之囚徒라도 亦於獄中說教而導之하야 使之改過遷善하니 豈非善之善哉아

- 驅民入阱 人民을 陷阱에 몰아 넣는다는 것. 前文의 「爲阱於國中」과 같은 뜻.
- 罰一懲萬 한 사람을 罰함으로써 萬人을 懲戒한다는 것. 朴泳孝의 刑罰思想으로 볼수 있다. 犯罪人을 處罰 함으로써 一般 社會人이 犯罪에 빠지는 것을 막고 저하는 것이며 社會一般을 威脅하여 犯罪發生을 豫防하고자 하는 一般豫防論에 連結될 수 있는 主張이다.
- 獄中說教而導之 獄中에 囚人을 敎育하여 改過遷善하도록 하라는 行刑論을 主張한 것이다.

第4節

凡人進文明이면 則知服從於政府之義와 及不可服從之義요 而亦知不可服從於他國之義나 此는 無他요 知禮義廉恥之故也나이다. 是故로 未開無識之民은 蠢愚懶惰라 故로 能忍壓制之暴政而安之하고 開明識理之民은 英慧剛毅라 故로 不服束縛之政而動之라 是故로 若欲固君權之無限이면 則不如使人民至痴愚나 癡愚則殘弱하야 可以固君之專權이나 然이나 民愚而弱하면 則國亦隨而弱이니이다. 故로 天下萬國이 同愚弱然後에 可以保其國安其位나 然이나 此는 空言이요 豈有其實이리오 是以로 誠欲期一國之富強하야 而與萬國對峙면 不若少減君權하야 使民得當分之自由하고 而各負報國之責하고 然後에 漸進文明也나이다. 夫如此면 則民安泰하고 而宗社君位도 并可以永久也로소이다

- 凡人進文明……不可服從於他國之義 福澤의 「西洋事情」 外編 卷之一 「各國交際」에서 取하고 있다. (青木 前掲 p.64.)
- 蠢愚懶惰 어리석고 게으르다는 것. 未開無識之民의 表現 開明識理之民의 英慧剛毅에 對한 말이다.
- 能忍壓制暴政而安之 壓制와 暴政에도 참고 견디는 것. 不服束縛之政而動之에 對한 말.
- 若欲固君權之無限 萬一 君權無限을 確固히 하고저 한다면 이라는 뜻. 君權減少(有限)의 對한 말이다. 「君權無限」은 「君權定限」 또는 「君權有限」의 對語이다. 君權無限은 die absolute Monarchie를 意味하고 君權有限은 立憲君主政治 die Konstitutionelle Monarchie 또는 代議君主政治 die repräsentative Monarchie의 뜻을 意味한다. 第7條 第12項 「君民共治」解說 參照
- 使民得當分之自由 人民으로 하여금 當分之 自由를 가질 수 있게해야 한다는 뜻. 「當分之自由」는 사람이 타고난 自己 自由. 즉 天賦의 自由와 同義語이다

第5節

* 大學嫡作適

* 大學新作親

* 大學作欲明明德

* 外交文書本脩作修, 妻本史料本東亞本同, 依大學訂脩

* 史料本查作臺外交文書本脩作修各本同

* 大學「是以」「必使學者」之間有「大學始教」

* 大學朝作旦

* 大學其作吾

* 史料本工作公

朱子云하되 「王宮國都로 以及閭巷하 莫不有學하야 人生八歲이든 則自王公以下로 至於庶人之子弟하 皆入小學하야 而敎之以灑掃應對進退之節과 禮樂射御書數之文하고 及其十有五年이든 則自天子之元子衆子로 以至公卿大夫元士之嫡*子와 與凡民之俊秀하 皆入大學하야 而敎之以窮理正心脩己治人之道」라하고 大學에 云하되 「大學之道는 在明明德하며 在新*民하며 在止於至善이니라」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는 先治其國하고 欲治其國者는 先齊其家하고 欲齊其家者는 先脩*其身하고 欲脩*其身者는 先正其心하고 欲正其心者는 先誠其意하고 欲誠其意者는 先致其知하니 致知는 在格物하니라 故로 自天子로 至於庶人하 壹*是皆以脩身爲本이니라 其本이 亂而末治否矣며」 「所謂致知在格物者는 言致其知인댄 在即物而窮其理也요 蓋人心之靈이 莫不有知요 而天下之物이 莫不有理인마는 惟於理에 有未窮故로 其知有不盡也니 是*以로 必使學者로 即凡天下之物하야 莫不因其己之理而益窮之하야 以求至乎其極하니 至於用力之久而一朝*에 豁然貫通焉이든 則衆物之表裡精粗無不到하야 而其*心之全體大用이 無不明矣니 此謂物格而知之至也니라」 故로 無形產物은 因知識之所思而發하고 有形產物은 因農工*之所勤而生矣니 夫上古賢聖이 所以設校하야 敎人人之深意는 如此이니이다

○ 朱子云……此謂物格而知之至也 以上の 長文은 모두 大學의 引用이다 近代學校 敎育의 重要性을 儒家에게 알리기 위하여 大學의 論說을 援用하면서 說明한 것이다.

○ 無形之物因知識之所思而發 無形之物은 知識으로 因하여 생각해 내는 것이 라는 뜻. 事物의 理를 追窮하여 原理를 發見하고 應用의 길을 發見하는 것은 사람의 知識을 깊이 닦아 더득되는 精神的 思考의 所産이라는 趣旨이다.

○ 有形產物因農工之所勤而生 有形之物은 無形之物인 事物의 原理를 應用하야 農工의 勤勞로 生産되는 產物을 말하는 것이다.

第6節

* 史料本俗作修

然이나 及於近世에 敎化陵夷하고 風俗*頹敗하야 不知格物致知之本意하고 而但以玩弄文華와 尋章摘句爲要하야 若讀誦四書三經及諸子百家之書而能作文章이든 則雖愚癡之腐儒라도 乃稱大學士하고 而列於上大夫하야 以誤民國하니 此는 即 亞洲諸邦衰頹之源也이니이다. 若棄其末取其本하야 而自格物窮理之學으로 至於平天下之*術이든 則與當今歐美方盛之學과 同也리이다. 然이나 授受之道는 己失其傳하야 而不知窮理格物之爲如何者면 則何足以敎之며 何足以學之哉리오 故로 臣愚謂學者는 勿論東洋西洋하고 先其實用이오 而後其文華이니 夫實用은 如橘하고 文華는 如香이며 香은 因橘而生하니 豈有橘因香而生哉리오 故로 棄其實而取其華면

* 史料本之作至

則格物窮理와 修身治國之學을 一時并廢하야 乃致浮華之風也이다

- 教化陵夷 風俗頹敗 大學章句序文의 用語이다. 教化가 漸次 무너지고 風俗이 頹敗하였다는 뜻. 現代를 批判하기 위하여 尙古思想을 逆用한 것이다.
- 格物致知 事物의 理致가 究明된 뒤에 참다운 知慧가 생긴다는 것. 즉 學問의 原理를 究明하여 眞正한 知識을 터득하는 것.
- 玩弄文華尋章摘句爲要 事物의 眞理를 究明하지 아니하고 詞章詩賦의 工夫나 禮訟論難을 要業으로 삼고 歲月을 보내는 舊式의 腐儒의 學風을 말한 것인바 大學章句의 序文中의 「俗儒記誦詞章之習」이라고 表現한 朱子의 批判을 援用하여 傳統的 儒學을 虛學이라고 批判하고 있다. 그들 傳統的 儒家인 俗儒들이 大學士然하고 列於士大夫하여 國家權力을 壟斷하고 民國을 誤導하고 있다는 것이다.
- 棄其本取其末 本末의 뜻은 多義의인 用語이나 本節에서의 本은 眞正을 意味하고 末은 文華虛空을 意味한다. 本은 格物窮理之學 즉 今日의 西洋의 自然科學에 該當하며 末은 傳統的 儒敎主義를 意味 한다.
- 自格物窮理之學 至於平天下之術 格物窮理之學은 事物의 原理를 追窮하고 究明하는 學問이라는 뜻인바 西洋의 自然科學 特히 物理學을 指稱한 것이다. 自然科學은 西洋文明의 眞學이요 實學임을 前提하고 大學의 用語를 빌어 格物窮理學이라고 하여 儒家들에게 그 重要性을 알리 고지한 것이다. 平天下之術은 西洋의 合理的인 政治制度를 뜻한다. 西洋의 民主的인 合理的인 政治制度를 先王政治에 비꼬아 讚揚하기 위하여 平天下之術이라고 한 것이다.
- 授受之道 已失其傳 而不知窮理格物之爲如何者 則何足以教之 何足以學之哉 唐虞三代 先王時代에는 格物窮理之學이 있었으나 그것을 授受하여 發展시키는 方法을 繼承하지 못하여 窮理格物의 眞理가 무엇인지 모르게 되었으니 어떻게 가르키고 어떻게 배우면 足할 것인가 하고 東洋의 儒學은 虛學으로 顛落하였다고 비꼬고 있는 것이다. 朴泳孝는 傳統的 儒敎主義를 憎惡하고 排擊하고 있다.
- 先實用後文華 學問은 都大體 東西洋을 草論하고 實學을 먼저 工夫하고 文華는 뒤로 하라는 뜻. 西洋의 科學을 實學으로 表現한 것이다.
- 棄其實取其華 「棄其實」의 現象을 가르켜 格物窮理와 修身治國之學의 并廢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때 朴泳孝는 西洋의 自然科學과 政治經濟法律의 學問等 西洋의 文明開化思想을 全面的으로 受容할 것을 念願하고 있었다고 볼수 있다. 東洋儒敎主義를 浮華之風으로 規定짓고 外面하고 輕蔑하고 있는 것이다.

第 7 節

臣案古事하니 新羅博物館於慶州하야 堂宇宏暢하고 極其壯麗하야 列波斯 印度 漢唐 日本과 及本國之古今珍奇異寶하야 誠國中之美觀이러니 至於壬辰에 遂爲灰燼하야 全無痕跡이오 又敎民以修身 窮理 天文 地理 法律 醫藥 算數 音樂等學과 及漢 蒙古 滿洲 日本과 及印度等諸文語之學하야 而後發明諸物이오나 然이나 至今日하야는 形影俱絕하야 或有其名이나 無其實하니 此는 皆因政府不獎勵文學技術하야 以開窮理發明之路하고 反有妨碍之之政이라 故로 雖有己明之理라도 不能益明之년 反失其己明之理矣리니 可不惜哉아 今日之急務는 大興學校하야 而迎博學達理之士하야 以敎國人하미 上自春宮殿下로 以至於庶人之子弟하 使就校受學

하야 以明天地無窮之理면 則文德才藝燦然復盛也리니 豈可忽而置之哉리오

- 新羅設博物館……全無痕跡 新羅 慶州에 博物館이 設置되고 國內외의 古今 珍奇異寶를 陳列하였다는 것인바 史實에는 없음으로 理想論일 것이다.
- 皆因政府不獎勵文學技術 以開窮理發明之路 反有妨碍之政 모두 政府가 科學과 技術을 獎勵하더 研究發明的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에 妨害되는 政治를 하고 있다는 趣旨이나, 傳統的 君主政治의 無能을 忌憚함.

第 8 節

且宗教者는 人民之所依오 而教化之本也니이다. 故로 宗教衰則國衰하고 宗教盛則國盛이니 昔儒敎之盛에 漢土致强盛하고 佛敎之盛에 印度 及東洋諸部致强盛하고 回回敎之盛에 西域 土耳其等諸部强盛이오며 今天主 耶蘇敎之盛에 歐美諸邦 最强盛이오 我朝鮮은 儒佛之敎 曾有少盛之時이나 然이나 至於近日하야는 儒佛俱廢하고 國勢浸弱하니 豈不寒心嘆息哉아 嗚呼라 使儒敎로 復熾하야 以修文德이면 則國勢亦因之*而復盛을 可期而待焉하리이다. 然이나 凡事有時運하야 不可以力挽이라 故로 凡宗教者는 任民自由信奉하야 而政府不可關涉者也니 自古以來로 以宗教之爭論으로 動搖人心하고 滅國害命者하 不可勝數니 可以鑑也니이다.

* 外交文書本「亦因之而復盛」作「亦因而之復盛」東亞本，史料本同

第 9 節

1. 設小中學校하야 使男女六歲以上으로 皆就校受學事오
2. 設壯年校하야 以漢文과 或諺文으로 譯政治 財政 內外法律 歷史地理와 及算術 理化學大意等書하야 敎官人之少壯者(此似湖堂古事 而其益必大也)하고 或徵壯年之士于八道하야 以敎之하야 待其成業하야 以科學之法으로 試之하야 而擇用於文官事오
3. 先敎人民以國史及國語國文事오 (註)不敎 本國之 歷史 文章하고 而但敎清國之 歷史 文章이니 故로 人民이 以清爲本 而重之하고 至有不知自國之典故者하니 此는 可謂捨本取末也오
4. 雇外國人하야 敎人民以法律 財政 政治 醫術 窮理와 及諸才藝事오
5. 鑄活字와 造紙하야 而多設印刷所하고 以繁富書籍事오 (註)人이 欲學이나 而無書籍이면 則不能學이니 故로 文明之國은 書籍殷富오 臣之所大羨於 日本者는 紙價賤하고 而活字多하고 印刷便하야 而書籍殷富하고 學校多하고 而學生衆也이니다
6. 設博物館하야 以廣人民之見識事오
7. 許人民하야 或使有識者로 時々聚衆하야 演說世事하야 而開其固陋事오
8. 盛興東西洋諸邦之語學하야 以便交親事오
9. 定規則하야 許人民設新聞局하야 而印賣事오 (註)新聞者는 評議朝廷之事와 及公告官命 官吏進退 市街風說 外國形勢 學藝盛衰 耕作豐凶 物價高低 交易盛衰 民間

苦樂 死生死亡 異事珍談 凡人耳目之所新者를 逐一記載하고 或附圖畫하여 無不詳明이오 其他人々賴之하여 廣告凡百之事하니 大爲便利라 故로 雖閑居一室하여 不見戶外하고 或居萬里殊域하여 不得鄉信이라도 而一見新聞이면 則瞭然知世間之情하여 恰如現接其事物이오 故로 使人民博聞見하여 明事情者는 莫過於此이니 是以로 方今歐美諸邦은 以新聞局之多少로 較國之文明與否云이니라

10. 勿論其敎와 或可默許不問하고 任民自由이나 然이나 姑不可許建築堂宇하여 以惹起禍亂事오

- 2. 湖堂故事 宣祖 6年 11月 壬寅의 正言金宇順의 進言을 보면 「賜暇湖堂 所以培養文章 爲他日文衡之用 且抄選 文學之士」라고 하고 있다. 湖堂은 一名 書堂이라고도 稱하고 經樞之臣中에서 將來有爲한 青年官人에게 特히 賜暇하시고 專心學問研究에 從事시키는 것. 朴泳孝는 靑壯年中에서 머리 좋고 學識이 깊은 者를 抄選하여 新時代의 學問인 政治學 財政學 法律學 歷史地理 理化學 等을 가리키라는 것이다. 文明開化를 위한 西洋의 新學問을 靑年官人이나 八道の 才幹있는 者를 選拔하여 敎育함으로서 西洋文明을 受容하여 政治的 改革에 從事시킬 것을 湖堂故事에 比喩하면서 說明한 것이다.
- 3. 不敎本國之歷史而但敎清國歷史文章 自國의 歷史를 敎育하지 아니하고 清國 通鑑이나 史略으로 清國歷史만 가르키고 있는 전통 儒學을 非難한 것이다.
- 4. 雇外國人敎人民以法律財政政治醫術窮理及諸才藝事 窮理는 物理學 才藝는 西洋의 技術 外國人을 雇傭하고 法律 財政政治等의 新學問을 受容하라는 것
- 9. 許人設新聞局 西洋의 近代의 弘報機關인 新聞局(新聞社)을 設立하고 人民大衆을 啓蒙하라는 그의 所信을 보이고 있다.

〔七曰 正政治使民國有定〕

第1節

政府之職分者는 穩治國民하고 而無束縛하며 固守國法하여 而不任意하며 保外國之交際하여 而重信義하며 養民之生하여 而使守廉節과 知榮辱하며 敎民以文德才藝하여 而開窮理發明之路하고 政治一定하여 而無變革하며 號令必信하여 而無欺僞하며 民賴國法하여 而安業營產하며 得免於飢寒하고 內無人民之擾亂하고 外無鄰國之侵侮하여 而執中庸之道이면 則政府之職은 於斯盡矣로소이다

- 職 分 任務의 뜻. 職分은 따로 義務의 뜻으로도 使用되고 있다.
- 無束縛 束縛의 反對는 自由와 權利主張이다. 束縛하지 말라는 趣旨는 人民에게 自由와 權利를 주라는 말로 생각된다.
- 敎民以文德才藝 而開窮理發明之路 文德은 文學道德 才藝는 西歐의 科學 精神敎育과 科學敎育을 振興하여 科學知識을 普及하여 殖産興業의 길을 열라는 趣旨

第2節

古曰「人心은 惟危하고 道心은 惟微하니 惟*精惟一하여사 允執厥中하리라」하니 此는 治國平天下之本也니이다. 故로 君賢吏良하여 而無偏無黨하고 愛民如己하여 敎

* 外交文書本「惟精惟一」作「維精維一」東亞本 姜本吏科本各同

民如子면 則民國乃安이나 君暴吏汚하야 而寵奸嬖邪하고 視民如讎하고 治民如獸면 則民國乃危니이다 大學에云하되「詩云節彼南山이어 維石巖巖이로다. 赫赫師尹이어 民具爾瞻이라하니 有國者不可以不慎이니 辟則爲天下僂矣니라」하였나이다 凡有民則有政府하고 有政府則有治理하며 有治理則有議論하며 有議論則有異同하며 有異同則有縱橫하며 有縱橫則黨乃成하야 而各主其議하니 此는 古所謂朋黨이오 而今之政黨也니이다. 若行政者 能辨其是非하야 而行其可者면 則得中而無辟이나 然이나 不能辨其是非하야 而行其不可者면 則失其中而致辟이리니 故로 禍亂可乘而動也니이다

-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書經」, 謨, 大禹謨의 말이다. 사람에게는 私를 아끼는 마음이 있어 매우 위태롭고 道를 지키겠다는 마음은 매우 희박하다. 道心으로 始終一貫하면 眞실로 中庸의 길 잡을 수 있다는 뜻.
- 寵奸嬖邪 奸邪한 무리를 寵愛하고 親近하는 것.
- 詩云節彼南山……辟則爲天下僂矣 大學章句의 引用이다.
- 節彼南山 維石巖巖 赫赫師尹 民具爾瞻 詩傳의 小雅의 引用. 바위들이 쌓여 높이 솟아 있는 南山과 같이 으리으리하게 빛나는 世道家 太師尹氏를 온 百姓이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
- 有國者不可以不慎 辟則爲天下僂矣 은 百姓이 지켜보고 있음으로 나라일을 맡은 사람은 慎重이 行動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편벽되게 일을 하던 天下의 우습 거리가 되고 辱을 볼 것이라는 뜻.
- 有治理則有議論 有議論則有異同 有異同則有縱橫 有縱橫則黨乃成 國家를 經營하는 政治原理가 있으면 各主義主張의 議論이 있는 것이며 議論이 있으면 主義主張에 異同이 생기고 主義主張에 異同이 있으면 統合과 分烈이 생기는 것이다. 主義主張의 統合과 分烈이 있으면 主義主張을 같이하는 者끼리 黨派가 생겨서 自黨의 治理를 各各 내세우는 법이니 예로 말하면 朋黨이 이에 該當할 것이고 現今으로는 政黨이다. 國家經營이나 時局打開에 關하여 文明各國에는 政黨이 있어 輿論을 組成하여 民意에 따라 公平하게 政治하고 있다는 文明開化의 政治體制를 說明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第3節

臣案國朝古事하니 有西人 南人 大北 小北之分黨하야 互相駁斥하고 齟齬逆名하야 而相殺戮하고 及於近代하야는 西人이 分爲老論小論하야 而亦如前日之事라 然이나 前日之黨은 無大關於國體則彼可謂「朋黨」也이며 至於年前에 黨派又分爲二하니 「就新自立과 守舊依賴」是也니 而臣等은 見國勢汲々하야 不可虛延時日이라 故로 欲亟圖興復하고 至敢行殘酷罔狀之舉矣니이다 然이나 此는 有大關於國體則此可謂「政黨」也로소이다 伏願陛下 辨其是非하야 而護其忠國之黨하사 以保國體安民命하소서 如不然이면 即招禍之道也리이다

- 互相駁斥 齟齬逆名 而相殺戮 서로 論駁하고 排斥하며 事實을 虛構하여 反逆罪로 모라치고 士禍를 이르게 彼此殺戮을 거듭하는 것. 黨爭의 慘狀을 表現한 말

이다.

- 無關於國體 黨派의 主義 主張이 國家的 汎國民의 利益을 追求하고 代表하는 公共의 性格이 缺如되고 있다는 뜻. 國體는 nationality의 對譯(下出)
- 朋 黨 個人的 利益을 追求하고 個人關係로 結合된 集團. 反對黨을 虛虛構의 事實로 謀陷殺戮하여 權力의 爭取를 일삼는 徒黨이라는 뜻.
- 就新自立 西歐의 새로운 文明開化를 受容하여 政治의 近代化를 이룩하고 國際의 中華의 隷屬에서 벗어나 自主獨立을 主張하는 것. 即 開化黨의 主義主張. 進歩主義의 政綱을 意味한다.
- 守舊依賴 中華와 中華文明을 이룩한 儒敎主義를 가장 優越 하다고 妄信하고 中華를 依賴事大하고 衛正斥邪를 부르짖고 傳統的 儒敎政治를 固執하는 것 即 事大頑固黨의 主義主張 保守主義의 政綱을 意味함.
- 亟圖興復 前文 第8節 參照
- 政 黨 公共의인 政治原理와 政策의 實現을 위하여 政治權力에 參與함을 目的으로 結合된 團體 國家的 汎國民의 利益을 追求하기 위하여 政治權力에 參與하고 或은 反對權力을 牽制하고 그 主義 主張을 批判하고 反對하는 團體이므로 私의인 利益 追求와 權力爭奪을 일삼는 朋黨 또는 徒黨과 區別된다. 朴泳孝는 이러한 政治活動의 公共의인 性格을 「關於國體」라고 表現하고 公共의 性格의 有無로 朋黨과 政黨을 區別하고 開化黨은 近代의 政黨에 屬한다고 強調하고 있는 것이다. 福澤諭吉는 「文明論之概略」에서 國體는 nationality의 對譯이라고 하고 「自國의 政權을 잃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說明하고 있다(同書 p.27). 國家固有의 統治體制를 國體라고 한 것으로 풀이된다. 國家統治에 關한 主義主張인지 아닌지가 公共性의 判斷의 規準이 될 것이다.

第4節

1. 不可親裁萬機하고 而各任之其官事오
2. 擇賢相하고 專任政務事오
3. 崇宗室하고 以固宗社事오
4. 凡職掌은 當其職하야 治其政事오
5. 使公卿大夫治務하고 而不可任小吏事오
6. 合小課爲大課事오
7. 賞功은 以爵位及財貨하고 而不可以官事오
8. 不可授官位于外國人事오
9. 許官吏起復行公事오
10. 使四邑罷舊嫌하야 相婚姻하고 而政府不可分別之事오
11. 縣宰와 及司訟之官은 隨人望而登用事오
12. 設縣會之法하고 使民議民事하야 而得公私兩便事오 今*政府之山林과 府縣之座首는 皆因於儒敎하야 隨民望選拔하야 而協議民國事면 則本朝亦有君民共治之風也라 臣聞하되 前日治隆德盛之時에 山林之權이 傾動一世하야 國之大

* 外交文書本外
各本 今政府 以下
作註記

事는 必經議論然後에 行政云이오 若推此法而廣之하야 漸臻益精益求精 則可爲文明之法也오 凡民有自由之權하야 而君權有定이면 則民國永安이나 然이나 民無自由之權하야 而君權無限이면 則雖有暫時强盛之日이나 然이나 不久而衰亡이니 此는 政治無定하야 而任意擅斷故也나이다

* 各本 率作卒

* 外交文書本外外
各本臣等以下作
註記

13. 致謹於淸하고 愼而和魯하고 倚托於美하고 親交日本하고 結英 德 法等国事오

14. 交外國은 以信으로 不可違背하고 且與約은 必愼으로 不可輕率*事오 臣等*은 概知其利害矣나이다

15. 與外國交는 勿失主權과 損國體事오

○ 1. 不可親裁萬機 而各任之其官事 君權無限의 專制政治를 고치고 各官으로 하여 所管任務를 맡겨서 處理하라는 것.

○ 4. 凡職掌當其職 治其政事 무릇 政府의 모든 職掌은 마땅히 그 官職에 있는 者에게 맡겨서 政務를 處理케 하라는 것.

○ 9. 起復行公 官吏는 喪中에 있더라도 公務를 맡아 보아야 한다는 것. 起復 出仕와 同義

○ 10. 使四色罷舊嫌相婚姻 老論 少論 南人 北人의 四色黨派의 朋黨의인 舊嫌을 버리고 黨派의 區別없이 서로 婚姻하라는 것.

○ 11. 隨人望登用之事 選舉에 의하여 府郡縣의 守令과 裁判擔當하는 官人을 뽑으라는 趣旨로 解釋된다.

○ 12. 設縣會之法 府郡縣에 地方議會를 設置하라는 主張이다.

山 林 學識이 豊富하고 德望 높은 地方에서 隱逸하는 士林.

座 首 地方鄉廳(鄉所)의 首長 鄉士中에 나이 많고 德望이 높은 者가 人望에 의하여 就任한다.

君民共治 君主와 人民이 같이 政治하는 것. 人民이 政治에 參與하는 것을 意味한다. 參與方法은 官公職을 人望으로 選拔하라는 主張이다. 福澤은 君民共治를 立憲主義君主政治의 意味로 使用하고 있다. 朴泳孝는 君民共治制度를 頑固한 儒林을 理解시키기 爲하여 山林의 活動을 比喩하면서 說明하고 있다. 君民共治는 君權有定을 意味하는 것이다. 近代의 選舉制의 導入을 주장한 것.

[八曰 使民得當分之自由以養元氣]

第1節

天降生民하야 億兆皆同一而稟有所不可動之通義하니 其通義者는 人之自保生命과 求自由와 希幸福는也오 此는 他人之所不可如何也나이다. 孔子曰「三軍之帥는 可奪이어나와 匹夫之志는 不可奪이라」하시니 即此之謂也오 是以로 人間立政府之本旨는 欲固此通義也오 非爲帝王設者也라 故로 政府는 保其義하야 好民之所好하고 惡民之所惡하면 則得其威權이어나 若反는하야 戾其義하야 惡民之所好하고 好民之所惡하면 則民必變革其政府하야 而新立之하야 以保大旨하나니 此는 人民之

公義也 職分也이다. 是以도 公法에 不以國事之犯으로 爲罪人하야 而反護之 하니 此는 文明之公義而承天之至理也이다

- 天降生民 億兆皆同一 而稟有所不可動之通義 其通義者人之保生命 求自由 希幸福是也 他人之所不可如何也 以上은 福澤諭吉의 「西洋事情」 卷之二, 亞米利加合衆國, 「十三州獨立檄文」(獨立宣言文)에서 取한 것이다. 「稟有所不可動之通義」 endowed by the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의 對譯이다. 「通義」는 right의 譯語이다. (前文 및 本上疏 第3條 第5節 參照)
- 孔子曰三軍之帥……不可奪 人權의 尊嚴性을 舊世代에 理解시키기 위하여 論語 子罕篇의 위 句를 引用한 것이다.
- 是以人間立政府之本旨……此人民之公義也職分也 以上도 亦是 福澤의 前揭 「十三州獨立檄文」에 取한 것이다. 「此人民之公義也職分也」는 獨立宣言文의 it is the right of the people의 對譯이다. 公義는 通義와 같이 right 즉 權利를 意味한 職分은 任務의 뜻도 있지만 福澤은 義務의 뜻으로 使用하고 人權을 保護하지 못하는 政府를 가라 치우고 새 政府를 樹立하는 人民의 權利인 뿐 아니라 人民의 職分 즉 義務라고 二重으로 強調한 것이다. 朴泳孝는 福澤의 通義也를 公義也로 改稱하고 職分也를 附加한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通義가 right <權利>를 意味하는 述語로 福澤이 使用하고 있는 原意를 물랐기 때문에 公義라고 變更하여 본 것이다.
- 好民之所好惡民之所惡 詩傳의 「樂只君子여 民之父母로다」를 解釋한 「民之所好를 好之하며 民之所惡을 惡之니 此는 民之父母니라」의 大學章句를 變容한 것이다. 人民이 나라의 主人이 라는 民主主義를 理解시키기 위하여 大學의 章句를 引用하면서 說明하고 있다. 經典의 引用은 手段이고 目的은 近代政 治思想의 說明에 있다.
- 民必變革其政府 獨立宣言書中の 「抵抗權」 部分을 說明하고 있다.
- 不以國事之犯爲罪人 抵抗權을 行使하는 國事犯을 罪人으로 다루지 아니한다는 뜻. 暗暗裡에 甲申政黨을 이트킨 開化黨이 事大黨을 打倒코저한 舉事를 抵抗權을 行使한 國事犯이라고 辯護하고 있다.

第2節

凡人性이 懶惰하야 好因循姑息이라 故로 以因循姑息之意로 見舊來之政府면 則似 難以一朝輕*率之舉로 變動之나 然이나 若至不得保一身之安穩하야 不得爲一身 自由하고 不得保私有之財物하야 失人生之大義하야 不可姑息之地면 則必動之以 自由로 保之*니 其就能禦之리오 故로 美는 因英之苛政而動之하야 遂成自由之邦하야 國法寬而人不束縛하고 人爲其所好하야 欲爲士者爲士오 欲爲農者爲農이오 欲爲 工者爲工이오 欲爲商者爲商하야 少無區別士農工商之間과 而論其門閥하야 亦不以 政府之位로 輕蔑人民하고 上下貴賤이 各得其所하고 雖毫髮이라도 不妨他人之自由하야 而以伸天稟之才德하야 但貴賤者는 當公務하야 有官吏로 階級耳요 其他識 字辨理로 勞心達道者는 爲上流而重之하고 不知文字而力役者는 爲細民而輕*之耳 니 此는 人民自保自由之大義也이다 然則爲政府謀者는 不得不使人民得當分

* 史料本輕作經
* 各本率作卒

* 加一字「之」

* 史料本輕作經

之自由하야 以養浩然之氣오 不可以苛政悖俗으로 以害其通義니이다. 故로 美政府는 以禁奴之事로 爲大戰하야 遂禁之하고 天下亦隨之而禁하니 豈不美哉며 豈不偉哉아

- 因循姑息 남은 習慣과 方法만을 固執하고 一時的으로 고치는척만 하는 것 祖上과 父母가 過去에 踏은 것을 自己들의 將來의 行動의 基準으로 삼고저하는 倫理觀 또는 傳統愛護의 ethos를 形容하는 用語이다. Max Weber는 傳統主義의 ethos를 das ewig Gestrige(永遠히 昨日의인 것)라고 表現하였고 Thomas Jefferson은 the living were ruled by the dead(生者가 死者에 의하여 支配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以一朝經率之舉變動之 因循姑息의 傳統主義를 固執하는 舊制舊法을 變革하고저 하는 變動(革命)을 意味한다. 佛蘭西革命, 美國의 獨立戰爭 또는 甲申政變 같은 一時的으로 社會 政治의 制度를 變革하고저 하는 事件을 말한다.
- 不得保一身之安穩 身命의 自由를 保障 받지 못하는 것 美獨立宣言書中の life(生命權)의 保障에 該當한다.
- 不得爲一身之自由 自由權의 保障이 不可能 하다는 뜻. 美獨立宣言書의 liberty(自由權)의 保障에 該當 한다.
- 不得保私有之財物 私有財産이 保障되지 아니 한다는 뜻. 美獨立宣言書의 property(財産權) 또는 pursuit of happiness(幸福追求權)의 保障을 要求한 것이다. 朴泳孝는 美國獨立宣言書를 깊이 研究하였고 이에 表示되고 있는 生命 自由 財産의 基本의 人權의 保障을 高唱하고 이를 保障하지 못하는 政府는 人民이 가라치울수 있다고 主張한 것이다.
- 國法寬……而力役者爲細民而輕耳 福澤의 「西洋事情」 卷之一 備考「政治」에서 取하고 있다. (青木, 前掲)
- 人民得當分之自由 人民은 마땅히 自己 몫에 自由를 確保해야 한다는 것 「當分之自由」는 마땅히 自己가 받아가져야 할 자기 몫의 自由 즉 「天賦의 自由」와 同義語이다. 前示 第6條 第4節에서 이미 說明한 青木氏는 「不得不使人民得當分之自由以養浩然之義」의 出典이 「孟子」에 있다고 하고 있으나(朝鮮學報 80輯 p.101) 錯誤인 것 같다. 浩然之氣란이 孟子에서 나온 말이다. 人權은 侵害를 받지 아니 하는 「自由의 人間」의 氣象을 朴泳孝는 浩然之氣로 說明한것뿐이다. 力點이 近代의 自由에 있고 傳統的 儒敎主義에 있는 것은 아니다.

第3節

臣聞하되 「陛下以非常之英斷으로 禁公私之奴婢라」하시니 誠我邦未曾有之聖政也라 天必感悅하고 後當有報리이다 故로 臣은 因此而知我聖朝之將興也니이다 而臣愚謂尙有數事하야 可使人民으로 得其通義者는 一曰「男女 夫婦 均其權也」니 凡男女嫉妬之一也르되 而男은 能有妻娶妾하고 或疎其妻하며 或黜其妻이나 而婦는 不能改嫁하고 亦不能離緣하니 此於法律에 但禁女子之奸淫이오 而不禁男子之亂故也 니이다. 且男喪其妻면 可以再娶르되 女喪其夫면 雖未經合卺이라도 不得再嫁는 此爲家族親類所制也니이다

- 男女夫婦均其權也 (註) 男女夫婦의 同權을 뜻한다. 萬民平等 思想을 男女間

에 適用한 主張이다.

- 未經合卺 卺은 瓢를 兩分하여 만든 술잔 婚禮에 있어 新郎과 新婦가 各 卺에 술을 부어 마시는 것이므로 合卺은 婚禮를 意味한다. 餼禮 婚禮에서 나온 말이다. 「未經合卺」은 아직 婚禮 치르 지아니하였다는 것, 즉 定婚만 하고 婚禮를 經하지 아니한 女子라도 舊習에는 새로운 結婚이 禁止되었다는 것이다.

第4節

一曰「廢班, 常, 中, 庶之等級也」니 夫以一國同類之人과 同祖之孫으로 勒定 貴賤하고 不相嫁娶하며 上下懸隔하여 遂成異類하여 云班者는 雖劣이나 永貴하고 云常者는 雖有才德이나 永賤하니 此는 貴人男子制禮作法하여 而自貴自便也오 若使婦女와 及賤者로 制作禮法이면 則豈有如此之偏頗哉리오 且以人乘人하고 用人如獸하여 而辱同類하며 爲人之妾하여 取人之侮辱하고 而亂世俗하니 此는 皆無義無恥오 世所謂「蠻野之自由也」니이다. 右此數者는 誠傷天地之理오, 失人之義니 雖係亞洲之舊風古例이나 不可不速革者也니이다 歐美之人이 常侮亞洲之人은 以有如此惡風也니 豈非恥辱之甚哉리오 如不速革其惡俗而就良이면 則聖朝之文明은 未可期也니이다

- 廢班常中庶之等級也 兩班과 常人의 階級 常人中에 서도 다시 中人이니 庶人이니 하는 階級을 없애고 人間의 平等을 主張한 것이다. 甲申政令 第2條에 「閉止門閥 以制人民平等之 權 以人擇官 勿以官擇人事」를 再確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封建的인 身分制度를 打破하고, 萬民平等의 近代法原理를 宣貫한 것이다. 兩班에 依한 兩班을 爲한 兩班의 國家에서 人民의 國家로의 轉換시켜야 한다는 意味가 內包되어 있다.
- 貴人男子制禮作法而自貴也 福澤諭吉의 「日本婦人論」後編에서 取한 듯한다. (靑木, 前掲 p.72)
- 以人乘人用人如獸而辱同類 爲人之妾取人之侮辱而亂世俗 福澤諭吉의 「學問のすすめ」8編에서 取한 듯하다. (靑木, 前掲 p.73)

第5節

所謂自由者는 行其所思之可者也니 只從天地之理하여 而無束縛이며 無屈撓이나 然이나 人既交世하여 互得其裨益이면 則不可不*棄一部之自由하여 而從世俗之通義라 故로 順從國法은 雖似棄其自由나 然이나 實棄其蠻野之自由하여 而得天下 通同之利益也니이다. 設法律制人罪는 雖似減天賦之自由나 然이나 實由此而大增 處世之自由也니이다. 雖然이나 設法束束人之志則苛政也오 雖犯罪而不蒙罰하고 以力恣暴虐者는 蠻野之自由也며 法雖寬而無犯하고 不制於力而制於心은 文明之 自由也니이다. 或致束縛於家夫親族하고 或致屈撓於士大夫權豪하니 豈有甘制於 其心者리오 乃勢無如何而制於力하여 以致氣陷力殘이니 豈不憐哉며 豈不哀哉아 故로 臣謂此는 傷天之理오 失人之義也니 可不顧恤之哉리오

* 史料本缺不

- 所謂自由者……則苛政也 福澤諭吉의 「西洋事情」二編 卷之一, 備考, 「人間의 通義」에서 取하고 있다. (青木 前掲 p.73) 森吉濤의 「西遊見聞」 第四編 「人民의 權利」의 冒頭에서도 「自由는 其心の 所好는 不히로 何事든지 從야云云」하고 같은 趣旨의 說明을 하고 있는바 朴泳孝나 森吉濤이 다같이 福澤諭吉의 「西洋事情」을 愛讀하고 그의 思想的 影響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 雖犯罪而不蒙罰 以力恣暴虐者 蠻野之自由也 法雖寬而無 犯不制於力而制於心 文明之自由也 福澤諭吉의 「西洋事情」外編 卷之一 「世の文明開化」에서 取한 듯하다. (青木, 前掲 p.74)

第6節

1. 從令禁男子娶妾하고 而許孀婦任意改嫁事오
 2. 令班, 常, 中, 庶, 任意相與婦姻하고 而如有才德者는 雖賤이나 用之於大官事오 如此則男女貴賤之勢는 必漸至均一라고 而和氣滿國也오
 3. 時々諭人民하되 以不可以人乘人으로 用人如獸之義하고 而使用車馬牛代之면 則漸知其爲恥하야 而自止也니이다
- 右八條所列은 非但以京都論之라 敢舉全國統論也오 似此淺見을 孰不知之然이오 마는 行之者는 知之者오 不行之者는 不知者也니이다.
- 孀婦 青孀寡婦 靑은寡婦
 - 男女貴賤之勢 必漸至均一 男女의 區別 없이 同等하게 하고 兩班 公私奴婢를 禁하고 常奴의 貴賤의 階級制度를 打破하여 萬民平等의 原則을 確立하여 「國民의 統合」(national Integration)을 이룩하라는 趣旨이다. 國民統合은 近代的 國民國家建設의 前提이므로 階級打破를 近代的 政治의 意味로 강조한 것이다.